

September 2023

Vol. 03 (통권 43호)

# FTA 무역리포트

# TRADE REPORT



#### FTA FOCUS

중소수출기업의 FTA 활용과  
관세무역전문가로서 관세사의 역할

#### FTA EXPERTS

RCEP 발효를 통해 본 한·중·일 주요  
수출품의 대호주 불변시장점유율(CMS)  
분석

아세안 주요국의 품목별 원산지기준  
비교연구

#### 해의통관애로

중국 관세행정 변화 및  
최근 정책 추이



September 2023

Vol. 03 (통권 43호)

# FTA 무역리포트

# FTA TRADE REPORT



# Contents

## FTA FOCUS

006

중소수출기업의 FTA 활용과  
관세무역전문가로서 관세사의 역할

김중근 | 한국관세사회 연구원 실장(경제학박사)

## FTA 동향

018

## FTA TOON

039

## FTA EXPERTS

042

RCEP 발효를 통해 본 한·중·일 주요 수출품의  
대호주 불변시장점유율(CMS) 분석

라공우 | 제주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아세안 주요국의 품목별 원산지기준 비교연구

신범수 | 배재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학과 교수

## FTA ANALYSIS

068

한-베트남 FTA 활용하기

김수정 | 한국원산지정보원 활용연구팀 선임연구원

## FTA 품목분류

080

세상을 바꾸는 트렌드(Trend)  
“스마트 기기(Smart Device)”의  
품목분류 어떻게 해야 하나?

- 제71차 WCO HS위원회 최신사례 포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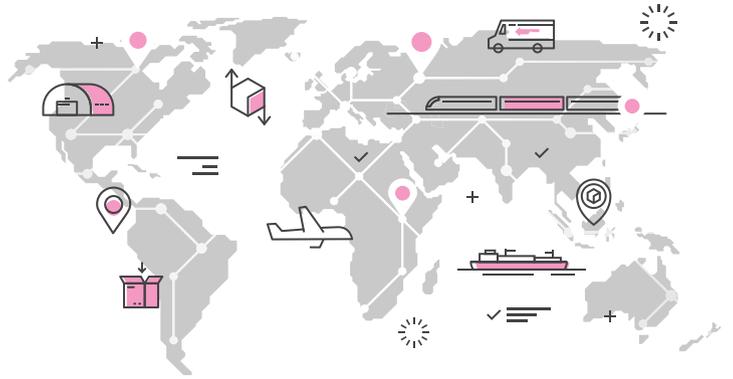
양영미 | 관세청 심사정책국 세원심사와 관세행정관

## 해외통관애로

094

중국 관세행정 변화 및 최근 정책 추이

강경훈 | 주중한국대사관 관세관



## FTA 100% 활용하기

102

### 한국과 이스라엘 FTA 협정

- 양국의 경제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

Tamar Maron Kosher | 참사관 & 이스라엘 경제무역대표부 대표

##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활용

110

### 추석선물세트의 원산지결정기준

전희영 | 코스모스 관세사무소 관세사

## 활용하기 쉬운 FTA-PASS

122

### 원산지관리가 편리한 FTA-PASS

- 신규 원산지확인서 발급 -

구본현 | 한국원산지정보원 전산관리팀 과장/원산지관리사

김소연 | 한국원산지정보원 전산관리팀 주임/원산지관리사

## 쉬어가기

133

## 원산지관리, 현장의 목소리

136

### 인증수출자제도와 원산지관리

변달수 | 다미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

### 쉽게 설명하는 IPEF vs. CPTPP

최완규 | 한국원산지정보원 활용연구팀 원산지관리사

## FTA 지도

150

### 2023년 우리나라 FTA 체결현황

### 2023년 FTA 상반기 주요 수출입 품목



FETIARAD



# FTA FOCUS

중소수출기업의 FTA 활용과  
관세무역전문가로서 관세사의 역할

김중근 | 한국관세사회 연구원 실장(경제학박사)

REPORT

# 중소수출기업의 FTA 활용과 관세무역전문가로서 관세사의 역할



김종근  
한국관세사회 연구원 실장  
(경제학박사)

## 1 들어가는 말

최근 국제무역환경은 자국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따라 세계무역의 성장이 정체되고 미-중 갈등의 장기화 등으로 세계화 둔화(Slowbalization), 탈세계화(Deglobalization) 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자재와 곡물 등에 대한 공급망이 교란되면서 주요국은 자국 중심의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ESG 경영 등 그린 전환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우리나라 수출은 2021년에 이어 연속으로 역대 실적을 기록하였으나, 하반기

이후에는 수출이 크게 위축되어 무역수지는 472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등 연구기관들은 2023년에도 전년 대비 수출과 수입이 감소하는 마이너스 역성장과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수출확대방안의 일환으로 FTA 활용을 위한 관세무역전문가로서 관세사의 역할을 조망한다. 먼저 중소수출기업의 현황과 FTA 수출활용률을 살펴본 후, FTA 활용 제고를 위한 관세사의 역할을 중소기업지원 방안 중심으로 정리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 2 중소기업의 현황과 FTA 수출활용률

통계청·관세청의 2022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에 따르면, 수출기업은 95,015개이며, 이 중 중소기업은 91,865개 96.7%, 수출액은 1,133억불 16.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종사자가 1~9인의 영세중소기업이 61,421개 64.6%, 수출액은 316억불 4.6%로 나타나, 상당수 중소기업은 FTA 전문인력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표 1] 기업 규모별 수출

(단위: 개, 억불, %)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계
기업 수(비중)	91,865(96.7)	2,218(2.3)	932(1.0)	95,015(100.0)
수출액(비중)	1,133(16.6)	1,240(18.2)	4,447(65.2)	6,820(100.0)

자료: 통계청·관세청, 2022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 2023. 5. p.2

[표 2] 종사자 규모별 수출

(단위: 개, 억불, %)

구분	1~9인	10인~49인	50~249인	250인 이상	계
기업 수(비중)	61,421(64.6)	23,668(24.9)	8,016(8.5)	1,910(2.0)	95,015(100.0)
수출액(비중)	316(4.6)	354(5.2)	850(12.5)	5,301(77.7)	6,821(100.0)

자료: 통계청·관세청, 2022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 2023. 5. p.4

한편, FTA 수출활용률은 수출신고서상 원산지 증명서 발급 수출액을 특혜대상품목 수출액으로 나누어 100을 곱한 것으로, 최근 5년간 FTA 수출활용률은 2017년 70.0%에서 2021년 75.7%로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동 기간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활용률 격차는 21.5% ~ 24.7%로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활용률이 저조한 주요 원인은 FTA 전담인력 부족, 원산지 증명서 및 필수 서류의 작성 및 구비 어려움 등으로 나타났다.

이제까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 격차 문제는 국회 등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다.

**[표 3] 최근 5년간 FTA 수출활용률**

(단위: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8월
대기업	81.3	83.1	85.0	83.6	85.1	82.8
중소·중견기업	58.0	60.1	60.3	62.1	61.5	60.5
격차	23.3	23.0	24.7	21.5	23.6	22.3
전체	70.0	73.5	74.9	74.8	75.7	74.1

자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기현 국회의원 보도자료, 2022. 9.30.

전문인력이 없는 영세수출기업은 FTA 활용을 위해서 대기업 등과 마찬가지로 원산지증명 관련 자료를 구비하고 보관하는 등 원산지증명 및 검증대비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반면에 영세수출기업은 수출액이 적어 수입국에서 받을 수 있는 특혜관세 혜택 또한 적을 수밖에 없어, FTA 활용에 대한 유인이 적거나 거의 없기 때문에 FTA 활용률이 낮을 수도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일지라도 기업 규모에 따라 FTA 활용률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영세기업 등으로 세분한 활용률 산출을 제안해본다.

수출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수출기업이 FTA를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FTA 활용이 가능한 영세수출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3 FTA 활용 제고를 위한 관세사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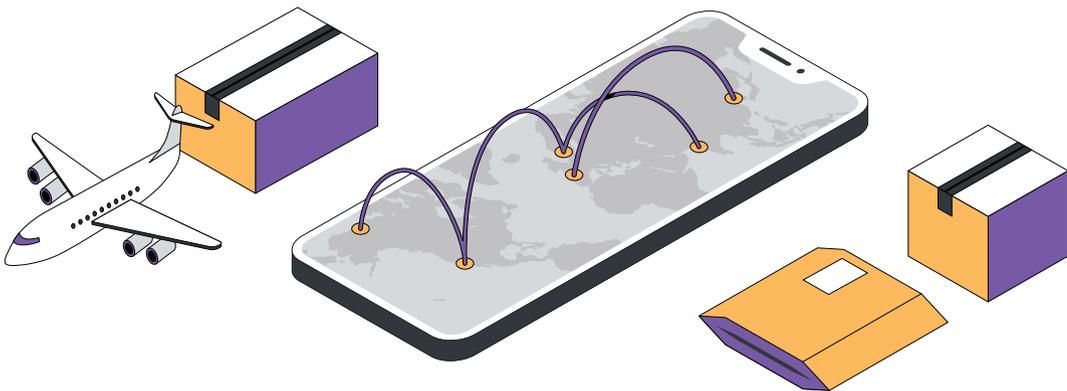
2023년 6월 현재 우리나라의 FTA는 21개 협정, 59개국과 발효되어 전세계 GDP 대비 83%에 달하고 있다.

2022년 2월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ASEAN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FTA이다.

RCEP은 세계 GDP 및 무역 규모에서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다자 무역협정이다. RCEP은 '1 국가 다협정 국가' 체제를 형성하고 '원산지증명의 인증수출자 자율발급'을 도입하여 FTA 활용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관세청은 RCEP 등 신규 FTA의 확대에 '1 국가 다협정 국가'가 늘어남에 따라 수출기업이 수입국의 FTA 특혜세율과 원산지결정기준 등을 비교·분석하여, 보다 유리한 협정을 선택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자금, 정보 등이 부족하여 FTA 활용에 부담이 큰 중소기업에 특화된 FTA 활용지원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관세청·세관 이외에 중소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컨설팅할 수 있는 FTA 전문가는 관세사이다. 또한, 관세청·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제공하는 FTA 컨설팅 사업에 참여하여 실제 컨설팅을 수행하는 전문가 역시 관세사이다.



관세사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국가전문자격사로서 화주로부터 수출입통관 등을 의뢰를 받아 관세사법상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관세사는 독립된 국가전문자격사법인 관세사법에 따라 통관과목 이외에 무역실무(대외 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 등 무역 관련 과목을 2차 주관식 시험에서 평가받음으로써 무역전문가로서 지식도 검증받고 있다.

특히, 2007년 FTA 확대 등 무역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회계학이 시험과목으로 도입되어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더욱 향상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관세사는 신속 통관에서 위험 물품 관리로 전환하고 있는 세관 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경제 국경의 최일선에서 수출입화물의 안전 지킴이

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관세행정의 동반자로서 관세청과 파트너십 관계를 형성하여 세관과 수출입기업의 가교가 되고 있다.

또한, 부족한 세관 인력을 대신하여 통관 관련 업무를 90% 이상 수행하는 등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 건의를 통해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관세행정 및 관세사 수의 변화를 보면, 2000년 대비 2021년 수출은 274.0%, 수입은 283.2% 증가한데 비해, 세관 인력은 약 30% 내외의 증가에 불과하였다.

동 기간 관세사는 739명에서 2,186명으로 195.8% 증가하여 부족한 세관 인력을 대신하고 있다.

[표 4] 관세행정 및 관세사 수 변화

구분		단위	2000년	2021년	변화율(%)
수출·입 (통관기준)	수출	역불	1,723	6,444	274.0
	수입		1,605	6,151	283.2
세관 인력	관세청	명	285	368	29.1
	세관		3,590	4,775	33.0
관세사	관세사회 등록	명	739	2,186	195.8

자료: 관세청, 관세연감(2022) 및 한국관세사회, 2021년 12월말 기준

또한, 신고자별 수출입 실적(2021)에서 관세사는 수출의 경우 건수는 79.9%, 금액은 85.1%를 신고하고 있고, 수입의 경우 건수는 99.7%, 금액은 91.2%를 신고하고 있어 관세행정에 일조하고 있다.



**[표 5] 신고자별 수출입실적(2021)**

(단위: 천건, 억불, %)

구분	수출			수입		
	관세사	화주	합계	관세사	화주	합계
건수	12,070(79.9)	3,036(20.1)	15,106(100.0)	38,927(99.7)	98(0.3)	39,025(100.0)
금액	5,486(85.1)	958(14.9)	6,444(100.0)	5,612(91.2)	540(8.8)	6,125(100.0)

자료: 관세청, 그림으로 보는 통계(2021), 2022.

### 가.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수출기업에 관세무역전문가로서 FTA 활용지원

RCEP 발효로 우리나라 기업이 베트남에 수출할 경우 한-아세안 FTA(2007), 한-베트남 FTA(2015), RCEP(2022) 등 3개 FTA 가운데 가장 유리한 협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관세청이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는 원산지관리 시스템인 FTA PASS는 사용기업 편의 제고를 위해 '1 국가 다협정 세율 비교' 등을 제공하고 있어 중소수출기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관세사는 FTA PASS를 활용하여 특정 품목의

이용 가능한 협정 세율을 비교하고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등을 파악한 후, 거래 협정 국가의 수출입허가를 위한 식품안전기준, 검역 등에 대한 자료 및 정보를 컨설팅을 통해 중소수출기업에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관세무역전문가로서 관세사는 가장 효율적인 FTA 협정을 도출하여 제시함으로써 중소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관세사는 FTA 등 컨설팅 업무 비중을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통관업무 중심의 컨설팅에서 무역업무 전반에 걸친 컨설팅으로 더욱 고도화하고 있다.

더 나아가 관세사가 영세수출기업의 무역업무를 아웃소싱 받아 관리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관세사회는 관세사가 관세무역전문가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무역업무 관련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 나. 원산지증명 등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지원

RCEP 발효를 계기로 원산지증명은 이제 기관 발급과 인증수출자 자율발급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2022년 12월 1일 발효한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FTA는 기관발급이나 인증수출자 자율발급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3년 1월 1일 발효한 한-인도네시아 CEPA는 기관발급이나 인증수출자(발효 후 2년 이내) 및 수출자(생산자) 자율발급(발효 후 10년 이내)을 순차적으로 도입하기로 하였다.

인증수출자 자율발급은 수출국의 권한 있는 관세 당국이 인증수출자를 인증하고, 인증수출자에 한해 원산지 자율증명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기관증명과 자율증명의 장점을 결합한 방식이다.





관세 당국은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인증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을 발급할 권한이나 기관발급 할 때 첨부서류 제출을 간소화 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한시가 급한 FTA 활용과 대외신인도를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인증수출자 인증은 중요하다. 하지만 FTA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관세사 도움 없이 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을 충족하기는 매우 어렵다.

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더라도 원산지판정을 책임지고 서류보관과 검증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인증수출자 제도의 활용은 쉽지 않다.

인증수출자 인증 기업은 외부 원산지관리 전담자로 관세사를 지정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관세사는 중소기업이 인증수출자 인증받을 때뿐만 아니라, 인증수출자 자율점검, 인증유효기간 연장, 수출검증 대비 등 인증수출자의 사후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이 저조한 주요 원인인 전담인력 부족 및 원산지증명 등의 어려움에 대한 현실적 해법은 관세사의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다.



#### 4 맺음말

다가오는 2024년은 최초 한-칠레 FTA(2004)를 발효한 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FTA 수출활용률을 고려할 때 대기업 및 일정 규모를 갖춘 중견·중소기업은 안정적으로 FTA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이제는 영세수출기업에 초점을 두고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FTA 활용이 가능한 중소수출기업 발굴과 맞춤형 핀셋 지원을 위해 세분한 FTA 관련 통계가 필요하다.

또한, 기업 규모별로 인증수출자 인증 및 외부 원산지관리전담자 현황 등에 대한 통계가 제공된다면, 관세사가 수출중소기업의 인증수출자 인증지원에 얼마나 관여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 FTA 활용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관세사는 관세와 무역 관련 컨설팅 수행 중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책임을 지며 컨설팅 사후관리도 제공하고 있어 인증수출자 인증 등 FTA 컨설팅도 정부 주도보다는 민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활성화되어야 바람직하다.

컨설팅업무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세무역전문가로서 관세사가 컨설팅을 통해 수출입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풍토 조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FETIATRAD



# FTA 동향

- 케이(K)-지게차, 계속되는 수출 신기록
- 관세청, 아프리카 국가 간 교역 활성화를 위한 적극 지원 의사 밝혀
- 상반기 케이(K)-아이스크림 수출 역대 최대
- 외국 세관 통관제도 설명 듣고, 1:1 상담도 받으세요!
- 해외직구 관세,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납부하세요
- 통상협정 내 신통상 규범 동향 점검 및 대응전략 모색
- 지역별 하반기 수출상황 점검
- 국가별 동향: 중국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급성장  
중국 하이난 자유무역항 '해관봉쇄'란 무엇인가



## 케이(K)-지게차, 계속되는 수출 신기록

'23년 1~5월 지게차(forklift) 수출은 5억 2천 5백만 달러 (전년동기대비 56.8% ↑)로 동기간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하였다.

'21년, '22년 연이은 최대 수출기록 경신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가파른 수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20년 4억 8천 5백만 달러(전년동기대비 △25.5% ↓)로 감소한 수출이 '21년 반등하며 최초로 7억 달러 돌파하였고, '22년에는 9억 달러 돌파하였다. 특히 올해는 글로벌 경기둔화 심화에도 불구하고 더욱 가파른 수출 증가세<sup>1</sup>로, 역대 최대 연간 수출실적을 기대하고 있다.

수출은 수직 상승하는데 수입('23.1~5월 119백만 달러, △4.9% ↓)은 감소, 올해 무역수지 또한 최고 기록 경신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 공급망 재편 및 리쇼어링에 따른 자국내 공장신설 등 산업현장 수요가 발생할 예정이다.

또한, 세계 공급망 재편 현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코로나 봉쇄로 인한 물류, 생산 차질 등 공급망에 문제가 발생하며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리쇼어링'이 증가되고 있으며, 그동안 생산원가 절감 등을 위해 외국으로 진출했던 제조, 물류 거점이 자국으로 복귀되고 있다<sup>2</sup>.

이러한 시점에 지게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산업현장 구축에 필수장비인 지게차 수요가 늘면서 우수한 우리나라 제품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품목은 '23.1~5월 수출액 기준, 엔진차량(비중 75.9%) > 전동차량(20.8%) > 기타(3.3%)<sup>3</sup>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1~5월) 모든 종류의 지게차 수출액이 동기간 역대 최대를 기록하였고, 지난해 엔진차량 수출 선전으로 연간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다.

1 1~5월 수출액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21년 19.1 → '22년 25.7 → '23년 56.8  
 2 국제경영개발원(IMD, 'The localization of global supply chains amid pandemic', '20.11월)  
 3 지게차를 동력에 따라 '엔진차량(연료)'과 '전동차량(배터리)'으로, 그 외 무인운반기 등은 '기타'로 구분

올해는 전 품목에서 고른 증가세를 보였으며, 특히 창고 등 실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엔진(소형) 및 전동차량이 수출을 견인하였다.

전 품목 고른 수출 성장세로, 올해 연간 최대 수출기록을 전망하였다. 역대 최대 수출규모 성장(수출액 증가폭)으로 최고 수출 기록을 기대하였다. 작년 12월 월 수출액이 최초로 1억 달러를 넘어선 후, 올해는 이미 3개월(3월, 4월 역대 최대, 5월) 연속 1억 달러 이상 수출을 달성하였다.

이로써 올해 세계 수출 경쟁에서 선전을 기대한다. 국가별로는 '23.1~5월 수출액 기준, 미국(비중 70.5%) > 중국(5.2%) > 벨기에(3.4%) 등

93개국에 수출하였다.

코로나 전(~'19년) 이미 180개국 진출한 케이(K)-지게차, 이후에도 수출국을 늘려<sup>4</sup>, 현재('00년~'23.5월)까지 전세계 183개국에서 활약하였다. 수출 1위 국가인 미국은 세계 공급망 재편 및 리쇼어링에 따른 공장건설 붐<sup>5</sup> 등으로 '21년부터 매년 수출이 급증하였다. 올해(1~5월) 미국 수출은 이미 코로나 전('19년) 연간 수출을 상회, 같은 기간('19.1~5월) 대비로는 2.3배 증가한 규모이다.

중국, 캐나다 등도 역대 최대실적으로, 전체 수출 증가에 기여하였다.

### 【지게차 수출액 현황】

(단위: 백만달러,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1~5월
지게차	485 (△25.5)	709 (46.3)	948 (33.7)	525 (56.8)
엔진차량	344 (△31.7)	513 (49.1)	738 (43.8)	398 (60.6)
소형 (적재중량 3톤이하)	158 (△25.1)	240 (52.4)	368 (53.3)	213 (85.5)
중대형 (적재중량 3톤초과)	187 (△36.4)	273 (46.3)	370 (35.5)	186 (39.2)
전동차량	132 (△1.8)	181 (37.0)	168 (△7.6)	109 (54.3)
기타(무인운반기 등)	8 (△31.5)	14 (82.7)	43 (194.3)	17 (8.1)

\* 밑줄은 해당 기간별 역대 최대 수출액임

4 보네르, 세르비아, 퀴라소

5 인사이더(The US is building factories at a wildly fast rate', '23.6월)

## 관세청, 아프리카 국가 간 교역 활성화를 위한 적극 지원 의사 밝혀



고광호 관세청장은 7.26(수, 16:30~17:30) 서울 롯데호텔에서 웹켈레 메네(Wamkele MENE)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AfCFTA)<sup>6</sup> 사무총장을 만나 아프리카 권역내 국가 간 무역원활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면담은 관세청의 선진화된 전자통관 시스템과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21건, 59개국) 체결 경험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의 성공적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는 가입인구(12억 명) 및 회원국 수(54개국) 측면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으로 그 경제적 파급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지만, 회원국이 다양한 만큼 실제 이행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sup>7</sup>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고 청장은 “관세청은 아프리카 역내 경제통합과 무역원활화를 위해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함께 「아프리카 대륙 싱글윈도우<sup>8</sup> 구축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며,

“관세청과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 사무국이 긴밀하게 협력하면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고 청장은 “자유무역협정 국가별, 품목별 원산지 판정 기준이 다르고, 원산지 관련 서류도 복잡하여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혜택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아프리카 국가의 자유무역협정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수출기업이 체계적으로 원산지를 관리하고, 국가 간 원산지증명서를 손쉽게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6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AfCFTA,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협정(‘21.1.1. 시행)은 아프리카 연합(AU) 55개국 중 54개국이 가입하고, 46개국이 비준한 아프리카 역내 자유무역협정(FTA)

7 협정이 시행됐으나 세부적인 원산지 규정 확정이 어려워 자유무역협정을 적용한 무역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국가가 참여하여 시범운영 중(‘22.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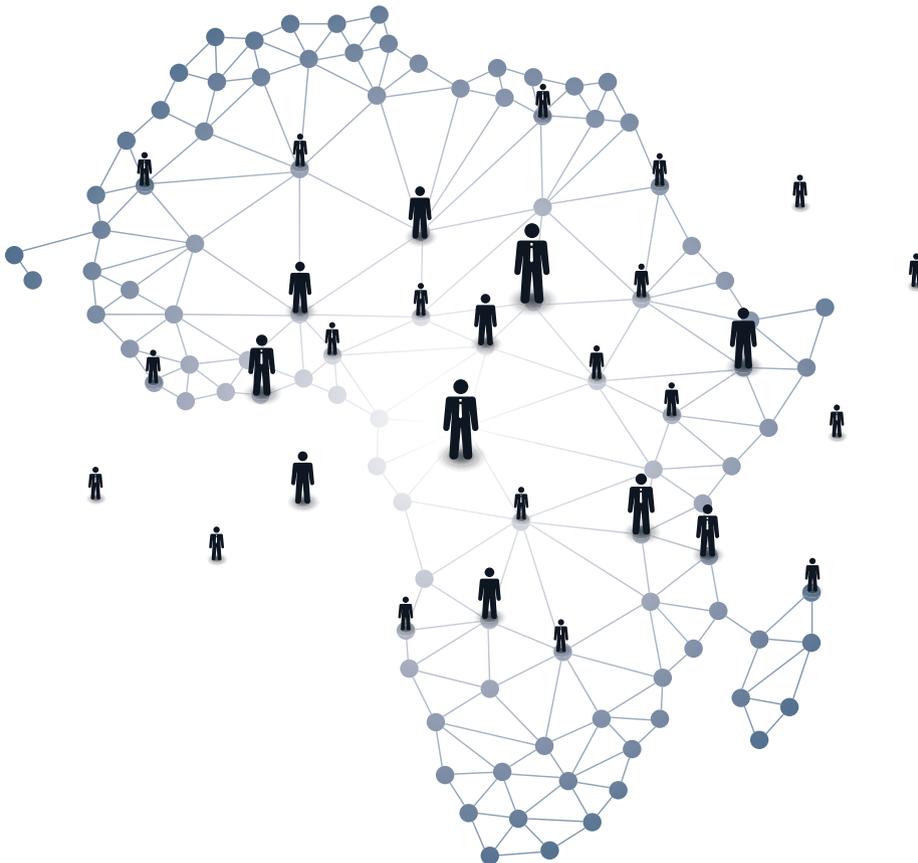
8 수출입 화물이 최초로 권역내 도착하여,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무역서류의 제출 절차를 표준화, 간소화하는 시스템으로 시간과 비용이 크게 감축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메네 사무총장은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 이행 가속화와 역내 교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진화된 전자통관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 관세청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아프리카에 맞는 전자통관시스템에 대하여 연구조사를 거쳐 시스템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원확보에도 공동으로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아프리카에 ‘11년 탄자니아를 시작으로 ‘22년 마다가스카르까지 총 6개국에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였고, 14개 국가에 세관현대화 컨설팅을 시행하였다.





## 상반기 케이(K)-아이스크림 수출 역대 최대

'23년 상반기 아이스크림 수출액은 5천 9백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9.8% 증가하며 동기간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수입(30백만 달러, 7.5% ↑) 역시 늘었으나, 수출이 교역을 주도하며 무역수지는 2천 9백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 지난해 역대 최대 흑자기록(22백만 달러)을 반기 만에 넘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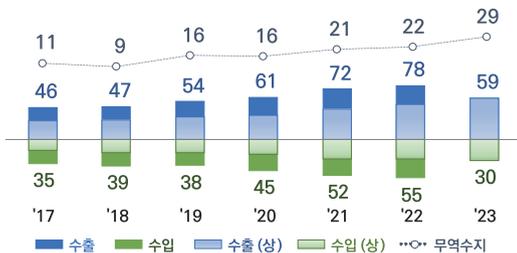
무더위를 식혀줄 간식이 필요한 때 한국문화 인기까지 더해져 우리나라 제품을 찾는 손길이 더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수출물량(18천 톤)은 아이스크림(개당 75g 기준) 약 2억 4천 만개 상당으로, 최근 10년 사이 약 3배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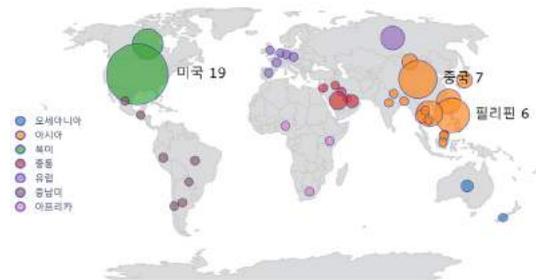
한국 아이스크림이 가장 많이 수출되는 국가는 미국이며 다음은 중국, 필리핀 등의 순이다. '23년 상반기 수출액 기준 비중(%): 미국(31.6), 중국(12.2), 필리핀(10.3), 캐나다(7.9), 베트남(5.7)순이다.

코로나에도 꾸준히 수출문을 넓혀 지난해 최다인 54개국, 올해 상반기는 반기 최다인 49개국으로 수출했다.

【수출입 현황(백만달러)】



【'23년 상반기 국가별 수출 현황(백만달러)】



49개국, 59백만달러 수출

## 외국 세관 통관제도 설명 듣고, 1:1 상담도 받으세요!



관세청은 8월 29일(화)과 8월 31일(목), 이틀에 걸쳐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12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하였다.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 및 해외 통관 분쟁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12년부터 매년 본 설명회를 개최하여 최신 해외 통관정보, 외국 세관 통관 시 유의 사항 등을 수출·물류업계에 제공해 왔다.

이번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교역국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우리나라 관세관<sup>9</sup>들이 ▲급변하는 대미 무역환경과 美 관세행정 핵심 현안, ▲중국의 관세행정 변화 및 통관 제도, ▲베트남의 내국 수출입제도 개정 추진 동향 및 대책 등 7개국<sup>10</sup>의 관세행정 최근 동향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통상 무역관을 발표자로 초청하여,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sup>11</sup> 관세 감면을 활용한 시장 진출'에 대해 안내하였다.

관세청은 보호무역주의 심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 기업이 해외 현지에서 통관 지연, 품목분류 분쟁 등 통관 어려움을 지속 경험하는 상황에서, 이번 설명회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 관계자들이 주요 교역국의 최신 관세행정 동향을 파악하고 현지 통관 어려움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9 주재국 현지 관세 당국과 접촉하여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통관 어려움 해소 등을 수행

10 미국, 중국, EU, 일본, 태국, 인도, 베트남

11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올해 1월 한-인니 CEPA 발효

## 해외직구 관세,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납부하세요

관세청,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 시행 ... 카카오톡(문자)으로 납세정보 알림-

관세청은 오는 9.1일(금)부터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리한 납세를 위해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는 개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 물품 수입단계에서 부과되는 관세, 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등 각종 세금<sup>12</sup>을 스마트폰을 통해 간단히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는 지난 8.1일(화) 여행자에게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를 제공한 데 이어 해외직구 이용자까지 모바일 사용범위를 확대해 국민의 납세편의를 제고하는 조치이다.

해외직구 건수는 연간 약 1억 건<sup>13</sup>에 이르고 개인 구매 물품에 대해 매년 약 300만건의 세금납부 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 중 약 200만건은 물품 구매 시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주문·결제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세금을 해외직구 판매자 측에서 납부하고 있으며, 세금 미포함 조건으로 구매한 약 100만건을 개인이 직접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그동안 개인이 세금을 납부하려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의 회원가입, 공동인증서 등록 절차를 거치거나 ▲관세사로부터 납세정보를 안내받아 은행 앱(App)에서 전자납부번호를 기입하는 등 복잡한 절차<sup>14</sup>를 거쳐야 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결제원과 협력하여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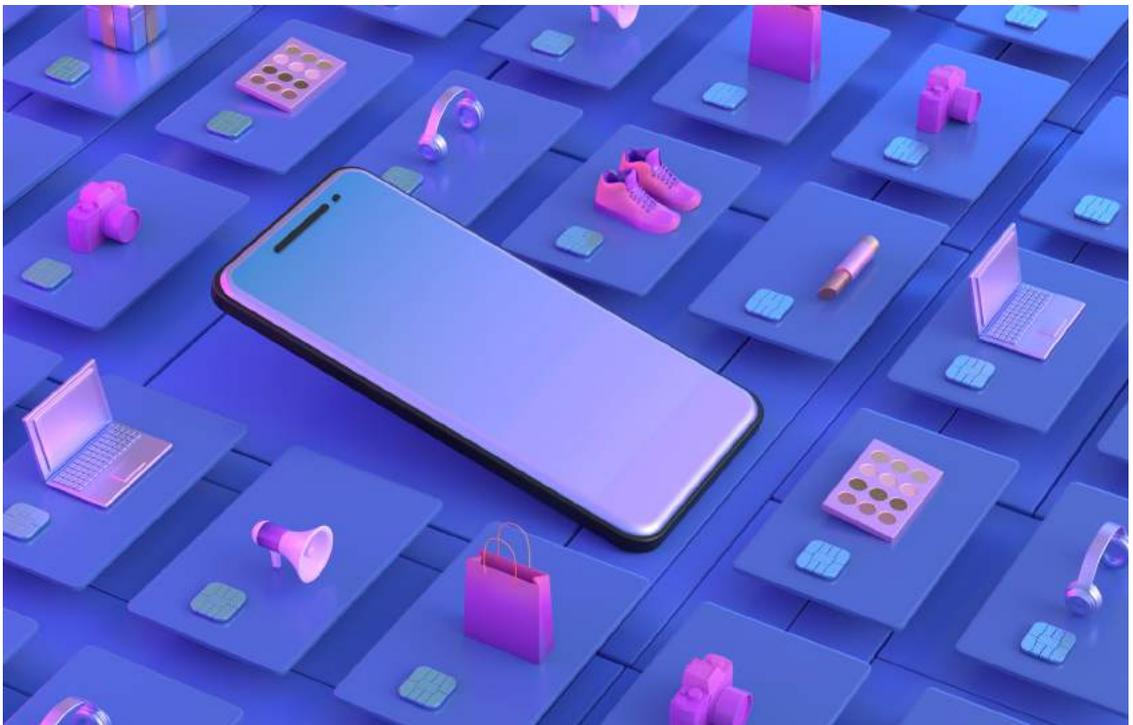
12 물품 수입단계에서 부과되는 관세, 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등 각종 세금

13 해외직구 현황(만건) : ('20) 6,357 → ('21) 8,838 → ('22) 9,612

14 은행 로그인 → 공과금 메뉴(관세선택) → 납부서 번호(19자리) 입력 → 세금납부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카카오톡(문자) 알림] 관세청에서 납세자 명의의 전화번호<sup>15</sup>로 세금납부 알림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 미수신 시 일반 문자 메시지) 발송
- ② [세금내역조회] 알림 메시지의 “열람하기”를 클릭하여 간편인증 절차를 거쳐 납부해야 할 세금내역 조회
- ③ [바로 납부] 세금내역 조회 후 “납부하기”를 클릭하여 자동연결된 관세납부전용 인터넷 지로 화면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바로 납부
- ④ [납부완료 알림] 세금납부가 완료되면 관세청에서 “납부완료” 메시지 발송



15 수입신고서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시 등록된 납세자 휴대폰번호

## 통상협정 내 신통상 규범 동향 점검 및 대응전략 모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7월 중 코리어나 호텔에서 최근 주요국 간 통상협정 체결 과정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노동·환경 등 신통상 규범 논의 동향을 점검하고, 우리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통상학회와 공동으로 제2차 신 자유무역협정(FTA) 전략토론회(포럼)를 개최하였다.

송백훈 국제통상학회장은 “영-호 자유무역협정(FTA)(’23. 5. 발효) 등 사례에서 보듯 최근 체결되는 주요국 간 통상협정 내 노동, 환경 등 분야가 독립적인 부분(챕터)을 구성하고 있다.” 라면서, “최근 논의되는 신통상 규범을 긴밀히 점검(모니터링)하고 앞으로 우리 정부 통상협정 추진전략 수립 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하였다.

안창용 자유무역협정(FTA) 정책관은 “지난주 부산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4차 협상에서도 노동, 환경, 포용성 등이 주요 협상 분야로 다루어졌다.” 라면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신규 추진되는 자유무역 협정(FTA) 내에서도 관련 규범이 강화되는 추세여서 우리 기업들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역량 향상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산업부는 오늘 토론회(포럼)에서 논의된 사항을 고려하여 하반기 중점적으로 논의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등 주요 협상에서 우리 정부·산업계 및 이해관계자 생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 전략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 지역별 하반기 수출상황 점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하반기 무역수지 개선과 수출 플러스로의 조속한 전환을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7월 21일(금) 「제7차 수출지역 담당관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지역별 수출 상황을 점검하고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올해 상반기 지역별 수출 상황을 점검한 결과, 4대 수출시장 중 대(對) 중국(△26.0%)·아세안(△20.4%) 수출은 20% 이상 감소하였고, 대(對) 미국(0.3%)·유럽연합(EU)(5.7%)은 소폭 증가하였다.

중국은 정보기술(IT)업종을 중심으로 대(對)세계 수출 부진이 중간재 수입수요 감소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39.8%)·디스플레이(△47.9%)·석유화학(△23.9%)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우리 기업의 전자제품 국제(글로벌) 생산기지가 밀집한 베트남(대(對) 아세안 수출의 48.3%) 수출 또한 정보통신(IT) 업무 현황 부진으로 반도체(△29.1%)·디스플레이(△17.0%) 수출이 급감하였다.





한편 미국·유럽연합(EU)은 자동차 수출 호조세(美54.2%, EU55.6%)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기차·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확대로 일반 기계(美4.1%, EU8.7%)·양극재(美28.6%, EU92.3%) 수출도 양호한 흐름을 보인다.

산업부는 하반기에 지역별 수출 흐름과 여건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무역구조 혁신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신흥국과의 통상 연결망(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새로운 수출기회를 새로 마련하고, 주요국과의 정부 간 통상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상 세일즈 외교(경제 외교)를 통해 발굴한 수출·수주 사업(프로젝트)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성과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안덕근 본부장은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수출확대인 만큼, 신흥국들과의 무역 투자 촉진 프레임워크(TIPF) 구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우리 수출기업들의 현지 진출 애로를 자세히 점검(모니터링) 및 해결해 나가고, 디지털 경제·저탄소 친환경 등 신(新)통상 현안(이슈)도 새로운 수출 기회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국가별 동향 : 중국



## 중국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급성장

### ▶ 중국 2차전지 소비량 세계 최대 규모, 2026년부터 배터리 퇴역량 급증

중국 전기차 시장은 2014년 중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 시행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했으며, 최근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및 소비 침체에도 불구하고, 2022년 한 해 동안 중국 전기차 생산량 및 판매량은 706만 대, 689만 대를 기록해 전년 대비 각각 96.9%, 93.4% 성장했다.

2차전지는 주로 인산철리튬과 삼원계로 분류되며, 중국에서 전기차가 대량 판매되기 시작한 시기부터 2차전지의 평균 수명(5~8년)을 고려했을 때 2020년부터 배터리 퇴역이 본격화돼 2026년에는 150GWh, 2032년에는 1TWh까지 배터리 퇴역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2~2035년 연평균 복합 성장률(CAGR)은 3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 시장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구축돼있는 국가는 일찍이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선점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으며, 중국 정부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등 정부 부처 주도로 2018년부터 폐배터리 활용 방안 등 신형 산업에 대한 육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가장 최근 정책으로는 2023년 3월 중국시장관리 감독총국과 공업정보화부에서 발표한 '신에너지차 동력배터리 순차이용 제품에 대한 인증업무 공고'를 들 수 있다.





중국은 2차전지 소비량이 전 세계 60%이상을 차지하는데, 소비량 대비 자국 내 광물 발굴 및 매장량이 충분치 않아 2차전지의 주요 원자재(리튬, 코발트 및 니켈)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중국 정부는 향후 폐배터리 추출하고 재가공한 원료 물질을 통해 주요 원자재의 해외 의존도를 일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폐배터리 기업 간 경쟁 심화, 산업 투자 가속화**

화안증권(华安证券)에 따르면, 중국 폐배터리 시장 규모는 2025년 1000억 위안에서 2030년에는 1,70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이치차(爱企查)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중국 내 폐배터리 관련 회사는 5만여 개사에 달한다.

현재 중국 폐배터리 관련 기업은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 2차전지 제조사, 배터리 원자재 공급사 및 완성차 기업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중국 환바오짜이셴(中国环保在线)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기준 중국에서 진행 중인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프로젝트 규모는 1000억 위안 이상이며, 전기차 회수, 폐배터리 보관 및 분리, 재활용 가능한 원료 물질 추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10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 **중국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의 해외 투자 동향**

2022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발표에 이어 올해 3월 EU에서도 '핵심원자재법(CRMA)'을 발표하며 세계 각국은 에너지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등의 친환경 산업 지원 정책을 앞다퉈 시행하고 있다. 중국의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기업도 해외기업과

합자 또는 단독 투자로 해외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으며, 중국-해외 기업 간 협업 프로젝트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미국, 유럽 지역 외에도 거린메이(格林美), 화여우구예(华友钴业) 등 중국기업을 필두로 한국기업과의 다양한 협력사업도 진행 중이다. 한국P사는 중국H사와 공동 투자로 공장을 설립해폐배터리에서 추출한 원료 물질로 니켈, 코발트, 탄산리튬 등 원자재를 생산 및 납품하고 있으며, 한국E사도 중국기업과 10억 달러 이상을 공동 투자해 연간 15만 톤 이상의 배터리 전구체 생산 공장을 구축하는 등 양국 기업 간 폐배터리 재활용 협업 프로젝트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 ▶ 시사점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2차전지가 퇴역하면서 시작된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은 이미 5만여 개에 달하는 기업이 '배터리 원자재 공급사-2차전지 제조사-전기차 완성차 기업-배터리 회수 및 재활용 기업' 산업체인을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수많은 기업이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하지만, 선도하는 기업이 딱히 뚜렷하지 않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며, 향후 더 많은 기업이 시장 발전 가능성을 보고 뛰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신에너지 배터리 재활용협회(中国新能源电池回收协会) 관계자는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2년간 중국은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했으며, 수많은 기업이 계속해서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자본 또는 기술력이 부족한 기업은 향후 산업 안정화 단계를 거치면서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이 확실시되는 산업인 만큼 기술 및 장비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높아져 더 많은 기업에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향후 2030년 탄소피크, 206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중국 정부는 정책을 통해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을 지속적으로 육성할 것이며, 관련 해외 기술에 대한 수요도 꾸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우리 기업도 중국 정부의 육성 정책과 산업 및 기업 동향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중국 폐배터리 산업체인별 선도기업과 프로젝트 협력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자료: 중국 신에너지 배터리 재활용 협회, USGS,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홈페이지, KOTRA우한무역관 자체 정리 자료 등<sup>16</sup>



16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80&CONTENTS\\_NO=1&pNttSn=204650](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80&CONTENTS_NO=1&pNttSn=204650)

국가별 동향 : 중국



## 중국 하이난 자유무역항 '해관봉쇄'란 무엇인가

### ▶ 개요

2020년 6월 1일 중국 정부는 정식으로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총체방안(海南自由贸易港建设总体方案)>을 발표했다.

해당 문서는 무역자유화, 투자자유화, 국경 간 자금이동 자유화 등 11개 분야, 총 39개의 구체적인 정책을 포함했고 이를 통해 하이난을 여타 자유무역시험구 대비보다 더 높은 자유도를 자랑하는 자유무역항으로 만들 수 있었다.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총체방안(海南自由贸易港建设总体方案)에 따르면, 비즈니스 환경 개선 및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까지 무역자유화 및 투자 편리화를 중심으로 자유무역항 제도 및 기틀을 잡을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2035년까지 제도와 시스템을 더욱 성숙하게 업그레이드하고 2050년까지 세계 시장에서도 높은 영향력을 갖춘 자유무역항 구축 등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모든 기초적인 토대는 2025년까지 마련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특히 무엇보다 충분한 관리감독이 실시돼 자유무역항 정책 시행과 대외개방 확대에 의해 시장질서가 교란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하이난 “해관봉쇄”(封关运作) 작업을 서두를 예정이다.

이미 하이난 성정부 관계자는 2025년까지 해관봉쇄를 위한 준비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해관봉쇄'(封关运作)란

해관봉쇄의 핵심은 크게 3가지, '대외개방(一线放开)', '내부관리강화(二线管住)', '하이난 섬 내 자유화(岛内自由)'이다. '대외개방(一线放开)'은 즉,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달성한다는 취지이다.

‘내부관리강화(二线管住)’는 자유무역항과 중국 본토 간 적절한 관리통제를 실시해 자유무역항 정책 실시에 따른 중국 지역별 정책·세제 차이로 인한 시장질서 교란을 방지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리하면, 해외로부터의 상품·화물·선박 등의 하이난 입항은 자유롭게 이뤄지도록 하지만 이러한 물품·선박의 하이난에서 중국 본토로의 이동은 일반적인 해관제도에 따라 관리·통제해 시장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

다만 관리대상은 주로 화물과 상품, 운송도구 등을 포함하며, 인적교류에는 별다른 제한이 가해지는 것은 아니다.

해관봉쇄가 실시되면 하이난은 성 전체가 보세구처럼 간주되기 때문에 중국 본토와 하이난 간 화물이 이동하면 수출입으로 간주된다.

하이난성 선전부 왕빈(王斌) 부장은 하이난은 이미 섬 전체에 걸쳐 해관봉쇄를 가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 2023년까지 하드웨어 분야 준비가 완료, 2024년 기타 제반사항 준비 완료, 2025년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추진 작업에는 HW·SW·항구 기획 및 건설 등 64개의 임무, 항구건설·해관검사시설 건설 등 31개 프로젝트, 각종 자유무역항 정책의 적합성 시험을 위한 27개의 스트레스 테스트(压力测试) 등 관련 작업 및 준비절차들이 포함돼 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영관세로 하이난에 유입되는 외국 화물들로 인한 하이난 산업에의 영향 유무, 해당 화물들이 본토로 유입될 경우 본토 산업에 대한 영향 유무 등을 집중적으로 측정할 예정이다.

또한, 테스트에 따라 하이난 자유무역항 세제 개혁을 추진, 증치세를 폐지하고 매상세를 도입하되 몇 %로 책정할 것인지, 세수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등 내용도 포함돼 있다.

더 나아가 기업의 하이난 진출 시 승낙즉입제(承諾即入制)를 도입하되 리스크 감독관리 방안에 대한 준비사항도 포함돼 있다.

승낙즉입제란, 국가안전·사회안정·생태계 보호·공공이익 등 국가가 지정한 영역 외 분야에 진출하고자 할 경우 현지정부의 허가 혹은 비안이 불요하고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서류만 제출하고 바로 투자경영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가운데 특히 금융 분야의 대외개방에 있어 준비가 많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금융 분야 리스크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다른 산업 분야 대비 더욱 크고 빠른 만큼 국무원과 중앙은행 등 핵심부처와 함께 검토하고 협력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이난의 해관봉쇄는 하이난 섬을 봉쇄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대외개방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시장질서가 원만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를 수정하고 개혁해 경제발전을 이루는데 목적이 있다.

## ▶ 주요 기대효과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총체방안(海南自由贸易港建设总体方案)”은 유의미한 감독관리가 이뤄진다는 전제 하에 섬 전체의 해관을 봉쇄하고 해관감독관리 특수구역으로 조성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해관봉쇄 및 세수제도 개정 이후에는 지정된 품목 외에는 모두 수입관세를 면제하는 조치를 통해 자유무역항의 개방도를 더욱 높이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에서 가장 낮은 개인소득세 적용, 국경 간 자금이동 자유화 등 정책에 힘입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다수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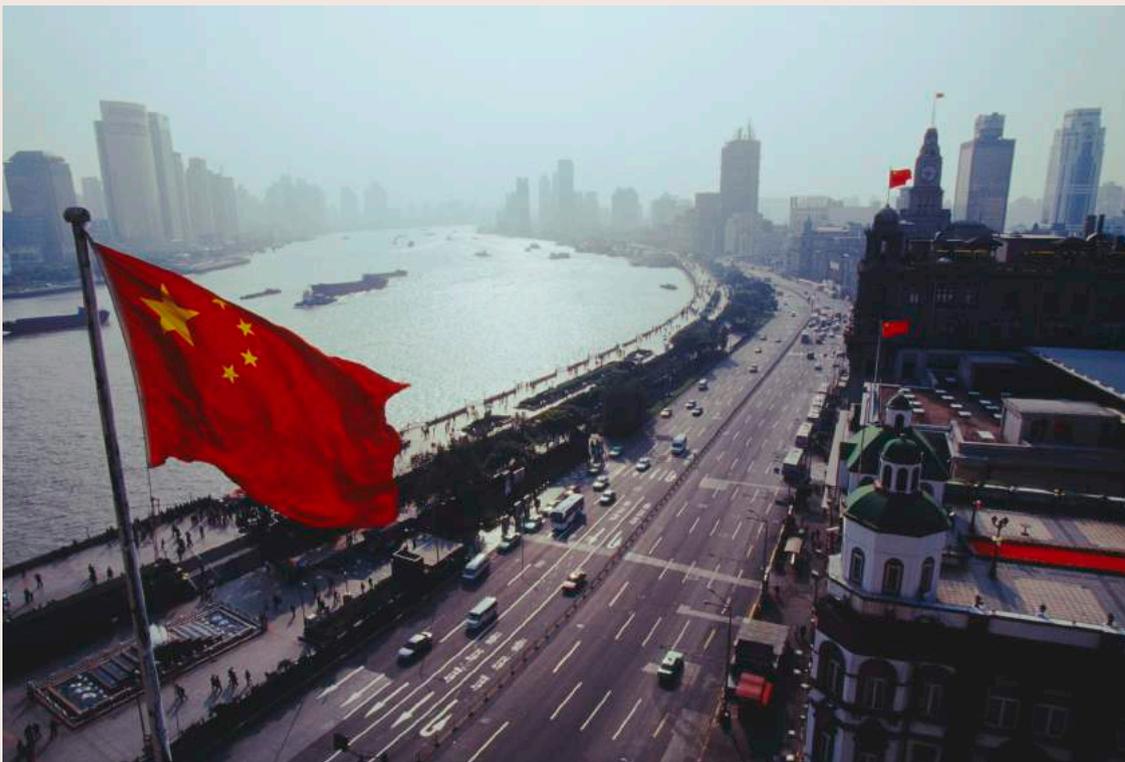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의 장젠핑(张建平) 부주임은 우대정책에 힘입어 하이난 특유의 현대 서비스업, 선진제조업, 농업 등 산업의 발전, 우수인재의 유입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관광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따라 많은 관광객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고 이에 따라 이도면세 시장이 더욱 확대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주춤했던 이도면세 시장은 이미 2021년 600억 위안 규모를 돌파했고 2023년 엔데믹에 따라 상반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 이상 성장하며 반등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하이난 면세 소비시장 현황 및 추세(海南免税消费市场现状与趋势)” 보고서는 2025년까지 이도면세 시장이 1600억 위안 규모로 급성장하고 세계 최대 관광소비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자료: 중국재경보(中国财经报), 신화사(新华社), 하이난일보(海南日报), 하이난 자유무역항 홈페이지(海南自贸港), Vogue Business, 평파이신문(澎湃新闻), KOTRA 광저우 무역관 자료 종합<sup>17</sup>



17 [https://dream.kotra.or.kr/dream/cms/news/actionOutNewsDetail.do?pageNo=2&pagePerCnt=10&SITE\\_NO=2&MENU\\_ID=310&CONTENTS\\_NO=1&recordCountPerPage=10&pTemplateCd=NT0101&pDataId=205516&pStartDt=&pEndDt=&sSearchVal=&sGbnCd=&bbsSn=242&pUntyDsetId=&gbn=In&sSearchVal=](https://dream.kotra.or.kr/dream/cms/news/actionOutNewsDetail.do?pageNo=2&pagePerCnt=10&SITE_NO=2&MENU_ID=310&CONTENTS_NO=1&recordCountPerPage=10&pTemplateCd=NT0101&pDataId=205516&pStartDt=&pEndDt=&sSearchVal=&sGbnCd=&bbsSn=242&pUntyDsetId=&gbn=In&sSearchVal=)

# 2023년 우리나라 FTA 체결 현황



\*CEPA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





# FTA EXPERTS

RCEP 발효를 통해 본 한·중·일 주요 수출품의  
대호주 불변시장점유율(CMS) 분석

라공우 | 제주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아세안 주요국의 품목별 원산지기준 비교연구

신범수 | 배재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학과 교수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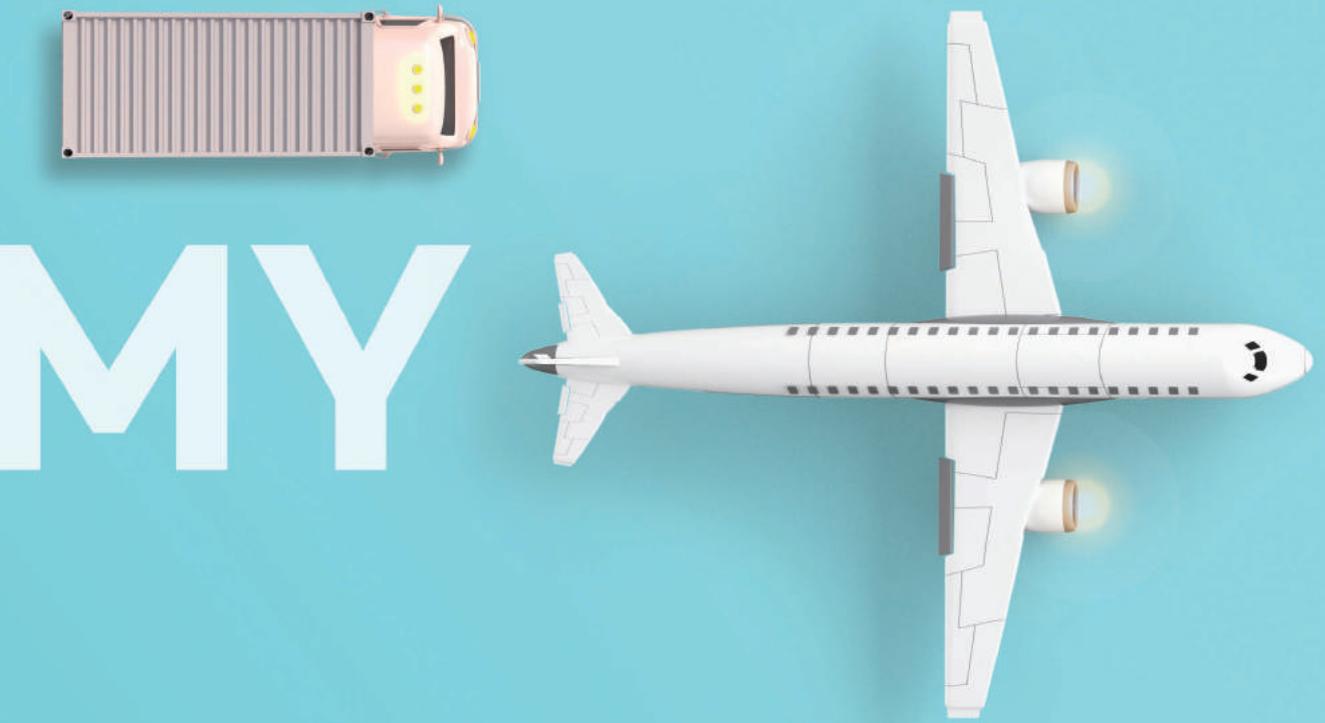
# ECONOMI



## RCEP 발효를 통해 본 한·중·일 주요 수출품의 대호주 불변시장점유율(CMS) 분석



라공우  
제주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 1 서언

RCEP<sup>1</sup>은 아세안 10개국<sup>2</sup>과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이며,<sup>3</sup> 이 15개 회원국 경제

규모는 전 세계의 30%를 차지하고 RCEP 회원국 인구 합계는 22억 6,000만 명으로 전 세계의 29.9%에 달한다.

1 RCEP은 2012년 캄보디아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 공동선언문을 통해 2015년까지 타결하기로 했지만 일정이 지연되면서 2019년 11월 협정문을 타결했다. 그 후 중국과 인도의 저가 제품이 경쟁 우려로 협상에서 빠지면서 2020년 15개국 간 최종 타결 및 서명이 이뤄졌다. 한국보다 비준 절차를 일찍 마친 중국, 일본 등 10개국에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협정이 발효되며, 한국은 2022년 2월 1일부터 협정이 발효되었다.

2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3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에 따르면 RCEP의 명목 국내총생산(GDP)과 무역 규모는 각각 26조 3,000억 달러, 5조 4,000억 달러로 전 세계 비중의 30.0%, 28.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통합시장인 USMCA의 GDP(24조 4,000억 달러(27.9%), 무역 규모는 2조 5,000억 달러(13.6%))보다 큰 수준이다.

현재 RCEP 회원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액은 2,690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RCEP은 체결국 간의 무역 투자 장벽을 전면적으로 낮추거나 관세 철폐 효과를 예상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한국, 중국, 일본 간의 FTA를 체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RCEP 발효를 통하여 한국은 대양주 국가(호주, 뉴질랜드)와의 무역 관계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무역 규모 확대를 꾀할 수 있는 지역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의 호주에 대한 교역 규모는 2022년 기준으로 수출은 약 187억 달러, 수입은 약 449억 달러로 최근 5년 동안 역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한국은 호주에 대한 무역수지는 원자재(철광석, 유연탄 등) 수입으로 인해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다.

본고에서는 호주 시장에 대한 한국의 주요 20개 수출 상품을 토대로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의 대호주 시장에서의 불변시장점유율(CMS) 산출을 통해 한국의 주요 수출 상품의 경쟁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2 RCEP의 특성

RCEP은 최초의 '범아시아(Pan-Asia) FTA'로서, 참여한 개도국들의 이해관계가 많이 반영된 중간 수준의 FTA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RCEP 체결 이전 15개 국가들 사이에는 대부분 양자 간 FTA가 체결되어 있었고 2조 3천억 달러(2019년 기준) 규모의 상품무역 자유화 수준도 이미 83%에 달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무역 자유화 효과가 제한적으로 평가되고 있었다.<sup>4</sup>

또한, RCEP 협상에 참여한 개도국들이 자국 경제상황을 적절히 반영한 무역 자유화를 추진할 수 있게 여지를 준 것도 성공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더불어 무역규칙 면에서 기존의 'ASEAN+1 FTA'를 하나의 FTA로 통합함으로써 아시아 지역에 새로운 통일된 무역규범을 제정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한국, 중국, 일본을 하나의 FTA 테두리 안에 포함시키게 되었고, 동북아와 아세안 국가들 간 경제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RCEP 이전까지 한·일, 중·일 간에는 FTA가 없었으나 RCEP을 통해 한·중·일 3국은 낮은 수준이지만 단일시장으로 통합되었다.

RCEP은 향후 한·중·일 FTA를 추진하는 동시에 역내 교역 비중을 높이면서 아시아 역내 경제질서 재편에 따른 지역경제통합의 플랫폼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RCEP은 그동안 FTA에서 다루지 않았던 많은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협정의 적용 범위와 개방 측면에서 더 포괄적이면서도 높은 수준의 협정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가 수출 중소기업 502개 기업을 대상으로 "RCEP 관련 중소기업 의견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RCEP에 참여한 15개 국가와 무역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94.8%이며(RCEP 참여국 중에서는 중국(64.5%), 베트남(48.9%), 일본(39.3%), 태국(30.3%) 등과 거래), 응답 기업의 83.3%는 RCEP에

4 이윤영(202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의의와 전망",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제1권 제30호, pp.1-5.

대해서 잘 모른다고 답했는데 인지도가 낮은 이유로 정부 홍보 부족, 언론 보도 미흡, 중소기업의 관심 부족 등을 들었다.<sup>5</sup>

RCEP 참여가 FTA 미체결국이었던 일본과의 FTA 체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유는 일본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 강화, 일본 원자재를 비롯하여 부품 수입의 단가 인하 등을 들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어떻게 RCEP을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심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sup>6</sup>

### 3 한국의 대호주 무역 현황

한국의 대호주의 무역 현황을 보면 <표 1>과 같은데, 우선 호주에 대한 수출은 2018년 96억 1,043만 달러에서 2022년 187억 5,303만 달러로 거의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수입을 보면, 2018년 207억 1,864만 달러에서 2022년

449억 2,940만 달러로 역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은 호주에 대한 무역수지는 원자재(철광석, 유연탄 등) 수입으로 인해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다.

[표 1] 한국의 대호주 무역 현황

(단위: 천불, %)

연도	호주			
	수출		수입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22	18,753,026	92.3	44,929,397	36.5
2021	9,750,478	57.6	32,917,963	76.0
2020	6,188,528	-21.6	18,707,121	-9.2
2019	7,890,566	-17.9	20,608,238	-0.5
2018	9,610,425	-51.6	20,718,640	8.1

자료: 한국무역협회

5 중소기업중앙회(2020), 「RCEP(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중소기업 의견조사 보고서」.

6 최준호(2022), 「RCEP 발효에 대비한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23권 제1호, pp.23-38.

## 4 한·중·일 주요 수출 상품의 대호주 시장에서 불변시장점유율 분석<sup>7</sup>

먼저, 분석 대상 상품은 한국의 대(對)전 세계 수출 상위 20개 품목<sup>8</sup>으로 하여 한국, 중국, 일본 수출 상품 HS 코드 4단위 기준으로 추출하였다.

한국의 대호주 시장에서 수출경쟁력을 보다 더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차원에서 불변시장점유율(Constant Market Share, CMS) 모델을 사용하여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 간의 경쟁력 분석을 하였다.

불변시장점유율 분석은 수출의 변동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1951년 처음으로 무역 분야 연구에 도입되었는데, 이 모델은 특정한 국가의 시장점유율의 변화를 여러 가지 요소로 세분하고 각각의 분해된 요소가 수출 변화에 기여한 부분을 설명하는 데 편리하다는 평을 받았다.

이 모형에 의하면 일정한 기간에 전 세계 시장에서 특정 국가의 시장점유율은 4가지 요소에 의해 나뉘는데, 이는 상품구성 효과(commodity composition effect), 시장점유율 효과(market share effect), 경쟁력 효과(competitiveness effect), 시장분배 효과(market distribution effect) 등으로 나타난다.



7 불변시장점유율 분석 내용은 2023년 3월 발간된 국제상학 논문집 조일림, 라공우의 “한국 주요 수출 상품의 대호주 및 뉴질랜드에 대한 불변시장점유율(CMS) 분석 -중국과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의 내용 중 대호주 불변시장점유율 분석표를 발췌하여 인용함.

8 HS 2710(석유와 역청유), HS 2841(산화금속산염이나 과산화금속산염), HS 2902(환식탄화수소), HS 3304(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 HS 3901(에틸렌의 중합체), HS 39079(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 HS 7208(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HS 7210(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HS 8473(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HS 8479(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 HS 8486(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 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HS 8507(축전지), HS 8517(전화기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 HS 8523(디스크·테이프·솔리드 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스마트카드와 음성이나 그 밖의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 HS 8529(부분품), HS 8534(인쇄회로), HS 8542(전자집적회로), HS 8703(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 HS 8708(부분품과 부속품), HS 8901(순항선·유람선·페리보트(ferry-boat)·화물선·부선(barge) 등)

한국의 대호주 및 뉴질랜드의 수출증감액 = 한국의 비교년도 대호주 수출액  
 - 한국의 기준년도 대호주 수출액

$$\begin{aligned}
 &= \sum_i (EX_{it_1} - EX_{it_0}) \\
 &= \sum_i (IM_{it_1}\mu_{it_1} - IM_{it_0}\mu_{it_0}) \\
 &= \sum_i [IM_{it_1}(\mu_{it_1} - \mu_{it_0}) + \mu_{it_0}(IM_{it_1} - IM_{it_0})] \\
 &= \sum_i IM_{it_1}(\mu_{it_1} - \mu_{it_0}) + \sum_i \mu_{it_0}(IM_{it_1} - IM_{it_0}) \\
 &= \sum_i IM_{it_1}(\mu_{it_1} - \mu_{it_0}) + \sum_i \mu_{it_0} [(IM_{it_1}(\omega_{it_1} - \omega_{it_0}) + \omega_{it_0}(IM_{it_1} - IM_{it_0}))] \\
 &= \sum_i IM_{it_1}(\mu_{it_1} - \mu_{it_0}) + \sum_i \mu_{it_0} IM_{it_1}(\omega_{it_1} - \omega_{it_0}) + \sum_i \mu_{it_0} \omega_{it_0}(IM_{it_1} - IM_{it_0})
 \end{aligned}$$

$EX_i$ : 한국의 i제품 대호주 수출액  
 $IM_i$ : 호주의 i제품 수입액  
 $IM$ : 호주의 총 수입액  
 $\mu_i$ : 한국의 i제품 호주 시장 점유율  
 $\omega_i$ : 호주의 총 수입 중 i제품의 비중  
 $t_1$ : 비교년도(2021년)  
 $t_0$ : 기준년도(2012년)

[표 2] 불변시장점유율(CMS) 모델의 해석

요인	경쟁력 요인 (Competitive effect)	상품공급구조 변동 요인 (Secon-order effect)	수입 규모 변동 요인 (Scale effect)
수식	$\sum_i IM_{it_1}(\mu_{it_1} - \mu_{it_0})$	$\sum_i \mu_{it_0} IM_{it_1}(\omega_{it_1} - \omega_{it_0})$	$\sum_i \mu_{it_0} \omega_{it_0}(IM_{it_1} - IM_{it_0})$
개념	수출국의 경쟁력(점유율) 변동이 수출액 증감에 미친 효과	전 세계 수입 수요의 상품별 비중의 변화가 수출국 전체 수출 규모 증감에 미친 효과	전 세계 수입 수요의 변화가 수출국의 수출 규모 증감에 미친 효과
의미	그 효과가 (+)이면 경쟁력 강화이며, (-)이면 경쟁력 약화임	효과가 (+)이면 상품구성이 비교우위, (-)이면 비교열위	효과가 (+)이면 긍정적이고, (-)이면 부정적임을 나타냄

자료: 심재희, “대인도 수출산업의 경쟁력과 수출변동요인 분석”, 인문사회21, 제10권 4호, 아시아문화학술원, 2019.8. p.215.



먼저, 한국의 대호주 시장에서 2012년에서 2021년까지 수출증감액 분해 결과를 보면, 환식탄화수소(2902), 에틸렌의 중합체(3901), 폴리아세탈 수지 등(3907), 평판 열간(熱間) 압연 제품(7208),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8473),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8479), 반도체 보울(8486), 전화기(8517), 부분품(8529), 전자집적회로(8542), 부분품과 부속품(8708) 품목은 수출은 감소하였다.

이들 품목에서 감소한 원인들을 보면 대다수가 수입 수요보다는 경쟁력 요인이 하락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2년에서 2021년 사이 석유와 역청류(2710) 대호주의 수출증가분 4억 6,885만 달러 중 호주의 수입 수요 증가로 인한 변동(수입규모 요인)은 2천만 달러, 경쟁력변화로 인한 변동 5,097만 달러와 호주의 수입구조 변화로 인한 변동은 2억 5,841만 달러로 플러스(+)를 기록하여 대호주 수출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미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3304),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7210), 디스크 등의 비휘발성 기억장치(8523), 승용자동차(8703)의 경우, 대호주 시장에서는 수출증가분 모든 플러스(+)로 기록하여 경쟁력 변화 요인과 수입 수요 증가로 인한 대호주 수출증가 요인으로 나타났다.

[표 3] 한국의 호주 수출증감액 분해 결과

HS	A	(a)	(b)	(c)	전체
2710	468,853,843	5,097,097	1,063,322.1	20,744,518.3	26,904,937
2841	0	0	0	0.01391925	0.013919
2902	-7,858,119	-1,159,738	-137.84258	352,821.77	-807,054.4
3304	27,095,624	2,229,472	85.602526	2,515.05176	2,232,073
3901	-19,015,251	-164,241	-14.716069	63,365.6401	-100,889.7
3907	-13,512,170	-485,217	-53.664885	103,062.49	-382,208
7208	-20,825,015	-38,775.7	-5.9230574	330,941.882	292,160.3
7210	153,336,989	27,969.9	-35.674997	63,869.4006	91,803.63
8473	-2,262,879	-101,212	-6.1887526	18,548.5199	-82,669.38
8479	-585,224	7,915.238	-0.1886353	3,712.32803	11,627.38
8486	-22,636	83.92369	1.687E-06	0.0152392	83.93893
8507	127,176,738	-966,884	18,479.431	669,397.703	-279,006.9
8517	-229,114,994	-890,848	-849.71347	374,088.706	-517,609.2
8523	36,718,464	3,622,510	78.236779	4,678.98836	3,627,267
8529	-1,118,113	-76,627.9	-0.2883574	18,035.881	-58,592.26
8534	3,895,207	391,993.2	1.1298384	207.062452	392,201.4
8542	-481,771	1,043,760	164.85917	71,100.4797	1,115,025
8703	235,119,104	23,488,835	165,261.37	11,395,451.3	35,049,548
8708	-174,728,672	-3,341,657	-3,040.4824	772,960.592	-2,571,737
8901	0	0	0	279,583.335	279,583.3

A: 수출증감액, (a): 경쟁력, (b): 상품공급, (c): 수입규모, 전체: (a)+(b)+(c)

둘째, 중국 대호주 시장에서는 순항선 등(8901),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7210), 디스크 등의 비휘발성 기억장치(8523), 반도체 보울(8486) 품목의 수출은 감소하였다.

순항선 등(8901) 및 디스크 등의 비휘발성 기억장치(8523)는 경쟁력 요인과 수입규모 요인 분석 결과는 플러스(+)를 기록하고 상품공급 요인 분석 결과는 마이너스(-)를 기록하여 대호주 수출 감소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7210)는 경쟁력 요인과 상품공급 요인 분석 결과는 마이너스(-)를 기록하여 대호주 수출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반면, 전화기(8517), 석유와 역청류(2710), 승용자동차(8703), 축전지(8507), 부분품과 부속품(8708),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8479) 등 품목은 기준년도에 비해 수출은 증가하였다.

이들 품목에서 증가한 원인들을 보면 대다수가 수입규모 요인과 상품공급 요인보다는 경쟁력 변화가 더 커서 대호주 수출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표 4] 중국의 호주 수출증감액 분해 결과

HS	A	(a)	(b)	(c)	전체
2710	1,294,234,336	73,163,582.1	5,932.245	826.8032	73,170,341.2
2841	787,277	125,677.351	1.283695	8,773.404	134,452.039
2902	1,032,802	43,377.9465	0.014469	16.41153	43,394.3725
3304	9,923,444	-598,920.471	559.0289	195,058.4	-403,303.088
3901	7,359,425	33,691.8035	0.281066	272.4393	33,964.5238
3907	66,491,514	732,528.9	52.98196	36,354.97	768,936.853
7208	10,533,329	19,879.4436	0.025589	530.2737	20,409.7428
7210	-130,899,429	-4,143,585.46	-3,039.23	1,126,211	-3,020,414.18
8473	32,447,603	111,416,493	150,489.9	6,548,542	118,115,525
8479	151,995,149	29,313,887.1	8,601.122	259,546.7	29,582,035
8486	-619,248	117,596.652	0.227612	116.6127	117,713.492
8507	324,264,601	27,157,116.8	158,156.1	1,957,157	29,272,429.5
8517	1,510,208,727	275,153,528	12,286,792	1.07E+08	394,408,300
8523	-3,557,795	4,224,672.64	-1,248.57	774,369.1	4,997,793.15
8529	17,517,742	5,272,429.22	862.1421	147,555.9	5,420,847.21
8534	9,998,688	2,045,547.19	540.5371	250,634.1	2,296,721.85
8542	4,988,532	19,826,073.7	3,380.693	123,234.4	19,952,688.7
8703	1,170,377,848	110,157,662	33,417.85	15,039.97	110,206,120
8708	289,620,147	70,587,010.2	76,240.08	1,807,019	72,470,269.6
8901	-195,167,115	1,378,686.06	-30.3977	100,393.6	1,479,049.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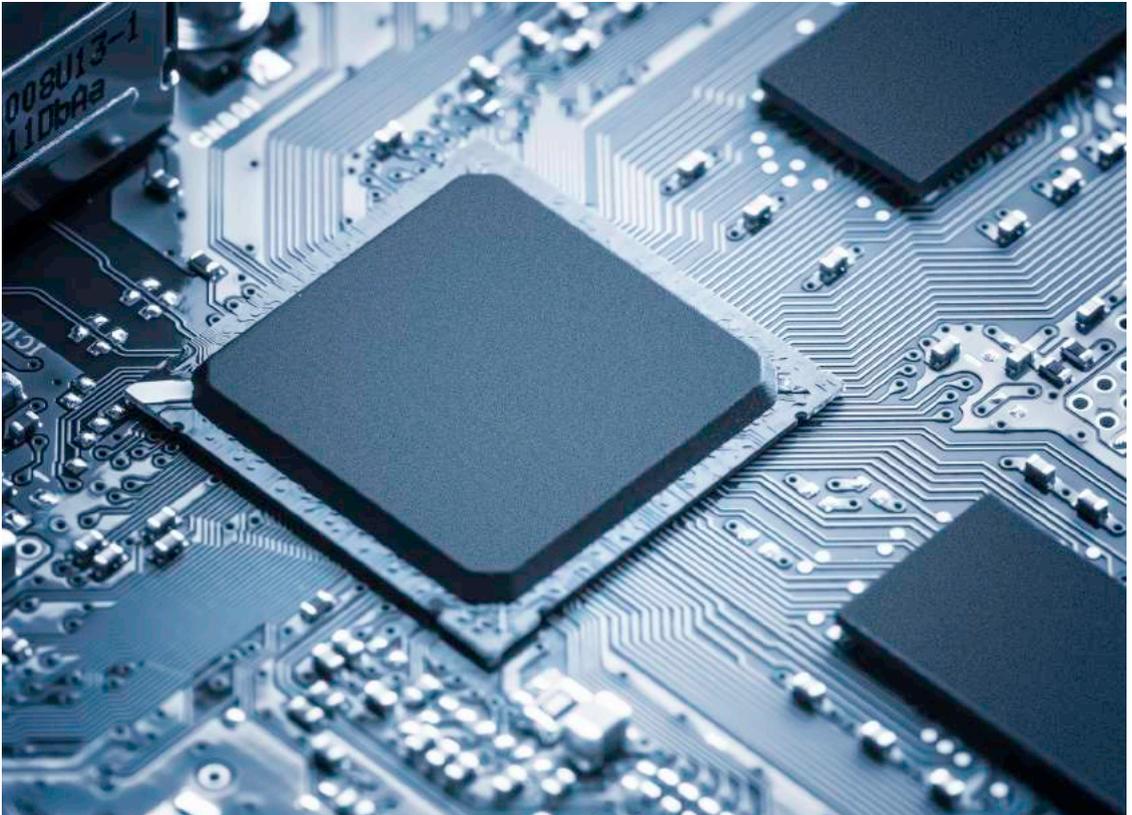
A: 수출증감액, (a): 경쟁력, (b): 상품공급, (c): 수입규모, 전체: (a)+(b)+(c)

셋째, 일본 대호주 시장에서는 대부분 품목의 수출이 감소세로 보인다.

특히, 석유와 역청류(2710), 승용자동차(8703), 부분품과 부속품(8708),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7210) 등 대폭적으로 감소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경쟁력 변화와 상품공급 요인 분석 결과는 마이너스(-)를 기록하여 대호주 수출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반면, 반도체 보울(8486), 미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3304)는 경쟁력 요인과 상품공급 요인 및 수입규모 요인으로 모든 플러스(+)로 기록하였으며, 전자집적회로(8542)는 경쟁력 요인과 상품공급 요인으로 인한 변동은 플러스(+)를 기록해 반면, 수입규모 요인 분석 결과는 플러스(+)를 기록하여 대호주 수출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표 5] 일본의 호주 수출증감액 분해 결과

HS	A	(a)	(b)	(c)	전체
2710	-554,322,276	-43,633,282.5	-219,419.1	6,445,370	-37,407,331.91
2841	-103,371	-3,694.7233	0.0042087	791.1615	-2,903.557568
2902	-12,272	500.621823	0	0	500.621823
3304	5,067,030	393,563.0757	26.489582	4,978.925	398,568.4907
3901	-1,535,387	1,299.501168	0.0031727	20.82725	1,320.331594
3907	-1,645,453	1,381.579776	0.0254215	1,285.267	2,666.872401
7208	-17,738,431	-39,526.772	-1.574126	18,235.7	-21,292.64181
7210	-75,005,699	558,170.8229	10.920502	9,344.304	567,526.0478
8473	-1,786,496	-26,843.1333	-1.095275	7,356.659	-19,487.56949
8479	-5,211,350	-804,599.887	-649.7792	347,301.8	-457,947.8614
8486	507,356	26,082.38302	0.3728008	990.588	27,073.34382
8507	10,268,576	-1,469,562.4	26.097697	102,615.5	-1,366,920.759
8517	-21,135,878	-104,610.907	-19.23142	16,324.13	-88,306.01009
8523	-28,725,787	11,883,525.75	1,184.2458	333,588.4	12,218,298.41
8529	-4,945,401	34,136.30256	9.0085756	25,697.05	59,842.36212
8534	-1,864,710	-4,921.20185	-0.004331	566.8366	-4,354.369622
8542	297,680	-31,205.1496	-0.765995	4,704.964	-26,500.95179
8703	-549,106,421	-206,522,656	-7,372,146	145,000,000	-68,932,144.05
8708	-280,482,310	-18,920,402.8	-40,118.3	3,603,187	-15,357,333.96
8901	0	0	0	0	0

A: 수출증감액, (a): 경쟁력, (b): 상품공급, (c): 수입규모, 전체: (a)+(b)+(c)



본고에서는 호주 시장에 대한 한국의 20대 수출상품에 대한 주요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의 UNcomtrade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경쟁력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었다.

한·중·일의 대호주 불변시장점유율 변화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데 반해 중국은 HS 8517(전화기), HS 2710(석유와 역청유), HS 8703(승용자동차) 품목에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CMS 분석 결과 한국은 HS 2710(역청류(원유 제외)) 품목에서 수입 수요 증가, 경쟁력 변화로 대호주 수출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HS 3304(미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 HS 7210(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HS 8523(디스크 등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HS 8703(승용자동차)의 경우, 대호주 시장에서는 수출증가분 모든 플러스(+)로 기록하여 경쟁력 변화 요인과 수입 수요 증가로 인한 대호주 수출증가 요인으로 나타났다.



# 아세안 주요국의 품목별 원산지기준 비교연구<sup>1</sup>



신범수  
배재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학과  
교수



## 1 들어가면서

최근 코로나19, 미중 패권경쟁 심화, 우크라이나 사태 등 여러 요인으로 국제통상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에 GVC 핵심 거점은 중국에서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주요국으로 재편되고 있다.

인구 6억4천700만 명의 아세안 10개국은 연평균 5%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아세안은 중산층 확대와 높은 젊은 인구 비율(35세 미만 인구가 전체의 약 63%)로 생산거점뿐 아니라 신흥 소비시장으로 주목 받고 있다.

1 본 기고문은 관세학회지 제23권 4호에 게재된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음.

특히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흑자 상대국으로, 2020년 456억 달러 무역흑자 가운데 340억 달러(약 40조원)가 이 지역에서 나왔다.

2017년 이래 아세안은 한국에 있어 제2의 교역 대상 지역으로, 전체 교역의 14.7%를 차지한다.

이러한 점에서 아세안 주요국 산업·품목별 교역 현황과 아세안 주요국이 공통적으로 교역량이 많은 품목을 선정하여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알아보고, 한·아세안간 산업별 수출경쟁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아세안 무역의 무역특화지수 (TSI : Trade Specialization Index)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원산지결정기준을 강화하여야 할 품목과 완화시켜야 할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한·아세안 FTA 원산지 규정뿐만 아니라 추후 이어질 FTA협상에서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2 아세안 주요 품목 분석 및 원산지결정기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의 아세안의 수출·수입액 상위 3개 품목은(HS 2단위) 85류(전기전자), 27류(광물성연료), 84류(기계류)이다.

위 3개 품목을 HS 6단위 수출 및 수입액 상위 10개 품목을 나열하면 다음<표 1-1>과 같다.

[표 1-1] 2016~2020년 아세안 85, 27, 84류 주요 10개 품목(HS 6단위)

HS 2단위	HS 6단위
제85류	8542.39, 8542.31, 8517.12, 8517.70, 8542.32, 8542.90, 8517.62, 8541.40, 8534.00, 8529.90
제27류	2710.19, 2709.00, 2710.12, 2711.11, 2701.19, 2711.21, 2701.12, 2716.00, 2702.10, 2713.20
제84류	8473.30, 8471.70, 8411.91, 8443.99, 8471.30, 8471.50, 8411.12, 8443.31, 8415.10, 8486.20



### 3 한·아세안 원산지결정기준 및 주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한·아세안은 원산지결정의 일반원칙을 세번변경 단위 또는 역내부가가치 특정비율 이상으로 하고 예외 품목은 품목별 원산지기준안에 규정하고 있으며, 한·아세안 FTA는 모든 물품에 대해 품목별 원산지기준안을 정하는 여타의 FTA와 다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특혜원산지 규정은 상품무역협정 부속서 3에 규정하고 있다.

품목별 원산지기준에는 외국산 재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국내에서 생산한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는 완전생산기준과 특정국가가 아닌 아세안 역내에서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면 원산지로 인정(농산물에만 해당)하는 역내완전생산기준, 선택기준, 부가가치기준, 특정공정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협정에서 지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생산의 일부공정이 FTA 체결국 영역 밖에서 수행된 물품에 대하여도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인 역외가공기준 등이다.

위에서 분석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의 아세안의 수출·수입액 상위 3개 품목 중 한·아세안 FTA 해당 품목인 85류(전기전자),

84류(기계류) “부속서 3 부록 3 품목별 원산지 기준(HS2017 기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85류는 8504.50, 8540.71 품목의 원산지 부여기준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해당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 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인 것이며, 8517.62, 8517.61, 8519.30, 8528.71, 8508.19, 8543.70 품목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기타 상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 가치 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으로 원산지를 부여한다.

또한 8508.60, 8517.12, 8518.30, 8518.50, 8522.90, 8525.60, 8528.72, 8532.22, 8536.10, 8539.21, 8539.31, 8539.90, 8540.20, 8540.40, 8540.60, 8540.72, 8540.89, 8540.91, 8541.90 품목의 원산지부여기준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해당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이다.

8517.70, 8523.52, 8529.90 품목은 같은 소호내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해당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 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을 원산지 부여기준으로 한다.

다음 84류(기계류)는 다음과 같다.

8415.10품목의 원산지부여기준은 역내가치 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일 것이며, 8479.81, 8479.89, 8482.10 품목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해당 소호에 해당

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 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으로 원산지를 부여한다.

또한 8486.10, 8486.20, 8486.30, 8486.40 품목의 원산지부여기준은 같은 소호내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해당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 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을 원산지 부여기준으로 한다.



[표 1-2] 2016~2020년 아세안 85, 27, 84류 주요 10개 품목(HS 6단위)

원산지부여기준	HS코드	
	85류	84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해당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 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인 것	8504.50, 8540.71	-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일 것	-	8415.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기타 상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8517.62, 8517.61, 8519.30, 8528.71 8508.19, 8543.70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해당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 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8508.60, 8517.12, 8518.30, 8518.50, 8522.90, 8525.60, 8528.72, 8532.22, 8536.10, 8539.21, 8539.31, 8539.90, 8540.20, 8540.40, 8540.60, 8540.72, 8540.89, 8540.91, 8541.90	8479.81, 8479.89, 8482.10,
같은 소호내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해당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8517.70, 8523.52, 8529.90	8486.10, 8486.20, 8486.30, 8486.40



#### 4 국제경쟁력효과 분석 및 결과

본 연구는 아세안 주요국 산업·품목별 교역 현황과 주요 품목별 한·아세안의 원산지결정 기준을 알아보고 한·아세안간 국제경쟁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아세안 무역의 무역특화지수(TSI: Trade Specialization Index)를 분석하였다.

아세안 회원국의 주요 산업인 전기전자(85류), 기계(84류), 광물성 연료(27류) 3개 품목을 선정하여 3개 품목별 아세안에서 교역량(수출, 수입)이 가장 많은 10개 품목(HS code(6단위)기준)에 대한 5년(2016년~2020년)간의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수출경쟁력을 분석하였다. 분석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세안-한국 주요 전기전자(85류) 10개 품목의 무역특화지수(TSI) 분석결과 경쟁력이 매우 강한 품목을 보면 8517.12, 8517.62 품목으로 경쟁력 매우 우월한 제품으로서 교역성과가 높게 나타났고, 매우 약한 군에 속하는 품목으로는 8542.39, 8542.90, 8534.00, 8529.90 품목으로 위 4개 품목은 한국시장에서 경쟁력 절대 열위 품목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8517.12(휴대폰), 8517.62(스마트워치)이 경쟁력이 있는 이유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 생산량의 절반이상을 담당하는 국가가 베트남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와

반대로 경쟁력 절대 열위 품목인 8542.39(전자 집적회로), 8542.90(전자집적회로 부분품), 8534.00(인쇄회로), 8529.90(LCD 모듈)는 삼성전자와 같은 전기전자 분야 기업들의 생산 공장이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에 진출해 있기 때문에 열위 품목인 것으로 분석 되었다.

둘째, 아세안-한국 주요 기계(84류) 10개 품목의 무역특화지수(TSI) 분석결과 경쟁력이 매우 강한 품목으로는 8471.70, 8443.99, 8471.50, 8486.20 품목이 경쟁력 매우 우월한 제품으로 나타났고, 한국시장에서 경쟁력 절대 열위 품목을 보인 품목으로는 8473.30 품목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세안 국가 중 하나인 싱가포르가 반도체 칩, PC 및 주변기기 등 고가의 첨단기계제품 생산에 집중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어 8471.70(CD-ROM 드라이브), 8443.99(프린터 잉크 카트리지), 8471.50(데스크톱), 8486.20(반도체 제조용 장비) 품목 경쟁력이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싱가포르가 첨단기계제품 수출 경쟁력 때문에 아세안-한국 주요 기계(84류) 10개 품목 교역에서 아세안이 우위에 있었다.

셋째, 아세안-한국 주요 광물성 연료(27류) 10개 품목의 무역특화지수(TSI) 분석 결과 경쟁력이 매우 강한 품목으로는 2711.11, 2701.19, 2701.12, 2702.10 품목으로 경쟁력 매우 우월한 제품으로서 교역성과가 높게 나타났다.

매우 약한 군에 속하는 품목으로는 2710.19, 2710.12, 2713.20 품목은 한국시장에서 경쟁력 절대 열위 품목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세안은 2711.11(천연가스(LNG)), 2701.19(기타 석탄), 2701.12(역청탄), 2702.10(갈탄)와 같은 핵심 광물은 풍부한 반면 석유 정제기술이 한국보다는 부족하여 2710.19(기타 석유 및 조제품), 2710.12(경유 및 조제품), 2713.20(석유 역청) 등의 품목에서 열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5 정책적 시사점

아세안 회원국의 주요 산업인 전기전자(85류), 기계(84류), 광물성 연료(27류) 3개 품목에 대한 한국과의 교역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기전자(85류) 산업은 아세안의 값싼 노동력을 기초하여 우회수출형의 값싼 생산기지로써의 입지를 다지고 있었으며, 기계(84류) 산업은 싱가포르가 지리적으로 아시아의 중심에 있어 원자재는 물론 관련 중간재를 쉽게 구입할 수 있을뿐더러 많은 국가와 광범위한 자유무역

협정(FTA)을 맺은 점도 유리한 여건에 있어 강점을 보였고, 광물성 연료(27류) 부문은 아세안 10개국이 고루 풍부한 핵심광물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한국은 아세안 내 경제협력국 다변화를 통해 핵심광물과 값싼 노동력의 생산기지를 늘리고, 첨단기계산업 공급망을 협력이 요구된다고 본다. 또한 아세안의 인프라 개발에 협력할 필요가 있다.





FLY AIR RAIL



# FTA ANALYSIS

## 한-베트남 FTA 활용하기

김수정 | 한국원산지정보원 활용연구팀 선임연구원

REPORT

# 한-베트남 FTA 활용하기



김수정  
한국원산지정보원 활용연구팀  
선임연구원



## 1 우리나라와 베트남 교역동향

베트남은 우리나라 5대 무역국 중 3위국가이며, 인력도 풍부하여 베트남 전체 인구 중 15세~64세 생산가능 인구는 전체 인구의 68%에 달한다. 현재는 글로벌 생산기지가 상당부분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등 저임금 노동비와 안정적인 공급망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베트남의 양자협정을 2015년 체결하였으며, 양국의 교역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10년 FTA 공동작업반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 이후 총 5차례 회의를 통해 지난 2021년에는 한-베트남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1) 우리나라와 베트남 교역현황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무역은 2014년부터 지속해 증가하여 2023년 6월에는 무역수지 12,216백만달러를 기록하였다. 특히, '20년에는 코로나19 유행 첫 시기에도 한-베트남 교역은 수출이 0.7%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21년과 '22년에도 수출과 수입 모두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표 1] 우리나라와 베트남 교역현황(2013년~2022년)

[단위: 백만달러, %]

연도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23.06	24,849	-22.1	12,633	-6.5	12,216
2022	60,964	7.5	26,725	11.5	34,239
2021	56,729	16.9	23,966	16.5	32,763
2020	48,511	0.7	20,579	-2.3	27,932
2019	48,178	-0.9	21,072	7.3	27,106
2018	48,622	1.8	19,643	21.4	28,979
2017	47,754	46.3	16,177	29.5	31,577
2016	32,630	17.5	12,495	27.4	20,135
2015	27,771	24.2	9,805	22.7	17,966
2014	22,352	6.0	7,990	11.4	14,361

자료: 한국무역협회

## 2) 우리나라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우리나라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은 2022년 기준 유기발광다이오드의 것, 메모리, 프로세서와 컨트롤러이며, 대부분의 품목이 전자·전기 제품으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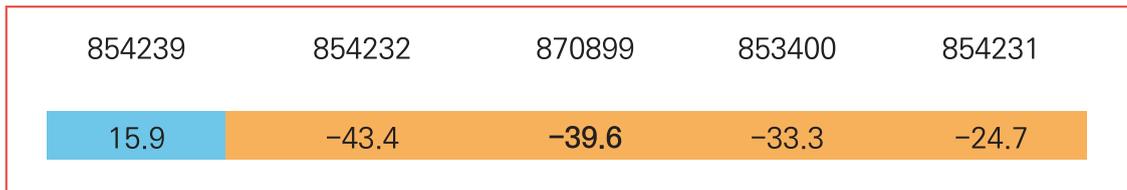
**[표 2] 우리나라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2022년~2023년 6월)**

[단위: 백만달러, %]

순번	MTI 1단위	HS 코드	품명	2022년		2023년 6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60,964	7.5	24,849	-22.1
1	전자전기제품	852412	유기발광다이오드 (오엘이디)의 것	11,774	0.0	4,554	-16.6
2	전자전기제품	854232	메모리	6,952	14.1	2,321	-43.4
3	전자전기제품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sup>1</sup>	5,973	21.2	1,978	-24.7
4	광산물	271019	기타	3,095	246.4	1,530	-12.7
5	전자전기제품	854239	기타	2,125	32.2	1,067	15.9
6	전자전기제품	852990	기타	1,305	-49.9	643	-7.1
7	전자전기제품	853400	인쇄회로	1,519	-9.4	545	-33.3
8	전자전기제품	851779	기타	1,216	0.0	493	-22.7
9	전자전기제품	847989	기타	559	8.7	330	-4.3
10	기계류	870899	기타	801	43.7	236	-39.6

자료: 한국무역협회

**[그림 1] 우리나라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2022년~2023년 6월)**



1 메모리·변환기·논리회로·증폭기·클록(clock)·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

### 3) 우리나라의 베트남 주요 수입품목

우리나라의 베트남 주요 수입품목은 수출품목과 유사하게 전자전기제품에 분포되어 있다. 제8473.30호는 전년대비 173.9%로 폭증하였으며, 제8444.30호 역시 전년대비 85.2%로 증가한바 있다.

[표 3] 우리나라의 베트남 주요 수입품목(2022년~2023년 6월)

[단위: 백만달러, %]

순번	MTI 1단위	HS 코드	품명	2022년		2023년 6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26,725	11.5	12,633	-6.5
1	전자전기제품	851779	기타	2,449	0.0	957	-16.5
2	전자전기제품	847330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671	3.4	794	173.9
3	전자전기제품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 <sup>2</sup>	1,101	1.3	692	-8.5
4	전자전기제품	851713	스마트폰	1,893	0.0	414	-67.9
5	전자전기제품	852990	기타	604	-30.0	343	18.2
6	전자전기제품	854430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그 밖의 와이어링 세트 <sup>3</sup>	430	71.5	342	85.2
7	전자전기제품	851762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688	-1.8	325	-13.2
8	전자전기제품	852492	유기발광다이오드(오엘이디)의 것	612	0.0	237	-17.6
9	전자전기제품	852872	기타(천연색으로 한정한다)	440	-1.7	198	-19.2
10	생활용품	640399	기타	300	51.4	191	43.2

자료: 한국무역협회

<sup>2</sup> 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sup>3</sup> 자동차용·항공기용·선박용으로 한정한다

[그림 2] 우리나라의 베트남 주요 수입품목(2022년~2023년 6월)

847330	854430	640399	852990	851713
173.9	85.2	43.2	18.2	-67.9

## 2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2분기 우리나라 FTA 평균 활용률은 74.1%이며, 한-베트남 FTA의 23년 2분기 FTA 활용률은 60.2%를 기록하고 있다.

[표 4] 한-베트남 FTA 활용률

[단위: %]

협정수출국가	칠레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2023.2/4)	68.9	71.9	64.2	86.1	91.5	81	89.7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영국
77.2	89.2	96.8	65.3	37	60.2	58.1	74.8

자료: 국가통계포털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농수산물은 대체로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고 섬유 및 의류는 한-아세안과 유사하나 기타 섬유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부여했다.



[표 5]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산업	주요 내용
농수산물	신선 농수산물은 대체로 완전생산기준(WO)을 유지하되, 가공농수산물 중 우리 수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선택기준(세번변경기준 혹은 부가가치기준 中 택일)의 비율 제고 (예: 가당연유, 유당 등)
섬유·의류	대부분 한-아세안 FTA 기준과 동일하게 합의하였으며, 기타 섬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축성 합의(예: 커튼, 모포 등)
기계, 전기·전자	우리의 핵심 관심품목을 중심으로 한-아세안 FTA상 기준보다 더신축적인 6단위 세번변경기준 혹은 부가가치기준으로 합의(예: 세탁기, 냉장고 등)
자동차	완성차는 한-아세안 FTA 기준과 같이 부가가치기준(RVC 45%)으로 하되, 자동차 부품의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다수 추가하여 업계 편의 제고 (예: 기어박스, 차축 등)



### 3 한-베트남 FTA 활용시 유의사항

특히 '22년 9월 개정된 한-베트남 FTA 원산지 결정기준에서는 제61류와 제62류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완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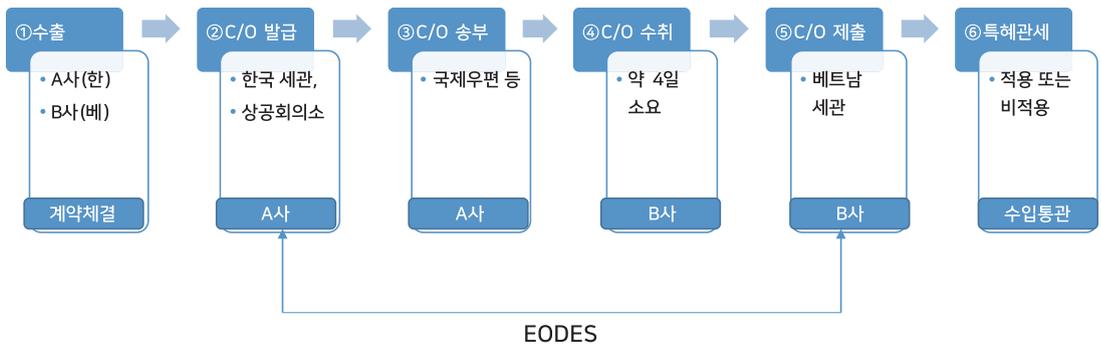
[표 6]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개정(제61류, 제62류)

개정전		개정후	
제61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한다.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61류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62류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01 ~ 62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한다.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6213 ~ 621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6215 ~ 621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한다.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한-베트남 FTA는 '22년 8월 1일자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의 HS 기준연도가 HS 2012에서 HS 2017로 변환되었다. 이에 따라, 한-베트남 FTA 인증수출자 인증 및 원산지발급신청은 HS 2017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한-베트남 FTA 원산지 증명서 원본 종이를 베트남 현지에서 수입할 시 꼭 필요했으나, 7월 15일부터는 한-베트남 FTA 활용시 종이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면제되었다. 한-베트남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 정보가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되고 있다.

[그림 3] 종이 원산지증명서(C/O)의 국가 간 이동·제출 절차



※ ③ ~ ⑤ 단계에서 배송 시간·비용 소요, 도난 분실·훼손 등 위험이 있고, 외국세관의 원본여부 확인 과정에서 통관지체 우려가 있으나, **원산지증명서 전자적 교환시 ③ ~ ⑤ 단계가 생략됨**

자료: 한-베 자유무역협정 활용시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관세청 보도자료(06.23)

이 시스템을 통해 우리나라의 베트남 수출자는 베트남 서류 송부비용, 수입 시 특혜세율 적용 절차 편의성이 증대되었다.

특히 이러한 이유로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이 변경되었으며, 변경된 사항은 원산지증명서에 발급기관의 전자서명과 공식 인장 날인, 원산지증명서에 QR코드를 추가하였다.



[그림 4] 한-베트남 FTA C/O

1. Goods consigned from (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CÔNG TY TNHH SẢN PHẨM THỰC PHẨM VIỆT NAM LOT 9 BANG LOT 9 BANG BAI BANG DI BAI BANG DIET BINH DUONG PROVINCE, VIETNAM VIET NAM		Reference No. ....			
2. Goods consigned to (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CÔNG TY TNHH SẢN PHẨM THỰC PHẨM VIỆT NAM LOT 9 BANG LOT 9 BANG BAI BANG DI BAI BANG DIET BINH DUONG PROVINCE, VIETNAM KOREA		VIET NAM-KOREA FREE TRADE AGREEMENT PREFERENTIAL TARIFF CERTIFICATE OF ORIGIN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FORM VK Issued in <u>VIET NAM</u> (Country) See Notes Overleaf			
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as far as known) Departure Date: 10/05/2023 Vessel's name/Aircraft etc.: ... Port of Discharge: INCHEON (KOREA (REPUBLIC))		4. For Official Use <input type="checkbox"/>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Given Under Viet Nam-Korea Free Trade Agreement <input type="checkbox"/>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Not Given (Please state reason/s)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of the Importing Country			
5. Item number	6.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7. Number and type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including quantity where appropriate and HS code of the good in the importing country)	8. Origin criterion (see Overleaf Notes)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and value (FOB only when RVC criterion is used)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1	NO MARK	... HS CODE: 52062400	CTC	... KILOGRAM ... KILOGRAM	DATE: ...
2	NO MARK	... 2 CARTON HS CODE: 52062400	CTC	... KILOGRAM ... KILOGRAM	DATE: ...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s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VIET NAM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Viet Nam - Korea Free Trade Agreement for the goods exported to KOREA (Importing Country) DONG NAI, 10/05/2023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12.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TRAN NGOC BINH HO CHI MINH, 10/05/2023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13. Remarks					

자료: 베트남 발행 CO 양식 변경 안내) FTA 포털 공지사항

이미 우리나라는 베트남과 교역을 활발히 하고 있지만, 베트남은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시장이다.

베트남 정부는 Make in Vietnam 캠페인을 통해 ICT 산업을 세계에 알리고 ICT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베트남 정보통신부의 국가 ICT 산업 진흥 슬로건이다.

베트남 정부는 이전의 FDI 기업으로부터 아웃소싱 및 생산기지로만 사용되는 베트남이 능동적으로 재탄생하기를 원하고 있다. 디지털 혁신 우선 분야로 헬스케어, 교육, 금융, 농업, 교통·물류, 에너지, 천연환경 및 환경, 산업제도 등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러한 베트남의 현재 기초를 잘 파악한 후 우리나라 기업 역시 한-베트남 FTA를 잘 활용하여 베트남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를 기대해 본다.







# FTA 품목분류

세상을 바꾸는 트렌드(Trend) “스마트 기기(Smart Device)”의  
품목분류 어떻게 해야 하나?

- 제71차 WCO HS위원회 최신사례 포함-

양영미 | 관세청 심사정책국 세원심사과 관세행정관

# 세상을 바꾸는 트렌드(Trend) “스마트 기기(Smart Device)”의 품목분류 어떻게 해야 하나?

- 제71차 WCO HS위원회 최신사례 포함-



양영미

관세청 심사정책국 세원심사과  
관세행정관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 수출입자, 특히 FTA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한번쯤 관세법 제86조에 근거하고 있는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해 보았을 것이다.

수출물품은 물론 국내 제조물품까지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유일하다.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가 WTO 무역원활화에 기반하고 있다보니 수출지원(환급 등)을 하는 일부 나라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사전심사 대상을 수입물품으로 한정하고 있다.

가끔 다른 나라 직원들이 물어본다. 한국은 왜 국내 제조물품까지 사전심사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대답은 간단하다. 한국은 부존자원이 없는 국가다. 모든 원부자재를 수입하며, 이것들은 제조·조립하여 해외로 수출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거래되고 있는 물품도 결국에는 수출에 공해지기 때문에 수출의 연속선상이라고...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면 대부분은 관세평가분류원에서 10단위(HSK) 또는 6단위(HS)의 코드를 확정하여 회신한다.

다만 유사물품 간에 상이 사례가 있거나 재심사 등 쟁점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85조 제2항 및 품목분류사전심사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라 품목분류관세품목분류위원회(위원장: 심사국장)에 상정하여 처리하게 된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관세법 제85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는 법적 심의기구로, 기재부나 농림부·식약처와 같은 관련부처는 물론, 공공 연구기관(ETRI, 기계연구원 등)의 전문분야 연구원, 대학교수(전기·전자·기계·화학·식품 등 다양), 관세사·변호사 등 다양한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한 회당 보통 8~10개의 안건을 심의하는데 짧으면 4시간 길면 5시간이 넘기도 한다.

대부분은 동일·유사물품에 대해 서로 다른 유권 해석이 존재하는 경우, 어느 한 호로 품목

분류를 변경하기 위해서 위원회에서 심의 하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품목분류 관련 정보가 공개되어 지다 보니, 국내 사례는 물론 다른 나라와 상이사례가 있는 경우에도 재심사를 통해 위원회에 상정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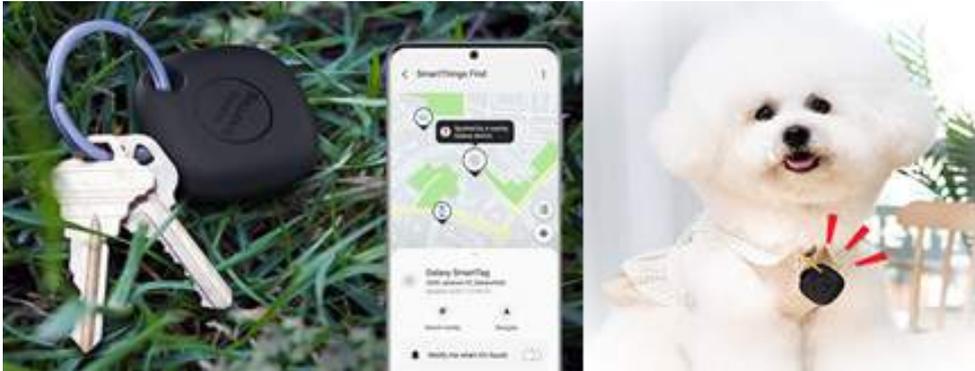
또 하나의 주요 이유는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물품의 등장이다.

이전에 어떤 기사를 보니 다국적 기업들이 IT 신상품을 개발하면 가장 먼저 한국에 시제품을 소개하고 그 반응을 모니터링 한다고 한다. IT 기기에 대한 보급 속도도 가장 빠르고 사용자 반응(사용후기?)도 가장 열정적이어서 그렇다고 한다.

그 영향 때문인지 우리나라는 IT 기기에 대한 품목분류 질의가 많은 편이고, 제84류·제85류 전담자인 나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다.

글을 쓰고 있는 이 시점에도 "스마트 태그(Tag)"라 불리는 물품을 품목분류 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해 열심히 고민하고 있다. 기능은 "위치찾기"인데 근거리 통신망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경합세번은 통신기기(제8517호)인지, 음향 신호용 기기(제8531호)인지, 그 밖의 고유한 전기기기(제8543호)인지 여부이다. 10월쯤 개최될 품목분류위원회에서 논의후 투표로 결정될 예정이다.

[그림 1] 스마트 태그(Smart Tags)



출처 : Samasung Newsroom

\* 분류사례 확인방법 : 관세법령정보포털 > 세계HS > 품목분류 국내사례 > 위원회 결정사항 > “시행일자” 또는 “결정세번”란에 숫자 “85” 입력

스마트란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일반사전에는 “똑똑하고 멋진, 맵시있는”, IT 전문사전에는 “지금까지 기대할 수 없었던 정도의 정보처리능력을 가지고 있는...”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똑똑하고 인텔리전트(Intelligent) 하다고 하였으니, 딱 봐도 최소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실행할 것이고, 지금까지 없었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였으니 HS 품목분류표(관세율표)에 계기되어 있을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다.

필자가 왜 이 스마트함이 부담스럽다고 했는지 감이 올 것이다.

관세율표 제16부(기계류·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는 제84류(기계)·제85류(전기기기) 두 개 류(Chapter)로 되어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제16부 물품들은 제2호(부분품 분류규정)와 제3호(복합기계, 다기능기계)·제4호(기능단위기기), 이 세가지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의 다름(쟁점)이다.

“기계”라고 했다가 “기기”라고 했다가 도대체 뭐가 맞는거야? 하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 잠깐 짚고 갈까 한다.

가끔 법원에서 대리인들이 호(heading)나 소호(sub-heading)의 용어가 “machine”이나 “apparatus” 등으로 다르게 표기되어 있는

부분을 근거 논리를 제시하는 경우를 본다. 물론 사전상으로 이들의 개념은 다를 수 있고, 일반 법령(조세 법률주의)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지만 HS 품목분류표(제84류·제85류)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생물분류체계의 “종 < 속 < 과 < 목 < 강 < 목 < 계”처럼, 류(2단위) > 호(4단위) > 소호(6단위)의 레벨은 서로 다른 류나 호의 물품간에 체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즉 어느 호의 물품은, 다른 소호보다 물품의 범위가 더 작을 수도 있고, 어느 경우에는 다른 류의 물품보다 더 클 수도 있다.

그래서 제16부 주 제5호에 이런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부의 주에서 “기계”란 제84류나 제85류에 열거된 각종 기계(machine)·기계류(machinery)

·설비(plant)·장비(equipment)·장치(apparatus)·기기(appliance)를 말한다.”

즉 서로 다 같다는 의미다. 만약 그 용어를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면, 해당 주(note)나 HS 해설서에 그 부분을 별도로 명시해 놓는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으로 “스마트(Smart) 기기”에 대한 품목분류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다.

HS 품목분류표(관세율표)상에 “스마트(Smart)”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물품은 딱 두 곳이 있다. ‘12년에 신설된 제8523.52호의 “스마트 카드(Smart cards)”와 ‘22년 신설된 제8517.13호의 “스마트폰(Smartphones)”이다.

“스마트(Smart)”란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스마트폰(Smartphones)”을 정의하고 있는 제85류 주5호를 보면 어느 정도 유추는 가능하다.

### [표 1] 스마트폰(Smartphones)의 HS 품목분류표상 정의

제85류 주 제5호 : 제8517호에서 스마트폰이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기능(예: 제3자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다수의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동시에 실행)을 수행하도록 만든 휴대기기용 운영체제를 갖춘 셀룰러 통신망용 전화기를 말한다(디지털 카메라나 내비게이션 시스템 등 다른 기능을 장착했는지에 상관없다).

‘스마트폰’은 혁신의 아이콘 스티브 잡스가 기존 휴대폰에 퀴티(QUERTY) 자판을 결합하여 태블릿 PC처럼 쓸 수 있는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등장한 용어이다.

“응답하라 2G폰” 모토로라나 애니콜, 걸리버 휴대폰을 사용해 본 사람이라면 스마트폰이 얼마나 획기적인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폰은 2G폰(폴더폰)과 달리, 대형 디스플레이 화면에 범용 운영체제(윈도우, 리눅스, 안드로이드, iOS 등)가 탑재되어 있고, 컴퓨터와 같이 두뇌 역할을 하는 CPU(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내장되어 사용자가 스스로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다.

‘컴퓨터’가 분류되는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 기계(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에 대한 제84류 주6호 규정이나 제8471호 해설서를 보면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고...”등등 스마트폰의 소호주 정의와 어느 정도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사실 처음 스마트폰이 세상에 등장했을 때 국제적으로도 무선전화기로 분류할지(제8517호) 자동자료처리기계(제8471호)로 분류할지 이견이 많았다.



결국 WCO HS 위원회에서 최종 무선 전화기로 결정되었고, 이후 WCO 차원에서 스마트폰에 대한 특개호 필요성을 인지하여 ‘22년 제8517.13호를 신설하고, 스마트폰에 대한 정의를 제85류 주에 추가하였다.

스마트폰은 지금도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8517호에 분류됨은 이견이 없다.

“스마트폰”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물품 “스마트 카드”로 넘어가겠다. “똑똑한 카드?” “이전에 없던 획기적인 카드?”

“스마트 카드”에 대한 품목분류상 정의는 제85류 주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 [표 2] 스마트 카드(smart card)의 HS 품목분류표상 정의

6. 제8523호에서 스마트카드(smart card)[이 류의 주 제6호 나목 참조]란 칩 모양의 하나나 그 이상의 전자집적회로(마이크로 프로세서·RAM·ROM)를 내장한 카드를 말한다. 스마트카드는 접속부·마그네틱스트라이프(magnetic stripe)·내장한 안테나를 갖춘 경우도 있으나, 다른 종류의 능동(能動)이나 수동(手動) 회로소자를 갖춘 것은 제외한다.”

덧붙여 제8523호 해설서에는 “이들 스마트카드(smart card)는 이 류의 주 제6호 나목을 충족하는 “프록시미터 카드(proximity card)나 태그(tag)”으로 알려진 물품을 포함한다. 프록시미터 카드/태그는 일반적으로 인쇄된 안테나에 붙여진 ROM을 갖춘 전자집적회로로 구성된다. 이 카드/태그는 독취기로부터 송신되는 반사되는 신호에 작용하는 안테나의 영역 간섭(field interference)(ROM에 내장된 코드의 결정에 따른 현상) 발생에 따라 작동한다. 이러한 형태의 카드/태그는 자료를 전송하지 않는다.”

조금 어려운 용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일단 지갑 안에 있는 신용카드를 꺼내 보자. 전면에 붙은 사각형의 금속칩(IC)이 스마트 카드라고 생각하면 된다. 카드만 될까? 그렇지 않다. 형태나 재질은 중요하지 않다. 기능! 기능이다.

제85류 주 제6호에서는 전자집적회로(IC)칩을 내장한 카드라고 소개하면서, 자성물질이 선(스트라이프)처럼 입혀져 있는 마그네틱 카드나 근거리 무선통신(안테나, 통신모듈 등)으로 작동하는 비접촉카드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능·수동 소자를 갖추어 특정기능을 하는 기기나 통신기기 등은 안된다(경합가능한 호)는 제외조항을 두고 있다.

보통 ‘스마트 카드’는 주기억장치(메모리)와 보조 기억장치, CPU로 구성되어 있는 보안 프로세서의 일종이다. 언뜻 드는 생각이... 이름도 스마트하고 하는 일도 제법 스마트한데 자기 테이프나 CD가 분류되는 저장매체(제8523호)로 분류되는게 맞아? 결이 달라 보이는데?”

사실 스마트카드는 1960년 미국 컴퓨터 제조사인 IBM에서 개발한 마그네틱 카드에서 출발한다. 당시 컴퓨터 저장매체로 널리 쓰이던 자기테이프의 원리를 카드에 응용한 것이다.

카드 뒷면에 입혀진 마그네틱 선에서 자기장의 변화가 일어나 전기장을 만들면서 전류가 흐르고 이것을 단말기가 읽어내어 정보를 얻게 된다. 전형적인 제8523호의 물품이다.

마그네틱 카드는 긁기만 하면 데이터를 쉽게 읽어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신용카드는 물론 공중전화카드, 철도·지하철 승차권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었다.

하지만 저장공간의 한계나 보안(복제)문제, 마그네틱 손상 등의 단점을 드러내면서 반도체 집적회로(IC)를 내장된 스마트카드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컴퓨터와 같이 마이크로프로세서가 탑재(IC)되어 암호화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마트”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물론 현재도 개인 정보를 암호화하거나 장기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기프트 카드나 선불카드, 일회용 주차카드 등은 여전히 마그네틱을 사용하고 있다.

이쯤되면 왜 스마트 카드가 제8523호에 등지를 틀고 있는지, 왜 스마트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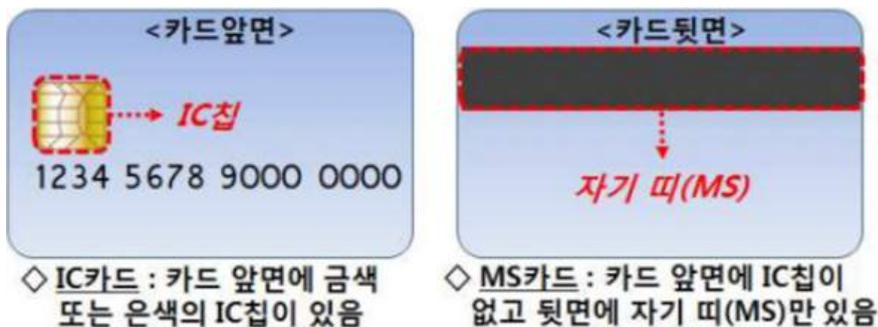
감이 올 것이다.

이러한 “접촉식 카드” 외에도 통신모듈과 안테나를 내장시켜 주변의 무선 주파수 신호를 감지, 단말기와 데이터를 주고 받는 형태의 “비접촉 식의 카드”도 같은 호에 분류되는데, 제85류 주 규정에서는 “프록시미티(proximity, 근접)” 용어를 쓰고 있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전파식별)” 등과 같은 개념이다.

물론 지금은 이러한 카드나 태그를 가지고 다니는 것조차도 귀찮아 아예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워치 등에 IC 칩을 삽입시켜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고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워치를 제8523호의 저장매체라고 생각할 사람은 없겠지만, 제85류 주 규정에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림 2] 스마트 카드와 마그네틱 카드 비교



출처 : 이데일리 기사 “ATM기에서 마그네틱 카드 사용금지”, '15.6.1.

[그림 3] IC칩(스마트 카드)이 내장된 스마트워치



출처 : 엔비토엘리먼트

“다른 종류의 능동(能動)이나 수동(手動) 회로 소자를 갖춘 것은 제외한다. 이러한 형태의 카드/태그는 자료를 전송하지 않는다.”는 제외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까지 HS품목분류표에서 “스마트(Smart)”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두가지 물품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서 고민이 생긴다. 그럼 나머지 스마트한 기기는 도대체 어떻게 품목분류를 하라는 것인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제16부 주 제3호(복합 기계, 다기능기계)이나 통칙 제3호 복합물품 규정으로 해결해야 한다.

제16부 주 제3호에는 “주된 기능”이란 용어를 쓰고 있고, 통칙 제3호에는 “본질적 특성”이란 용어를 쓰고 있다.

뭐가 다른가? 결론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통칙 제3호는 표 전체에 적용되기 때문에 본질적이란 표현을 쓰고 있고, 제16부(제84류·제85류)는 기능에 따른 분류이기 때문에 주기능이란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이다. 즉 주된 기능을 찾으면 된다.

그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스마트(Smart) 기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컴퓨터와 인터넷 기능 등이 TV와 결합된 스마트 TV? 또는 스마트 냉장고? 그렇다고 TV나 냉장고가 아니라고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기에 주기능을 판단하는데 큰 이견은 없을 듯 하다. 여기까지...

무선통신과 센서 등을 이용해 아파트 공동 출입문을 개폐하고 차량의 주차위치도 확인할 수 있는 원패스 스마트 키라면??

키(key)=열쇠? HS 품목분류표에서 열쇠를 규정하고 있는 곳은 제8301호이다. 물론 비금속제가 기본이지만 전기식의 도어락도 분류는 가능하다.

다만 이 물품은 단말기가 해당 물품에 내장된 BLE 칩의 위치를 감지하여 차단기를 여는 방식이기 때문에 락(Lock), 언락(UnLock) 원리로 작동하는 열쇠로 보기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

일단 우리나라는 '19년도에 제8543호(품목분류 3과-9382, 스마트 원패스 키)의 "그 밖의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로 분류했다. 물론 본건물품에 RFID 칩 외에 별다른 능수동 소자가 없다면 앞에서 살펴 본 스마트카드(제8523호)가 우선 검토될 것이다.

그렇다면 컴퓨터와 인터넷 기능 등이 결합된 스마트 칠판은?

우리나라는 '18년도에 86인치 TFT LCD(모니터)에 터치센서, 안드로이드 O/S 등이 탑재되어 글쓰기도 가능하고 화면을 통해 인터넷 접속 등이 가능한 전자칠판에 대해 제8528호(품목분류4과-1830, Android interactive flat panel display)의 모니터로 분류하였다.

특대형 컴퓨터 아니야? 하고 반론을 제기할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제8471호로 분류한 일부 다른나라도 있다.

결론은 우리는 제8471호의 컴퓨터가 아닌 제8528호의 모니터에 주기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고, 향후 WCO HS위원회에서 다른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때 다시 고민할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기기의 대표주자인 몸에 착용하는 웨어러블(Wearable) '스마트 워치'에 대해 얘기해 보겠다.

이전에도 손목시계에 PDA가 결합되어 있거나 전자계산기가 결합된 형태도 있었지만, 시장에서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

2010년 초반부터 사용자가 스스로 응용 프로그램(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는 범용 운영체제(OS)가 탑재되어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워치는 IT 시장을 빠르게 점유해 왔고, 2019년 이후 스위스 명품 시계를 모두 합한 판매량을 이미 뛰어넘었다.

시계(제9102호)의 대체품 역할을 함과 동시에, 스마트폰의 작은 집(side)과 같이 통신기능(제8517호)도 하고 있으니, 품목분류상 논쟁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지금도 실생활에 필요한

크고 작은 기능들이 하나 둘씩 추가되고 있다.

스마트워치는 많은 사람이 기억하고 있겠지만, 이미 '15.3월 제55차 WCO HS 위원회에서 제8517.62호의 "기타의 통신기기"로 결정된 바 있다.

제55차 WCO HS위원회 당시, 스위스는 스마트워치는 시계에 기반하고 있으며, 만약 주기능이 통신인지 시계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통칙 제3호(다)에 따라 최종호인 제9102호에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캐나다, 중국, EU 등 다수의 국가들이 제8517호를 지지하면서 최종 판단은 제8517호의 통신기기로 결정되었다.

당시 논의된 스마트워치는 스마트폰과 연동되어 전화의 송·수신이나 문자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고, 음성 녹음이나 재생, 사진 촬영, 만보계

등의 다른 기능도 갖고 있는 아래 3종 물품이었다.

그럼, 여기서 다시 과거의 사례를 꺼내는 이유는 뭘까?

상기(remind) 차원에서? 아니다

모든 스마트 워치가 제8517호의 통신기기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란 점을 얘기하고 싶어서다.

사실 그간 우리나라는 WCO 결정에 따라 스마트폰과 연동되어 발신번호나 부재중 전화, 문자(SMS)등을 송수신할 수 있는 워치는 대부분 제8517호에 분류해 왔다.

다만 스마트폰과 연동되지 않는 "헬스케어 기능"을 강조한 밴드 타입(일명 값비싼 만보기라 칭하는)의 스마트 기기는 제9031호(기타의 측정기기) 등에 분류하고 있었다.

[그림 4] 제55차 WCO HS위원회에서 논의된 스마트워치 3종



그럼 제71차(23.3월) WCO HSC에서 논의된 물품은 도대체 어떤 스마트워치였기에 “시계”로 분류된 것일까? 제품명은 “Polar M430”이다.

제조사는 심박계(Polar Electro, 심박계 최초 개발)나 스포츠 시계 등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POLAR”라는 회사였고, 시장에서는 “스마트 러닝(running) 워치” 또는 “GPS 러닝(running) 워치”로 불리운다.

심박수, 신체리듬을 측정할 수 있는 일부기능이나 외형 등을 보면 제55차에 결정된 소니의 스마트 밴드와 크게 달라보이지 않지만, 해당 제품 설명서나 판매정보를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Polar M430은 심박수 측정과 고급 트레이닝 기능 탑재한 더 많은 러너(runner)를 위한 최고 수준의 GPS 시계입니다. 100개가 넘는 스포츠 프로필을 통해 개인의 목표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운동계획을 선택할 수 있으며, 수면시간과 운동량 등 심층적 분석을 위한 하루활동 데이터를 수집하고 계획한 훈련 세션도 볼 수 있습니다. Polar 애플리케이션과 온라인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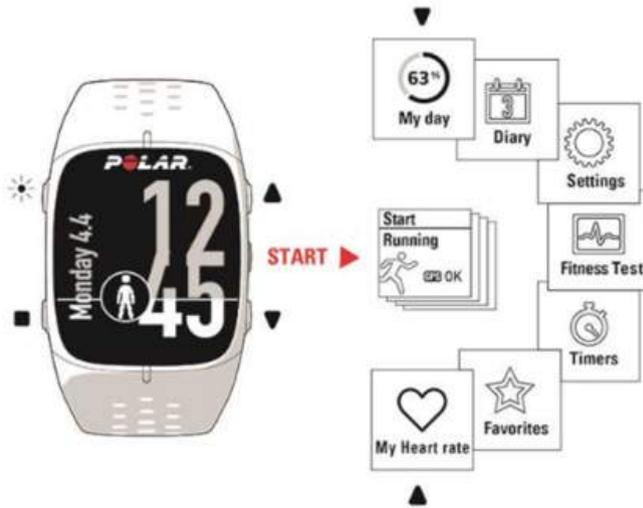
제71차 논의에서도 역시 제9102호(시계)를 주장한 스위스는, 제55차에 제8517호에 분류된 스마트 워치는 특정 스마트폰과 연결되어야만 정상적인 기능 작동이 가능한 반면, 해당 물품은 스마트 기기와 연결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그림 5] POLAR KOREA, 사용설명서 발췌



[그림 6] POLAR 제품 사용설명서 발취

메뉴로 들어가 UP(위로) 또는 DOWN(아래로)을 눌러 메뉴를 탐색하세요. START(시작) 버튼을 눌러서 선택사항을 확인하고 BACK(뒤로) 버튼을 눌러 돌아갑니다.



심박수나 운동거리 등을 측정하도록 설계된 물품이므로 소니나 애플사의 스마트워치와는 다르게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미국이나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스마트폰과의 연동성이 제8517호와 제9102호를 구분 짓는 기준선이 될 수 없다는 반론을 제기하였다. 일부 국가에선 일관성 차원에서 제8517호에 함께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였지만, 어찌되었든 최종 투표결과는 제9102호 “손목 시계”로 결정되었다. 개인적으로 일부 기능이나 구성요소 등이 명쾌하게 달라 보이지는 않지만, 제품의 설계의도나 사용목적은 분명 제55차 결정된 스마트워치와는 다르다.

회의시 반론은 많았지만, 유보는 없었기에 이번 제72차(23.9월) HS 위원회에서 제71차 HS 위원회 결정을 분류의견서로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고 최종 확정되면 내년 1월쯤 관세청 고시인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2>로 수용될 예정이다.

“손목 위에 개인비서, 손목 위에 주치의” 등 여러 감투를 받고 있는 스마트워치

앞으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화될지 모르겠지만, 진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드론과 같이 스마트워치도 특계 호(소호)를 갖게 될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닐까..



FUTURE RAIL



# 해외통관애로

중국 관세행정 변화 및 최근 정책 추이

강경훈 | 주중한국대사관 관세관

REPORT

# 중국 관세행정 변화 및 최근 정책 추이



강경훈  
주중한국대사관  
관세관

## 1 중국 해관총서의 무역원활화 추진동향

장기간 코로나19로 인한 봉쇄를 마치고 리오프닝 이후 중국의 대외무역 실적은 크게 나아지고 있지 않다.

주요 경제지표도 기대치 이하로 발표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대외무역원활화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는 모습이다.

중국은 22년 1월 RCEP 발효 이후 금년 6월 2일 필리핀 발효<sup>1</sup>로 RCEP 15개 회원국 모두에 대해 발효·시행하고 있다.

금년 2월 중국 해관총서가 발표한 RCEP 1년간 실적에 따르면 RCEP회원국과의 대외무역은 3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입총액은 12조

9,500위안으로 전년 대비 7.5% 증가하였고 그중 8개 회원국에 대한 수출입증가율은 두 자릿수를 보였다.

RCEP의 특혜 중 하나인 '원산지 누적기준'을 수출입기업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원산지증명서 총 673만 부를 발행하였으며 수출가치 2,353억 위안, 관세인하 효과 15억 8천만 위안, 세금감면 15.5억 위안에 달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금년 6월 12일 해관총서는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를 위한 16개 조치를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1 시행 첫해 관세인하 상품 수 95.1%, 무관세 상품 수 66.9%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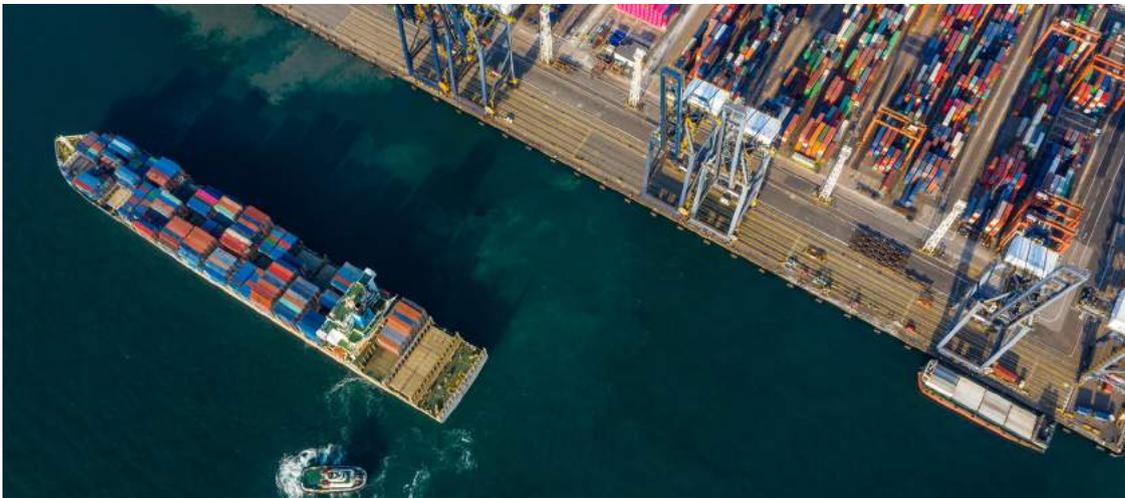
내용상 16개 조치는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수출입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해관관리 감독모델의 시범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해관관리 감독모델 종류	내 용
가. 선측직접인출(船边直提)	사전신고 기반으로 항구에 도착 후 세관검사 없이 화물을 수입
나. 도항직접인출(抵港直装)	사전신고 기반으로 화물을 부두로 직접운송, 선적 후 수출
다. 연동연결 및 하역(联动装卸)	세관의 관할이 다른 두 개의 항구가 연계해서 하나의 항구에서 수입통관 이후 다른 항구로 국내운송

두 번째는 단일창구(Single Window) 건설의 심화 추진, 스마트항구 건설 프로젝트 수행을 통하여 RCEP를 더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무역자유화와 편리성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수출환급처리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하고 자진신고의 면책 범위를 확대, AEO 상호 인증 및 AEO 기업의 혜택을 확대하고 수출입의 편리성을 확대하여 편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주요 품목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관의 통계 서비스를 강화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 2 중국 통관행정의 변화

중국은 통관 방식 및 절차를 전산화를 통해 이미 일원화하여 중앙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전에 지방해관에서 서류심사를 담당했던 부서가 없어지고 해관총서 아래 위험통제센터<sup>2</sup> 및 세수징수 관리센터<sup>3</sup>에서 전국해관에서 신고된 화물을 총괄, 과세징수를 관리하는 통관 일체화(一體化)를 시행<sup>4</sup>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할지 세관신고 제한이 없어져 수출입 기업은 원하는 어느 세관에서든 수출입신고가 가능하다.

기업 측면에서는 수출입통관절차가 간소화되고 효율화되어 통관시간이 단축되고 해관 측면에서는 전국에서 통일된 규범과 표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른바 관시(關係) 등 편법으로 해관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전 관할지 해관의 담당자가 재량으로 해결

하던 문제는 규범화, 제도화되었고 세관 인맥으로 해결은 추후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출입기업은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동일 제품인 경우 통관 시 가격신고, 품목분류를 일관성 있게 진행해야 하고 자의적이고 일시적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해관은 사후심사를 통해 수출입기업의 신용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한 번의 실수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중국과의 수출입통관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됨을 명심해야 한다.



2 소재지(상해, 광저우 황포, 칭다오): 위험관리 총괄, 수입금지 물품, 라벨링 및 저작권 위반 등 안전관리 업무 수행

3 소재지(베이징 및 톈진, 상해, 광저우): 과세가격, 품목분류, 원산지 등 과세징수 관련 업무 수행

4 16년 6월 상해에서 통관일체화 시범사업을 거쳐 18년 전국으로 확대

### 3 중국 해관총서의 관세정책의 중점방향

해관총서는 금년 초에 2023년 관세정책의 중점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첫 번째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감독을 더욱 엄격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은 해관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수입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수입상품의 신고절차도 상품목록, 세금증명서 등을 포함하여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로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의 시장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통관 단계에서 엄격히 심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상품검사 및 검역부서 간 정보공유를 활성화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항구'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 4 중국과 교역 시 유의사항

중국은 장기간 코로나19 방역과 봉쇄, 미중 무역 분쟁으로 외국계 기업의 탈중국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해관은 이전에 못했던 세수 확보를 위한 심사강화와 탈중국 외국계 기업 유치를 위한 편의 제공 등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또한, 국가안보와 이익을 위한 수출통제, 수출허가 품목의 지정을 늘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여 우리 수출입기업이 중국과의 교역 시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우선 수출입 시 세관 관리감독조건 및 검역조건<sup>5</sup>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 내 주요 원자재 및 이종용도물자에 대한 수출금지 및 수출허가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중국에서 수입하는 원자재에 대한 장기적인 조달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세수부족과 코로나19로 정체되었던 과세가격 평가와 로열티 등에 대한 사후심사가 강화되는 추세로 해관의 사후심사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통관 시 품목분류에 대해 해관이 인정하지 않거나 랜덤검사 대상일 경우 여전히 빈번하게 통관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의 사전심사 등 사전에 품목분류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5 세관 관리감독조건(코드 1~9, A~Z까지 제출양식 규정) 및 검역 종류(M, P, Q, R등)

예) HS코드 1701120090(향료 및 착색제가 없는 무가당 사탕무원당)은 세관 감독조건 7AB, 검사 및 검역 종류 M/P/R/Q, S

7: 자동수입허가증 필요 / A: 수입상품 통관신고서 / B: 수출상품 통관신고서

M: 수입검사 / P: 동식물검역 / R: 식품위생검사 / Q, S: 수출 시 동식물 검역 및 식품위생검사



STANDARD



# FTA 100% 활용하기

## 한국과 이스라엘 FTA 협정

- 양국의 경제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

Tamar Maron Kosher | 참사관 & 이스라엘 경제무역대표부 대표

REPORT

# 한국과 이스라엘 FTA 협정

- 양국의 경제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



Tamar Maron Kosher  
참사관 & 이스라엘 경제무역대표부 대표



## 1 서두

2019년 8월, 한국과 이스라엘은 수년간의 양국간 협력을 통해 자유무역협정 협상 타결을 발표하였고, 2021년 5월 서울에서 한국 정부 주최로 양국 고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기념식을 통해 협정문에 공식 서명하였으며, 마침내 2022년 12월 양국에서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었다.





[표 1] 한-이스라엘 FTA 추진경과

구분	주요 내용
2009.05	제4차 한-이스라엘 경제공동위에서 FTA 타당성 검토연구 진행 합의
2015.09	한-이스라엘 FTA 경제적 효과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회의」를 개최
2015.11	한-이스라엘 FTA 추진 계획(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수렴
2016.01	한-이스라엘 FTA 추진 관련 대국민 공청회 실시
2016.05.10	한-이스라엘 FTA 추진 관련 국회 보고
2016.05.24	통상차관간 한-이스라엘 FTA 협상개시 선언
2016.06	1차 협상 개최 이래, '18.3월까지 6차례 협상 개최
2019.07	양국 정상회담에서 한-이스라엘 FTA의 조속한 타결 합의
2019.08	한-이스라엘 FTA 타결 선언



## 2 본문

### 1) 한-이스라엘 FTA의 주요 목표

협정이 발효된 지 비교적 짧은 시간이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양국간 교역과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이 분명해지고 있다.

이스라엘 수출기업의 혜택과 수입기업과 소비자의 비용절감 효과는 연간 약 5억 세켈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번 협정은 이스라엘과 한국의 수출입기업 모두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의 원천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협정의 주요 목표는 양국간 우호관계를 증진하고 무역장벽을 완화하는 동시에 교역을 확대하는 것으로, 상호간의 시장수출을 우선적으로 촉진하고, 명확하고 상호 호혜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자국내 무역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양국의 경제발전을 촉진하며,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 역시 협정에서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이스라엘의 대한민국 수출품은 대폭적인 관세인하 효과가 발생하였으며, 잔디 깎이, 와인, 향수, 화장품, 플라스틱, 금속, 과일 주스, 의료기기 등의 제품이 혜택을 받았다.

특히, 최근 이스라엘로부터 꾸준히 국내로 수입되고 있는 이 제품들은 관세면제 혜택을 받고 있으며, 기존에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던 제품들은 관세인하 또는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되어 한국의 수입업체 및 유통망에 유리한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대이스라엘 수출은 자동차, 산업용 냉장고, 전자부품, 완구, 플라스틱, 화학제품 등 관세인하 혜택을 누리며 한국 수출기업의 높은 브랜드 충성도와 고품질 제품 선호도로 유명한 이스라엘 시장 진출에 매력적으로 평가받는다.

## 2) 한-이스라엘 FTA로 인한 관세 철폐 품목

다음은 FTA 협약에 포함된 혜택의 몇 가지 예입니다. 한국의 대이스라엘 수출 및 주요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이번 합의로 자동차 관세는 7%에서 0%로 낮아졌음

- 산업용 냉장고와 냉동고는 현재 12%에서 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음
- 산업용 기계를 포함한 산업용 기계는 3년 내 12%에서 0%로 선형적으로 감소했음
- 육조와 세면대도 3년 안에 12%에서 0%로 선형적으로 감소했음
- 한국의 대표 조미료인 간장은 4%에서 0%의 관세를 받고 있음

이스라엘의 한국 수출이며, 잔디 깎는 기계, 와인, 화장품, 의료용 장비 또한 관세 철폐가 이루어졌다.

- 대부분의 잔디 깎는 기계의 관세는 협정 발효와 함께 6.5%에서 0%로 낮아짐
- 와인은 현재 15%에서 0%의 관세를 받고 있으며, 이 역시 기업에게 있어 주목할 만한 사업 기회임
- 화장품, 아이섀도, 스킨케어 제품 관세는 6.5%에서 5년 내 0%로 선형적으로 감소했음
- 의료 모니터링 장비(의료기기)는 3년 내 8%에서 0%로 선형적으로 감소했음
- 의료용 카메라(의료기기)는 현재 8%에서 0%의 관세가 부과됨

### 3 맺음말

결론적으로,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은 양국간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는데 있어 중요한 진전으로 판단된다.

이는 이스라엘과 한국기업 모두에게 무역을

증진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새로운 사업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다. 양국의 협약은 시간이 지날수록 긍정적인 효과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양국의 경제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STARRAD



#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활용

추석선물세트의 원산지결정기준

전희영 | 코스모스 관세사무소 관세사

PREPARED



## 추석선물세트의 원산지결정기준



전희영  
코스모스 관세사무소  
관세사



## 1 시작하며

이번 추석에는 어떤 선물을 할까? 명절이 돌아 올 때마다 누구나 이런 고민을 할 것이다.

현금, 한우세트, 굴비세트, 꽃감세트. 어떤 선물이 좋을지 관스레 백화점과 마트를 둘러보면

눈돌아가는 선물세트들이 무척 많다.

아무리 현금 선물이 최고라고 해도 명절에 선물세트 하나쯤 받지 못하면 허전하게 느껴질 것 같아 선물세트를 구매하곤 한다.

필자는 식품 통관 전문으로 식품업종 고객사가 많다. 그분들도 이번 추석을 맞아 선물세트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그 중 치즈를 수입하는 고객사에서 치즈 트레이 세트 수입관련 문의를 주셨다. 해당 고객사는 유럽에서 치즈를 주기적으로 수입하는데 이번

추석을 맞아 치즈 트레이, 치즈 나이프 등 커트 러리로 구성된 "치즈 트레이 세트"를 수입한다고 했다.

문제는 구성제품의 원산지가 각각 달라 FTA를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했다.

## 2 FTA에서 세트물품의 정의

선물세트의 사전적 정의는 '선물용으로 상품을 모아 만든 세트'다. 상자에 한우 등심, 살치살, 채끝살, 부채살을 정갈하게 넣고 고급스럽게 포장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한우선물세트가 된다.

그러나 FTA에서의 선물세트는 다르다. FTA에서 세트(이하, "소매용 세트 물품")로 인정받으려면 HS 협약(FTA는 HS 협약에 따라 HS 코드를 분류한다)에 따라 아래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 번째, 서로 다른 HS 코드에 분류되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동일한 6개의 풍류 포크는 HS 코드가 모두 같기 때문에 세트가 될 수 없다.

위에서 언급한 한우선물세트 또한 HS 코드가 모두 동일하여 FTA에서는 세트물품이 아니다.

두 번째,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는 어떤 특정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가장 어려운데 뒤의 예시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세 번째, 재포장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하도록 소매포장 되어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추가 제조를 하거나, 재포장을 하거나, 다른 물품과 혼합한 이후 재판매하는 제품을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FTA에서 소매용 세트 물품은 개별 물품들이 함께 사용될 예정이면서, 최종 사용자에게 판매될 물품으로 구성된 세트를 말한다.

예를 들어, 즉석요리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의 식료품이 함께 포장되어 있는 밀키트는 "소매용 세트 물품"이라고 할 수 있다.

HS 협약에 나오는 세트의 예시를 더 살펴보자.

## (1) 식품 세트

1) 빵 사이에 소고기를 넣은 햄버거(치즈가 들어있는 경우를 포함)(제1602호)와 프렌치프라이(제2004호)를 같이 포장한 세트 : 제1602호에 분류

2) 스파게티 요리를 준비할 때 같이 사용하기로 예정된 조리하지 않은 스파게티 꾸러미(제1902호)·잘게 갈은 치즈(제0406호)·토마토 소스의 작은 강통(제2103호)으로서 상자에 넣은 것 : 제1902호에 분류





문화적, 사회 통념적으로 햄버거 세트에는 프렌치프라이가 빠질 수 없다. 햄버거세트라는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함께 먹는 햄버거와 프렌치프라이는 소매용 세트 물품이다.

스파게티 밀키트도 마찬가지로 스파게티 요리라는 요구를 충족하는 소매용 세트 물품이다. 그러나 함께 조합해서 구성된 물품 중 다음과 같은 경우 세트물품이 되지 않는다.

- 1) 새우통조림(제1605호)·치즈통조림(제0406호)·얇게 썬 베이컨통조림(제1602호)·각테일소시지 통조림(제1601호)

- 2) 증류주 1병(제2208호)과 포도주 1병(제2204호)

- 3) 유리병에 담긴 용해성 커피(제2101호)·도자제 컵(제6912호)과 도자제 받침접시(saucer, 제6912호)

이런 조합은 "소매용 세트 물품"의 두 번째 기준인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거나 어떤 특성의 활동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다.

1)의 통조림 구성은 일반적으로 각자의 용도에 따라 각각 먹도록 되어 있다. 2)의 증류주와 포도주도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함께 먹도록 되어 있지는 않다.

여기서 폭탄주는 논외다. 만약 증류주와 포도주를 섞어서 폭탄주를 마시기 위해 고안된 세트라면 “소매용 세트 물품”이 될 수 있겠다.

3) 커피와 도자제 컵, 컵받침은 커피마시기라는 요구를 충족한다고 볼 수도 있다.

다만, 커피는 다 마시면 소모되지만 도자제 컵과 컵받침은 견고하게 디자인되어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커피를 다 마신 후에도 다른 용도로 활용 가능하다.

따라서 반드시 커피마시기라는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구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경우 각 물품들은 각각의 적절한 호에 별도 분류하여야 한다.

## (2) 이발기 세트

전기식 이발기(제8510호)·빗(제9615호)·가위(제8213호)·브러시(제9603호)·직물제 타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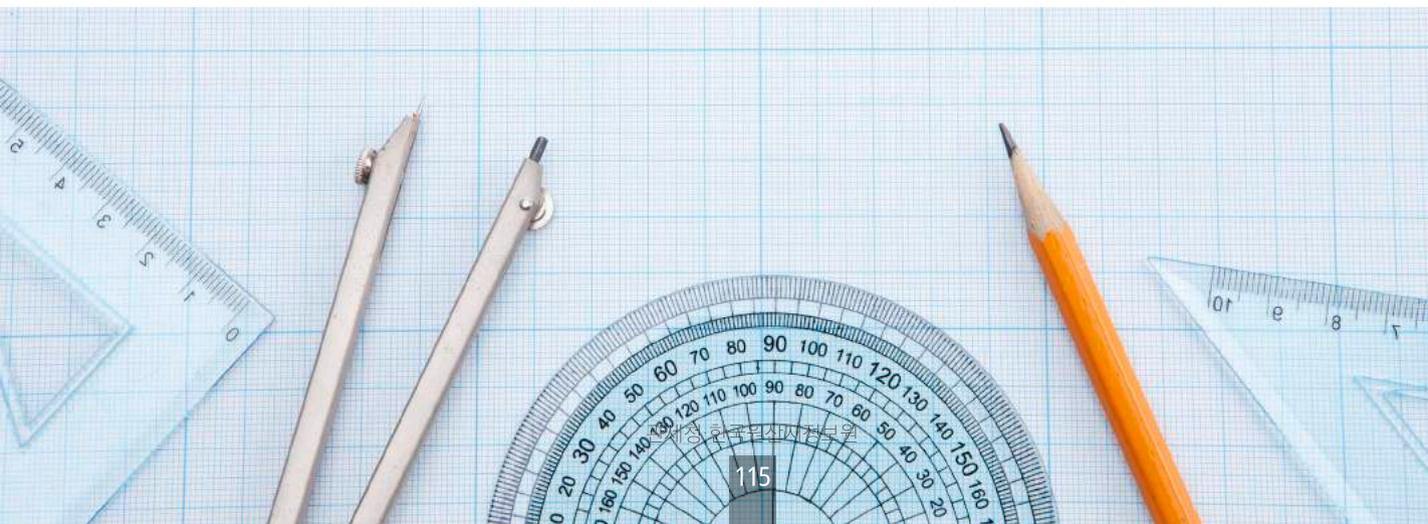
(제6302호)로 구성되어 있고, 가죽제 케이스(제4202호)에 넣은 이발용 세트 : 제8510호에 분류

## (3) 제도용 키트

자(제9017호)·계산반(제9017호)·제도용 컴퍼스(제9017호)·연필(제9609호)·연필깎기(제8214호)로 되어 있고 플라스틱시트로 만든 케이스(제4202호)에 넣은 제도용 키트 : 제9017호에 분류

위에서 규정한 “소매용 세트 물품”의 경우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 재료나 구성 요소에 따라 HS 코드를 분류해야 한다.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요소는 세트의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 부피, 수량, 중량이나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해당 물품을 사용할 때 구성재료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



### 3 세트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소매용 세트 물품의 개념을 확인했으니 이제 원산지결정기준을 알아보자. FTA에서는 소매용 세트 물품의 특례규정을 정하고 있다.

세트 구성품 중 비원산지물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세트 구성품 전체를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는 규정이다.

해당 규정은 협정별로 조금씩 다르게 정하고 있어 협정별로 살펴봐야 한다.

[표 1] 세트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구분	EFTA, EU, 튀르키예, 캐나다, 영국, 이스라엘	미국		페루, 중국, 콜롬비아, 중미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RCEP,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일반품목	섬유류		
세트물품 인정여부	인정	인정	인정	인정	X
비원산지물품 허용한도	EXW 가격의 15% 이하	FOB 가격의 15% 이하	FOB 가격의 10% 이하	FOB 가격의 15% 이하	허용X



대부분의 아메리카, 유럽 대륙 국가는 세트물품을 인정하고 있다. 반대로 대부분의 아시아, 오세아니아 대륙에서는 세트물품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세트물품을 인정하는 경우의 예시를 보자.

[표 2] 세트물품의 예시

미국에서 만든 햄버거 세트 구성	가격	비원산지 물품의 비율	원산지
미국산 햄버거 (제1602호)	햄버거 세트의 FOB 가격 4,000원	500원/4,000원 =12.5%	비원산지물품의 가격이 세트의FOB가격의 15% 이하이므로 햄버거 세트 전체는 “미국산”
독일산 프렌치프라이 (제2004호) (비원산지물품)	수입가격 500원		

## 4 치즈 트레이 세트의 원산지

이제 다시 치즈 트레이 세트로 돌아와보자. 먼저 “소매용 세트 물품”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해당 세트는 견고한 나무로 만들어져

있고, 트레이 한쪽 끝에는 치즈ナイ프 등의 커트러리를 보관할 수 있도록 커트러리 모양으로 몰딩된 서랍이 있다.



[표 3] 치즈 트레이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예시

치즈 트레이 세트 구성	서로 다른 HS 코드	어떤 요구를 충족 또는 어떤 특정한 활동을 수행	소매포장
나무 치즈 트레이	제4419호	숙성치즈 등을 먹을 때 커트러리로 치즈를 잘라 트레이 위에 올려 치즈를 먹음> “치즈를 잘라 먹는” 요구 충족	충족
치즈 커트러리	제8211호		



“소매용 세트 물품”을 충족한다. 그러나 트레이와 커트러리 역할이나 의도에 따라 트레이와 커트러리를 각각 사용할 수도 있도록 고안했다면 소매용 세트 물품이 될 수 없다.

다음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보자.

[표 4]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치즈 트레이 세트 구성	가격	비원산지 물품의 비율	원산지
영국산 나무 치즈 트레이(제4419호)	치즈 트레이 세트 EXW 가격 20,000원	2,000원/20,000원 =10%	비원산지물품의 가격이 세트의 EXW가격의 15% 이하이므로 치즈 트레이 세트 전체는 “영국산”
중국산 치즈 커트러리(제8211호) (비원산지물품)	수입가격 2,000원		

## 5 마치며

원산지결정기준에는 세트물품 규정과 같은 여러 가지 특례규정이 있어 알아두면 유용하다. 단, 세트물품 규정은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해서 스스로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

특히 두 번째 기준인 “어떤 요구를 충족하거나 어떤 특정한 활동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기준은 필자도 가끔 아리송할 때가 있다. 이런 경우 반드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통해 유권해석을 받으실 것을 권고 드린다.



FETIARAAD



# 활용하기 쉬운 FTA-PASS

## 원산지관리가 편리한 FTA-PASS

- 신규 원산지확인서 발급 -

구본현 | 한국원산지정보원 전산관리팀 과장/원산지관리사

김소연 | 한국원산지정보원 전산관리팀 주임/원산지관리사

REPORT

# 원산지관리가 편리한 FTA-PASS

- 신규 원산지확인서 발급 -



구본현  
한국원산지정보원  
전산관리팀  
과장/원산지관리사



김소연  
한국원산지정보원  
전산관리팀  
주임/원산지관리사

# FTA PASS

FTA-PASS는 2010년 관세청 주관으로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개발한 원산지관리시스템으로, 수출/제조기업의 체계적인 원산지관리업무 지원을 위해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사용자는 FTA-PASS로 원산지판정, 원산지증명서류 발급과 유통, 원산지 입증자료 보관, 사후 검증대비 등이 가능하다.

FTA-PASS는 사용자가 원산지정보만 입력하면 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급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매년 발급해야 하는 원산지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원산지정보 등록 이후 원산지 판정을 활용하여 원산지확인서와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 1. 원산지(포괄)확인서란?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또는 최종물품)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자가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서류이다.

원산지(포괄)확인서 제도는 국내에서 공급되는 수출물품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확인 절차를 마련하여 수출자의 원산지 입증부담을 경감하고 원산지증명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원산지입증에 필요한 증빙서류인 소요 부품명세서, 원재료 원가 명세서, 제조공정설명서 등은 기업비밀을 포함하고 있어 공급자가 외부노출을 기피할 수 있다.

그렇지만 수출자가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입증서류를 갖추지 못할 경우 원산지증명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며, 수출 이후에 수입국 세관당국으로부터 원산지 인정을 받지 못하여 특혜 관세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원산지확인서는 기업의 민감정보인 원재료의 가격, 소요량 등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공급자 비밀유지를 지킬 수 있고, 수출자는 원산지 입증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있다.

또한 동일 기업에게 지속적으로 납품하는 경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통해 물품공급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산지확인서를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 품목은 위와 같이 따로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대체할 수 있는 원산지증빙서류가 있다.

기준에 이미 원산지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이나 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 등은 해당 서류 자체만으로도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급자는 수출물품 또는 수출용 원재료가 관세청장이 지정한 품목인지 확인하여 간편하게 원산지증빙서류를 준비할 수 있다.

## 2. 원산지정보 등록

금번 호에서는 FTA-PASS 활용유형 중 기본형, 재고관리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에 대해 다루겠다. 기본형(재고관리기능 미사용)을 활용하는 회원사는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기에 앞서 기준정보와 거래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그림 1] FTA-PASS 메뉴 화면



기준정보는 정보의 입력자료 수정 빈도가 낮은 원산지 기초 정보 관리 메뉴다. 기준정보는 6가지 소메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거래처, 물품정보, 자재명세서, HS코드]는 기본 메뉴들이기에 원산지정보를 빠짐없이 입력한다.

다만, 물품을 구매해서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상품의 경우 [자재명세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물품정보] 항목 중 상품여부에 체크해야 한다. 나머지 [생산공정, 거래처물품정보]는 사용자 필요에 따라 이용하면 되는 서비스 메뉴다.

거래정보는 정보의 입력자료 수정 빈도가 높은 원산지 기초 정보 관리 메뉴다. 거래정보는 3가지 소메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구매단가, 판매단가]는 부가가치기준으로 원산지판정 수행 시 사용한다.

반면 [근거서류] 메뉴는 사용자 필요에 따라 이용하면 되는 서비스 메뉴다. 다만, 기준정보 중 [물품정보]의 상품여부 항목에 체크한 물품은 [구매단가, 근거서류] 등록이 필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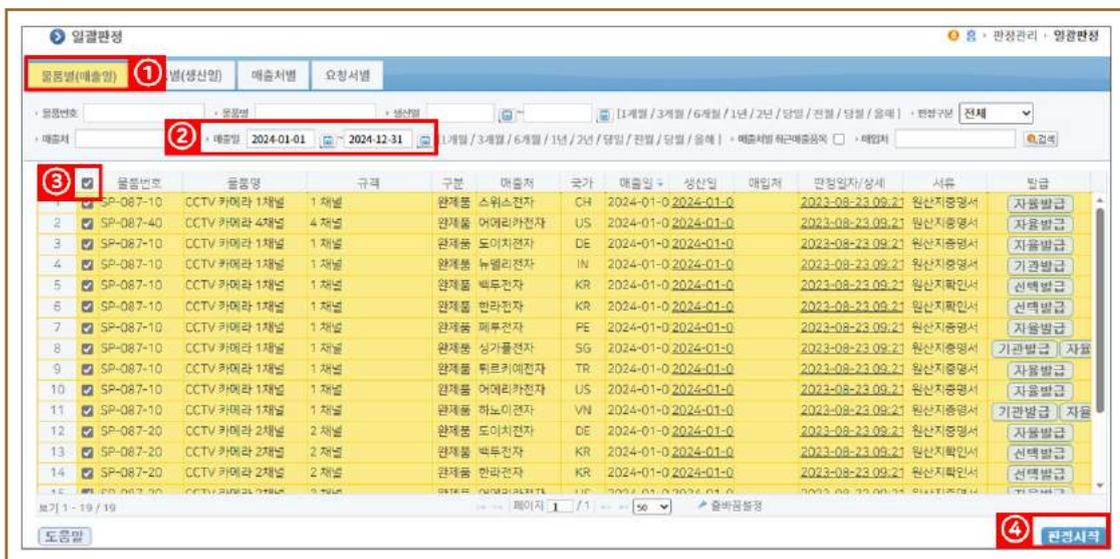
### 3. 원산지판정

원산지판정 중 물품별(매출일) 판정은 등록된 기준정보와 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물품의 매출정보를 기반으로 일괄 판정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사용한다. 원산지 판정을 위해 ①물품별(매출일) 판정법으로 이동한다. 그 후 ②매출일 기간을 설정하여 판정할 정보를 호출한다. 판정대상 물품이 조회되면 ③물품을 선택한 다음 ④판정시작 버튼을 클릭해 원산지판정을 수행한다.

### 4.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

원산지 판정이 완료된 후 [서류발급의 원산지확인서]로 이동하면 왼쪽 하단에 작성버튼이 있다. ①작성버튼 클릭 후 ②공급 하는자 정보를 확인한다. ③공급 받는자는 원산지확인서를 요청한 기업(한라전자)을 선택한다. 공급물품 명세 항목의 ④물품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원산지판정이 완료된 물품을 호출한다.

[그림 2] 일괄판정 메뉴 중 물품별(매출일) 판정 화면



2024년도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위해 ⑤ 포괄기간 시작일을 2024-01-01로 선택(입력)한다. 그런 다음 ⑥ 저장하여 서명권자 정보를 확인한다. 최종적으로 ⑦ 발급하여 원산지확인서 작성을 마친다.

[그림 3]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 화면

원산지확인서
홈 · 서류관리 · 원산지확인서

원산지확인서
재검정신청확인신청
양수지정보

**공급 하는자**

상호	custom30 테스트기업 30	🔍 검색 ②	사업자번호	211-02-16919
대표자성명	송내표		E-mail	fta-pass@origin.or.kr
전화번호	1544-0645		팩스번호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205번길 8, 상남세관 (여담동)			인증수출자 인증번호

**공급 받는자**

상호	SP-085-00-K 한계전자	🔍 검색 ③	사업자번호	019-00-00000
대표자성명	고한라		E-mail	hanrago@halla.com
전화번호	+82-2-5355-6264		팩스번호	+82-2-6264-5355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5			원산지요청서번호

**공급물품 명세**

<input type="checkbox"/>	고객사 물품번호	자사 물품번호*	물품명*	규격	수량	단위	세번*	원산지기	중속여부	적용협정	원산지	포괄기간시작	포괄기간종료	원산지	DV 20%	최소공정	기상발생	공정수입
1	HL-SR-10	SP-087-10	CCTV 카메라 1채널 1 채널				EA (v)	852580 B 16%	Y	APTA	KR	2024-01-01	2024-12-31	⑤				
2	HL-SR-10	SP-087-10	CCTV 카메라 1채널 1 채널				EA (v)	852581 CTH	Y	RCEP	KR	2024-01-01	2024-12-31		Y (v)			
65	HL-SR-40	SP-087-40	CCTV 카메라 4채널 4 채널				EA (v)	852680 CTH	Y	한-미주	KR	2024-01-01	2024-12-31		N			
66	HL-SR-40	SP-087-40	CCTV 카메라 4채널 4 채널				EA (v)	852580 CTH	Y	한-호주	KR	2024-01-01	2024-12-31		N			

보기 1 - 66 / 66

선택삭제 물품조회 ④

※ 참고사항  
 1. 수량 및 단위는 포괄기간을 입력하지 않는 **단수 원산지확인서** 작성시에만 입력합니다.  
 2. 원산지포괄기간이 입력된 공급물품은 수량 및 단위가 표기되지 않습니다.

**서명권자**

발급번호	CON-custom30-001	발급/작성일자	2024-01-01
고객사 발급번호(선택사항)	※ 우리회사의 관리번호 기재(자동생성) (발급번호 체계 설정방법, 시스템관리 > 환경설정 > 서류 탭)	서명사용여부	<input checked="" type="radio"/> 예 <input type="radio"/> 아니오
작성자 / 직위	원상익 <span style="text-align: right;">🔍 검색 원산지관리사</span>	서명	
상호	테스트기업 30 <span style="text-align: right;">🔍 검색</span>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205번길 8, 상남세관 (여담동)		

목록으로 미리보기 ⑦ 발급

원산지확인서 출력버튼을 클릭하면 출력서식을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난다.

[그림 4] 원산지포괄확인서 한글서식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7.5.>

### 원산지(포괄)확인서(Declaration of Origin)

(보통국 제1쪽)

1. 발급번호(Reference No.) : CON-custom30-001		
2. 공급하는 자 (Supplier)	상호(Company Name) 테스트기업 30	사업자등록번호(Business Registration No.) 211-82-16919
	대표자성명(Name of Representative) 홍대표	전화번호(Tel) 1544-0845 팩스번호(Fax)
	주소(Address)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미로206번길 8, 5층 남세관 (아미동)	인공수출자 인증번호(Customs Authorization No.)
	전자우편주소(E-mail) fta-pass@origin.or.kr	
3. 공급받는 자 (Supplied to)	상호(Company Name) 한라전자	사업자등록번호(Business Registration No.) 019-00-00000
	대표자성명(Name of Representative) 고한라	전화번호(Tel) +82-2-5355-8264 팩스번호(Fax) +82-2-8264-5355
	주소(Address)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5	
	전자우편주소(E-mail) hanrago@halla.com	

공급목록 명세서(Good Statements)

4. 연번 (S/N)	6. 자유무역협정명칭 (Name of FTA)	6. 품목번호 (HS No.)	7. 품명·규격 [Description·Specification of Good(s)]		8. 수량 및 단위 (Quantity & Unit)	9. 원산지 판정기준 (Origin Criterion)	10. 원산지 판정기준 충족 여부 (Fulfillment of Origin Criterion)		11. 원 산지 (Country of origin)	12. 원산지 포괄 기간 (년월일) -년월일 [Start Date (YYYY/MM/DD -YYYY/MM/DD)]	13. 원산지 간이 확인 문서 여부 (Simple Declaration of Origin)
			고려품번 (Part No)	품명 / 규격			충족 (Y)	미충족 (N)			
1	AFTA	862680	HL-SR-10	CCTV 카메라 1채널 /1 채널		B 16%	[ √ ]	[ ]	KR	2024/01/01-2024/12/31	[ ]
	RCEP	862681				CTH	[ √ ]	[ ]	KR	2024/01/01-2024/12/31	[ ]
	한-EFTA	862680				CTH	[ √ ]	[ ]	KR	2024/01/01-2024/12/31	[ ]
	한-EU	862680				MC 60%	[ √ ]	[ ]	KR	2024/01/01-2024/12/31	[ ]
	한-뉴질랜드	862680				CTH	[ √ ]	[ ]	KR	2024/01/01-2024/12/31	[ ]
	한-미국	862680				CTSH	[ √ ]	[ ]	KR	2024/01/01-2024/12/31	[ ]
	한-베트남	862680				CTH	[ √ ]	[ ]	KR	2024/01/01-2024/12/31	[ ]
	한-싱가포르	862680				CTH	[ √ ]	[ ]	KR	2024/01/01-2024/12/31	[ ]
	한-아세안	862680				CTH	[ √ ]	[ ]	KR	2024/01/01-2024/12/31	[ ]
	한-일본	862680				MC 60%	[ √ ]	[ ]	KR	2024/01/01-2024/12/31	[ ]
	한-이스라엘	862680				CTH	[ √ ]	[ ]	KR	2024/01/01-2024/12/31	[ ]
	한-인도	862680				CTH60 3%	[ √ ]	[ ]	KR	2024/01/01-2024/12/31	[ ]
	한-인도네시아	862680				CTH	[ √ ]	[ ]	KR	2024/01/01-2024/12/31	[ ]
	한-필리핀	862680				CTH	[ √ ]	[ ]	KR	2024/01/01-2024/12/31	[ ]

- 다음 페이지에 계속 -

210mm×297mm[역삼지] 80g/㎡(재활용종이)

확인을 클릭하면 원산지확인서 한글서식이 출력되고, 취소를 클릭하면 영문서식이 출력된다.

[그림 5] 원산지포괄확인서 영문서식

■ Enforcement Rule of the Customs Act for Free Trade Agreements (FTA) [Form No. 5 in the Appendix]. <The revision date : 2022. 7. 5>

### Declaration of Origin

(p. 1 of 8oc8)

1. Reference No. : CON-custom30-001

2. Supplier	Company Name Co., Ltd 30	Business Registration No. 211-82-18919
	Name of Representative HONG DAEPYO	Tel 1544-0845 Fax
	Address 3, Yateo-ro 20Beon-011,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Customs Authorization No.
	E-mail fta-pass@origin.or.kr	

3. Supplied to	Company Name Halla Electron	Business Registration No. 019-00-00000
	Name of Representative Go Halla	Tel +82-2-6355-6284 Fax +82-2-6284-5355
	Address 115, Gangnam-daero, Gangnam-gu, Seoul, Korea	
	E-mail hanrago@halla.com	

Good Statements

4. S/N	5. Name of FTA	6. HS No.	7. Description • Specification of Good(s)		8. Quantity & Unit	9. Origin Criterion	10. Fulfillment of Origin Criterion		11. Country of Origin	12. Blanket period (YYYYMMDD-YYMMDD)	13. Simplified declaration of Origin
			Part No	Description / Specification			Yes	No			
1	AFTA	862680	HL-SR-10	CCTV Camera 1 Channel / 1 Channel		B 16%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KR	2024/01/01-2024/12/31	<input type="checkbox"/>
	RCEP	862681				CTH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KR	2024/01/01-2024/12/31	<input type="checkbox"/>
	KOREA-EFTA	862680				CTH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KR	2024/01/01-2024/12/31	<input type="checkbox"/>
	KOREA-EU	862680				MC 60%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KR	2024/01/01-2024/12/31	<input type="checkbox"/>
	KOREA-NORCEANLAND	862680				CTH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KR	2024/01/01-2024/12/31	<input type="checkbox"/>
	KOREA-US	862680				CTSH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KR	2024/01/01-2024/12/31	<input type="checkbox"/>
	KOREA-VIETNAM	862680				CTH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KR	2024/01/01-2024/12/31	<input type="checkbox"/>
	KOREA-SINGAPORE	862680				CTH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KR	2024/01/01-2024/12/31	<input type="checkbox"/>
	KOREA-ASEAN	862680				CTH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KR	2024/01/01-2024/12/31	<input type="checkbox"/>
	KOREA-UNITED KINGDOM	862680				MC 60%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KR	2024/01/01-2024/12/31	<input type="checkbox"/>
	KOREA-ISRAEL	862680				CTH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KR	2024/01/01-2024/12/31	<input type="checkbox"/>
	KOREA-INDIA	862680				CTSHED 38%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KR	2024/01/01-2024/12/31	<input type="checkbox"/>
	KOREA-INDONESIA	862680				CTH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KR	2024/01/01-2024/12/31	<input type="checkbox"/>
	KOREA-CHINA	862680				CTH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KR	2024/01/01-2024/12/31	<input type="checkbox"/>

- To be continued to the next page -

210mm×297mm[White paper 80g/m<sup>2</sup>(Recycled products)]

## 5. 마무리하며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는 매달 FTA 및 시스템 기능 이해를 위한 내용을 소식지로 제작하여 회원사에 메일링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FTA-PASS 회원으로 가입하면 등록된 메일을 통해 소식지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덧붙여 FTA-PASS 활용기업을 위해 품목분류(HS)자문, 현장방문, 원격지원, 전화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에서 FTA-PASS를 사용하다가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언제든지 하단의 FTA-PAS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FTA-PASS란?

FTA-PASS는 중견·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원산지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 주관으로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하는 원산지관리 시스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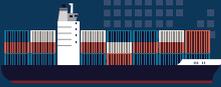


## FTA-PASS 주요기능

FTA-PASS는 아래와 같이 회원가입 후 사전 교육을 받아 FTA-PASS에 대한 이론 학습 및 실습을 마친 후 활용 하는 게 이상적이다.



# 체계적인 FTA 원산지관리, FTA-PASS를 무료로 활용하세요!



▶ 시스템 바로가기 : <https://www.ftapass.or.kr>

## 1. FTA-PASS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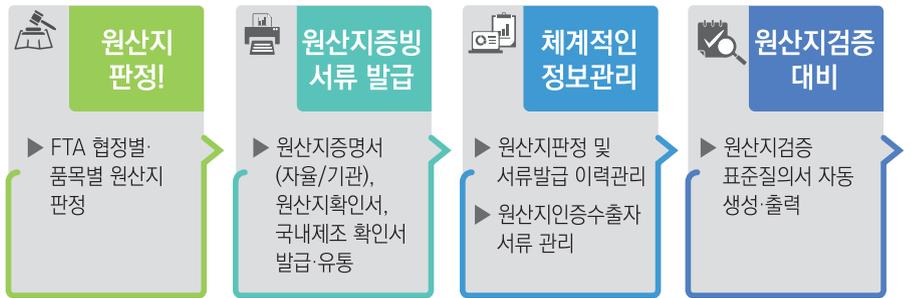
### ■ 시스템 개요

중견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원산지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 주관으로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

### ■ 활용상 이점

정확한 원산지판정과 원산지증빙서류 발급 관리로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 대비 등 효율적인 원산지관리 실현

## 2. FTA-PASS 주요기능



## 3. FTA-PASS 활용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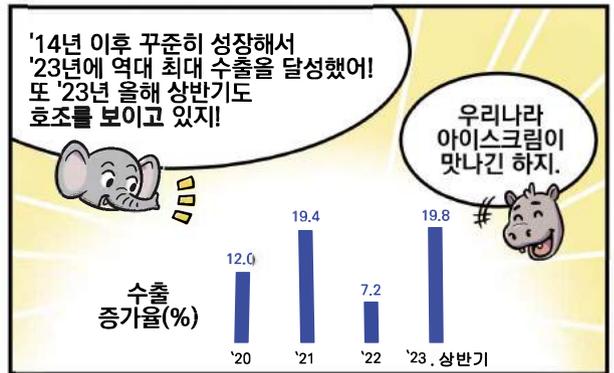
기본형	대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고관리기법(월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선입선출법)을 이용하여 재료를 산출</li> <li>- 정보관리 : 원산지정보, 구매원장, 매출원장, 수출부, FTA별 정보관리 (엑셀13종)</li> <li>- 출력서식 : FTA원산지증명서(기관/자율),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원산지소명서, 자재명세서, 생산공정도, 작성대장, 서명카드</li> </ul>
	중견·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자가 정의한 재료를 사용하여 원산지관리</li> <li>- 정보관리 : 원산지정보, 구매단가, 판매단가 (엑셀 9종)</li> <li>- 출력서식 : FTA원산지증명서(기관/자율),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원산지소명서, 자재명세서, 생산공정도, 작성대장, 서명카드</li> </ul>
간편형	영세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소한의 정보와 노력으로 원산지관리</li> <li>- 정보관리 : 거래처, 자재명세서 (엑셀 2종)</li> <li>- 출력서식 : FTA원산지증명서(기관/자율),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원산지소명서, 자재명세서, 작성대장, 서명카드</li> </ul>
체험형	시물레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그인 없이 최소한의 정보 입력으로 모의판정 가능</li> <li>- 수출(공급)물품의 자재명세서(BOM) 입력 후 원산지판정 수행</li> </ul>



상담전화 : 1544-0645 (문의시간 : 평일 09:00~18:00)  
문의메일 : [fta-pass@origin.or.kr](mailto:fta-pass@origin.or.kr)



# K-아이스크림 수출 역대 최대





STANDARD



# 원산지관리, 현장의 목소리

## 인증수출자제도와 원산지관리

변달수 | 다미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

## 쉽게 설명하는 IPEF vs. CPTPP

최완규 | 한국원산지정보원 활용연구팀 원산지관리사

# 인증수출자제도와 원산지관리



변달수  
다미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

## 1 들어가며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성장했거나 생산, 제조·가공된 국가를 말한다. 원산지규정이란 상품의 원산지국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각종 법률, 규칙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적 결정으로서 그 적용목적에 따라 통상 특혜 규정과 비특혜규정으로 분류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들이 회원국이 원산지인 물품에 대해 서로 관세율을 인하하는 특혜를 제공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특혜규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혜목적의 FTA를 활용하여 관세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가 필수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원산지증명서 발급할 때는 수출물품 별로 원산지결정기준을 검토하여 원산지를 판정해야 하는 데, FTA 협정별 규정이 난해하고 구비해야 할 서류가 복잡다양하여 이에 대하여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기고문에서는 상기 어려움에 대하여 일부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인증수출자 제도를 알아보려고 한다.

## 2 인증수출자의 개념과 종류

### 가. 인증수출자의 개념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란 우리나라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종류로는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있다.

### 나. 인증수출자의 종류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 인증을 취득하면 해당 인증기업이 수출하는 모든 협정국, 모든 품목에 대해 인증수출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에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인증 취득 시 인증받은 협정과 인증받은 물품(HS CODE 6단위)에만 혜택을 한정하고 있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두 인증수출자 모두 5년이다. 다만,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 원산지조사 거부 사실이 있거나 원산지증빙 서류 보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짧게 정할 수도 있다.

인증기관은 두 인증수출자 모두 본부세관(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및 평택직할세관이다.

따라서, 인증받으려는 기업의 일선세관이 아닌 본부세관으로 신청해야 함에 유의한다.

예를 들어, 대전 소재 기업의 경우 대전세관(일선세관)에 인증신청을 하는 것이 아닌 서울 본부세관에 신청해야 한다.

상기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인증수출자 구분**

구분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혜택범위	모든 협정, 모든 품목	인증 받은 협정별 HS 6단위
유효기간	5년(단,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경우 차등적용 가능)	
인증기관	본부세관 및 평택직할세관	
인증기준	협정상대국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준수도	HS 6단위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준수도

## 다. 인증기준

상기에서 살펴보았듯, 업체별인증수출자가 혜택의 범위가 더 넓다.

그러나 혜택 범위가 넓은 만큼 인증의 기준은 조금 더 엄격하다고 할 수 있다. 관련하여 인증수출자 종류별 인증기준은 아래와 같다.

### (1)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업체별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 ① 수출실적이 있는 물품 또는 새롭게 수출하려는 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HS CODE 6단위 기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증명할 능력이 있을 것
- ②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을 것
- ③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운영할 것

④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서류의 보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⑤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신청하거나 작성·발급한 사실이 없을 것

### (2)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품목별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 ① 수출실적이 있는 물품 또는 새롭게 수출하려는 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품목번호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일 것
- ②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운영할 것

### (3) 비교

상기 두 제도 모두 수출하는 물품이 원산지결정 기준을 당연히 충족해야 한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고 원산지관리전담자

(예: 사내 원산지관리사 보유 등)를 지정·운영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추가적으로 업체별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FTA 전산관리시스템 등(예: FTA PASS)을 보유하고 서면조사 등 원산지조사 거부사실이 없어야 하는 등 관세행정 협력도나 높은 법규준수를

요구한다.

하지만, 품목별인증수출자 인증을 이러한 요건은 없기에 예를 들어, 원산지조사 거부사실이 있는 등 관세행정 협력도나 법규준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에도 품목별인증수출자 인증은 신청할 수 있다.

### 3 인증수출자의 원산지관리상 혜택

#### 가. 인증수출자의 혜택

많은 수출기업들이 FTA 활용 시 애로사항이라고 말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수출건별로 수많은 원산지증빙서류를 구비하는 일이다.

기관발급기준으로 원산지증명서 한 건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원산지소명서, 원재료명세서, 제조공정도, 원산지확인서, 세금계산서, 원가산출내역서 등 수많은 원산지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이는 바빠 돌아가는 수출기업의 실무담당자들에게 참으로 곤욕스러운 일이다. 실무담당자들이 전적으로 원산지업무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이 부분에서 혜택을 줄 수 있다. 대부분의 기관발급협정에서는 인증수출자에게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생략 및 심사간소화라는 혜택을 주어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첨부서류 제출부담을 경감시켜 준다.

이와 별개로 한-EU FTA와 한-영국 FTA의 경우에는 6,000유로 초과하는 수출시 반드시 인증수출자를 득한 기업만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협정별로 인증수출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 협정별 인증수출자 혜택

협정	구분	인증	인증
한- EFTA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시 수출자의 서명 수기작성 필요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시 수출자의 서명 수기작성 생략가능
한- EU 한- 영	자율발급	- 6,000유로 이하의 수출물품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시 수출자의 서명 수기 작성 필요	-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시 수출자의 서명 수기 작성 생략가능
한- 아세안 한- 싱가포르 한- 인도 한- 베트남 한- 중 RCEP 한- 이스라엘 한- 캄보디아 한- 인도네시아	기관발급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 (전산으로 신청) - 첨부서류 제출 1. 수출신고필증사본 2. 원산지소명서 3. 원산지확인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4. 그 밖의 원산지 증빙자료 - 현지확인(필요한 경우)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 (전산으로 신청) - 첨부서류 제출 생략 - 현지확인 생략 가능
RCEP 한- 캄보디아	자율발급	- (인증수출자)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불가 - [RCEP] (수출자또는 생산자)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유보> ※ <유보> [RCEP] 제3.16조에 따라 이행 예정 (국가별 상이)	- (인증수출자)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한- 인도네시아	자율발급 자율발급	- (인증수출자)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불가 - (수출자 또는 생산자)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유보> ※ <유보>[한- 인도네시아 CEPA] 제3.15에 따라 이행 예정	- (인증수출자)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유보>
한- 이스라엘	자율발급	-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수출물품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기타		동 제도 미적용	

## 4 인증수출자제도 활용유의사항

### 가. 인증수출자 인증은 한국산임을 공인해준다?

많은 수출담당자들이 인증수출자 인증을 '해당 기업의 물품을 모두 한국산으로 인정한다'는 세관의 국가공인 원산지마크같은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수출기업들이 인증수출자 취득 후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기업이 수출하는 모든 물품을 원산지판정도 하지 않은 채 한국산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다.

주의할 점은 인증수출자 인증은 수출기업이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일 뿐 해당 업체의 모든 수출물품에 대해 한국산으로 공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인증을 받았더라도 수출되는 물품별로 원산지결정기준 검토 및 판정절차가 수반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인증받은 업체 또는 물품(HS CODE 6단위)라 할지라도 검토결과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면 해당 물품은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면 안되는 것이다.

### 나. 인증수출자의 경우 원산지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증수출자의 경우 기관발급 국가의 대부분은 원산지증명서 신청시 발급기관(세관, 상공회의소)에 제출하는 서류 중 상당 부분이 생략되며 심사가 간소화 되는 혜택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발급기관에 제출을 생략한다는 것이며,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하고 보관하는 의무까지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수출담당자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와 이에 수반되는 증빙서류를 FTA 관세특례법에 따른 기간에 따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증수출자라 할지라도 우리나라 관세당국이 행하는 원산지조사나 체약 상대국의 원산지사후검증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두어야 한다.

## 다. 인증수출자 번호를 대여할 수 있다?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는 법인단위 또는 사업장 단위로 부여한다. 따라서, 자회사나 모회사와 대표자 및 사업자등록번호가 상이한 경우에는 인증수출자번호를 서로 대여해가며 사용할 수 없음에 유의한다. 즉, 수출자는 다른 회사의 인증수출자번호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인증수출자는 승계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등 기업의 분할, 인수합병 등으로 기업의 동일성 및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증수출자 인증을 새로 취득해야 함에 유의한다.

## 5 결론 및 소고

지금까지 원산지관리 측면에서 인증수출자와 개념, 종류, 혜택 그리고 활용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인증수출자의 인증취득절차나 실무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궁금한 경우에는 사용하고 있는 관세사무소나 관세법인에 문의하면 된다. 또는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나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자유에는 책임이 뒤따른다. 인증수출자 제도는 수출자에게 원산지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므로 관세당국이 수출기업에 어느 정도 자유를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작은 자유를 잘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 책임(원산지 서류보관 등)에 대한 무게도 느껴야 할 것이다.



# 쉽게 설명하는 IPEF vs. CPTPP



**최완규**  
한국원산지정보원 활용연구팀  
원산지관리사



## 1 시작하며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8년 발생한 미·중 무역 갈등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및 러·우 분쟁은 세계 무역시장의 흐름을 바꿔 놓기 충분했다.

초기 양자 간의 협정을 이루었던 FTA는 세계적인 이슈 속에 글로벌 공급망 안전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해관계가 맞는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는 Mega-FTA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Mega-FTA 중 최근 영국의 합류 결정이 되었고, 우리나라 또한 가입 절차 준비 중인 CPTPP와 미국 주도의 가장 큰 규모의 Mega-FTA인 IPEF에 관해 소개한다.

## 2 CPTPP와 IPE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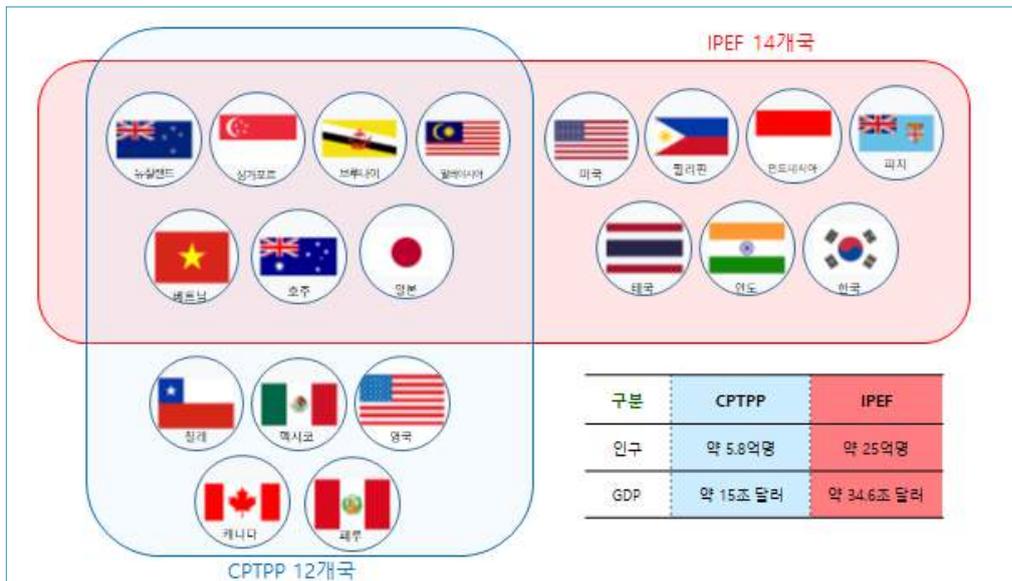
CPTPP는 기존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에서 2017년 미국이 빠지면서 아시아·태평양 11개국 체제를 유지하다 최근 2023년 7월 영국의 CPTPP 가입 결정이 나면서 12개국 체제가 되었다.

CPTPP에 가입하려면 참가국들의 만장일치 동의를 필요하며, 영국이 첫 번째의 추가 참여국이 되면서, 이후 중국, 한국, 대만 등의 나라들과 미국의 재가입 의사에 따른 CPTPP 추가 참여에 대한 제의가 남아있다.

협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1)농수산물과 공산품 역내 관세 철폐 (2)데이터 거래 활성화 (3)금융·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4)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 금지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의 제품에 대한 관세를 전면 철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경제협력체이다.

CPTPP는 기존의 TPP와 비교했을 때 미국의 탈퇴로 경제적 중요성이 감소했으나 환태평양 지역의 주요국들이 참여하고 디지털 통상 등 가장 최신의 무역 규범을 반영한 Mega-FTA 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림 1] CPTPP와 IPEF의 참여국/인구/GDP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 경제협력체로, 2022년 5월 23일 공식 출범했다.

IPEF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1년 10월 처음 제안한 것으로,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 및 관세 인하를 목표로 하는 기존의 무역협정과 달리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목표를 갖고 있다.<sup>1</sup>

IPEF는 기존 FTA가 관세 철폐에 초점을 맞춘 것과는 다르게 관세 철폐 및 인하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공급망·디지털·청정에너지 등의 신통상 이슈를 핵심 의제로 다루고 있다.

IPEF의 주요 내용으로는 (1)무역 (2)공급망 (3)청정경제 (4)공정경제 등의 4개 분야의 필러를 가지고 있고, 참여국은 필러별로 협상이 가능하며, 행정명령에 기초하고 있어서 국회의 비준 없이도 바로 이행될 수 있다.

[그림 2] CPTPP와 IPEF의 경과 흐름도



1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3 CPTPP와 IPEF가 한국에게 미치는 영향

CPTPP 가입은 한국 수출의 높은 중국 의존도 문제를 완화하는 효과적인 정책일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한국 수출 무역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인 일부 수출국과 수출상품에 대한 높은 집중도는 한국 경제를 중국 등 주요 수출국의 경제 변동성에 영향을 받게 하기 때문에 CPTPP 가입을 통해 한국 수출 지형을 확대함으로써 수출국과 수출품의 다변화가 가능하다.

또한, 미·중 간 무역 갈등의 심화에 따라 기존의 GVC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CPTPP 가입은 지역 중심의 가치사슬 구축을 가능케 함으로써 미·중 간 무역 갈등으로 인한 여파를 완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된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불리한 여건에 빠지지 않도록 CPTPP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통상환경의 여러 변수를 고려하였을 때, 다자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무역을 확대해 나가고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해야 한다.<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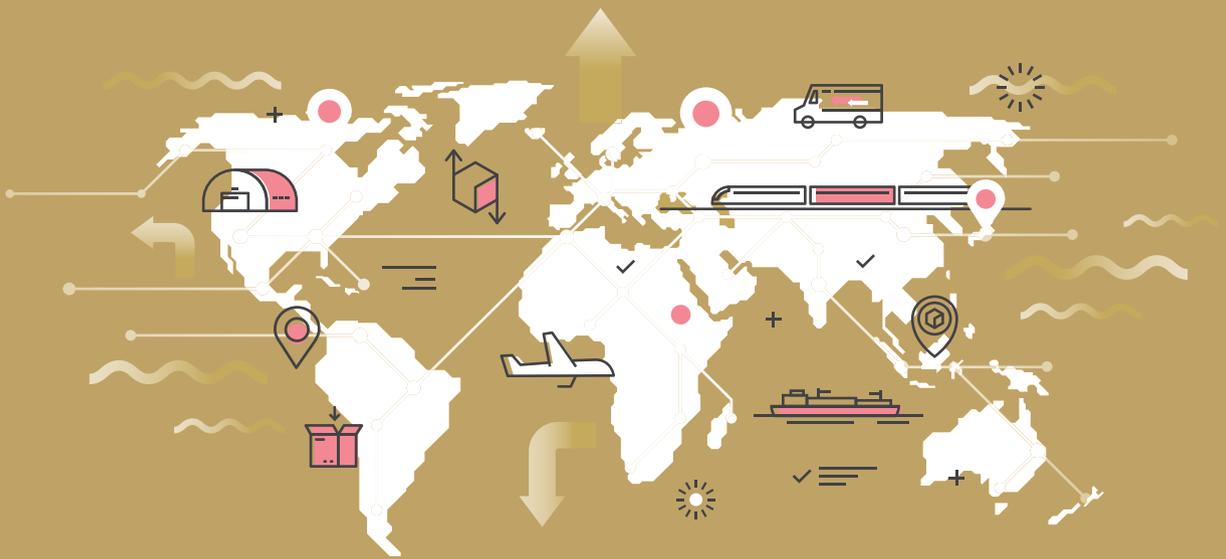
IPEF 공급망 협정은 한국이 그간 체결한 협정 중에서 참여국의 경제 규모가 가장 큰 협정으로서, 선진-개도국뿐만 아니라 자원부국(호주, 인도네시아 등)과 기술 선도국(미국, 일본 등) 등 다양한 경제적 특성을 가진 국가가 함께 참여하여 상호 보완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의가 있다.

공급망 위기 시 협력 메커니즘을 새로이 마련하여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며, IPEF 참여국 중보다 심화된 협력을 희망하는 공통 분야가 있으면, 수급 다변화, 인프라 확충, 기술 협력, 물류 인프라 확충, 공급망 병목 점 해소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IPEF 참여국의 조치로 인해 공급망 교란이 발생하는 경우, IPEF를 활용하여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KIEF산업경제, 「CPTPP의 미래와 우리의 대응방안」





- 분석배경 :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협정국의 2023년 상반기 MTI 1단위 기준 상위품목(MTI 3단위)의 교역(수출·수입)을 확인하고자 함
- 기준연도 : 2023년 상반기(1월~6월)
- 대상협정 :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협정
- 주요내용 : FTA 대상 수출입 (MTI 1단위, MTI 3단위)



# FTA 지도

- 2023년 우리나라 FTA 체결현황
- 2023년 FTA 상반기 주요 수출입 품목
  1. 광산물
  2. 기계류
  3. 농림수산물
  4. 생활용품
  5. 섬유류
  6. 잡제품
  7. 전자전기제품
  8. 철강금속제품
  9.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10. 화학공업제품

REPORT

# 2023년 우리나라 FTA 체결현황

## FTA



칠레  
2004



싱가포르  
2006



미국  
2012



페루  
2011



튀르키예  
2013



호주  
2014



중미 5개국  
2021



콜롬비아  
2016



영국  
2021



RCEP  
2022



EFTA  
2006



아세안  
2007



EU  
2011



인도  
2010



캐나다  
2015



뉴질랜드  
2015



베트남  
2015



중국  
2015



이스라엘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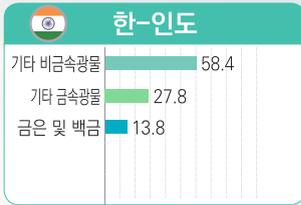
캄보디아  
2022



인도네시아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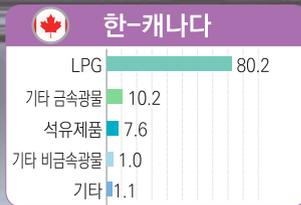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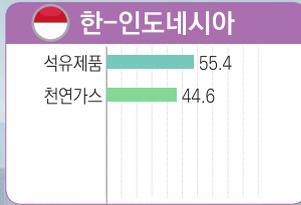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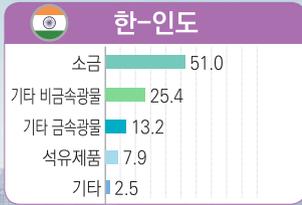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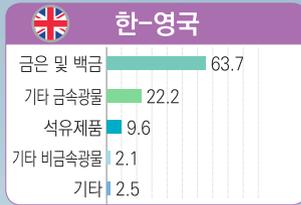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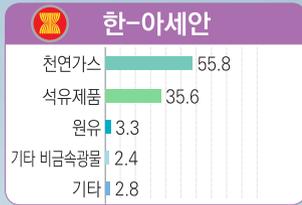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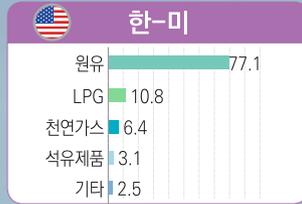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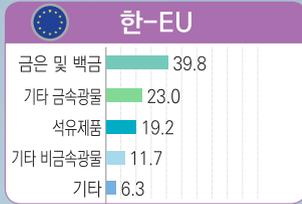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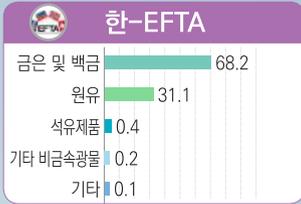


# 수출 : 광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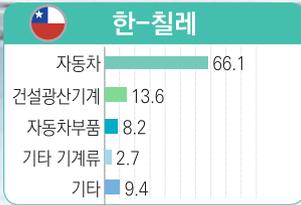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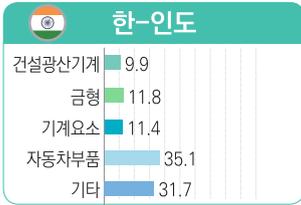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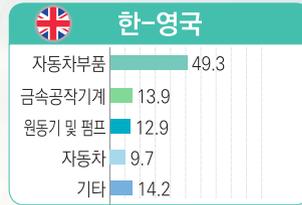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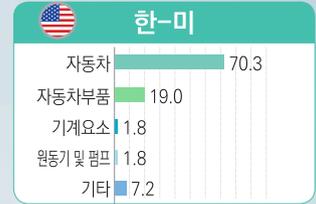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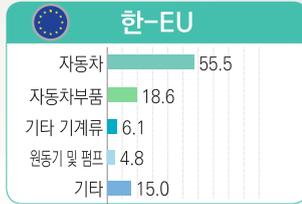


광산물 :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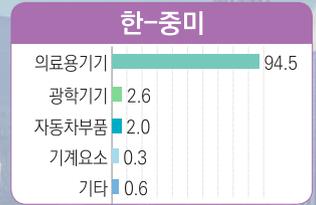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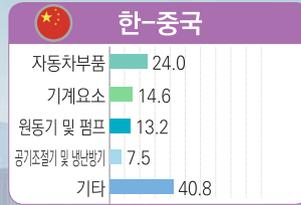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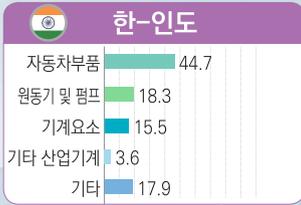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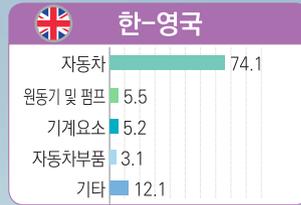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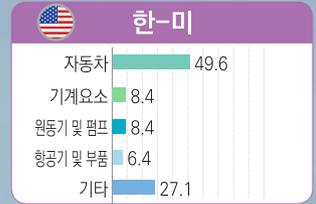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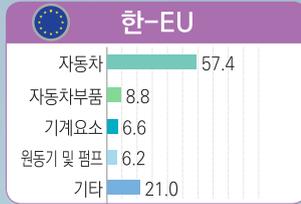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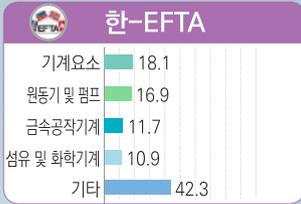


# 수출 : 기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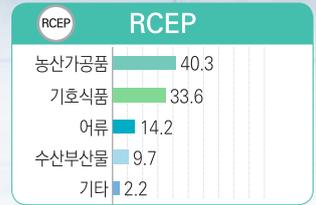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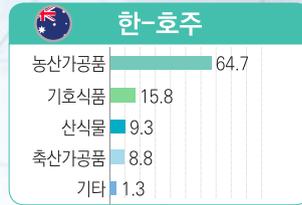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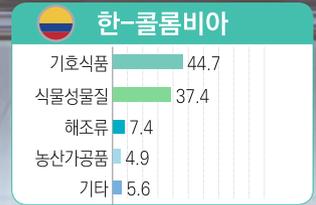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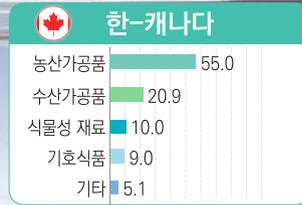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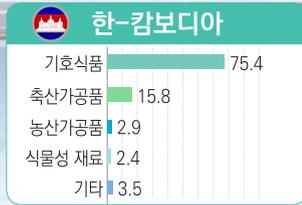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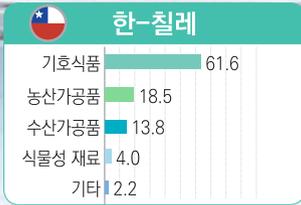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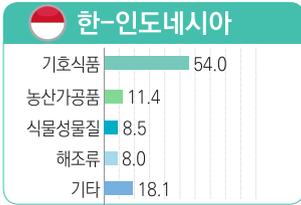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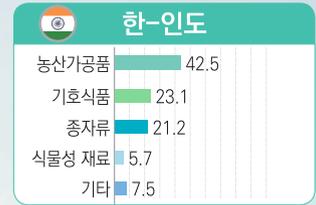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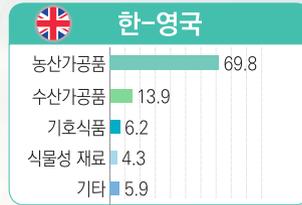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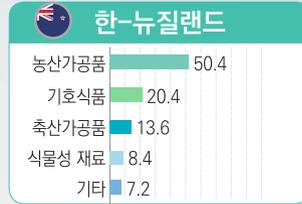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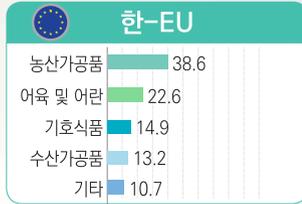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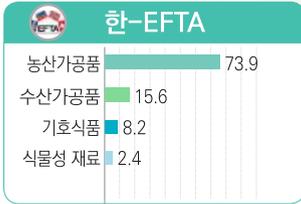


# 기계류 :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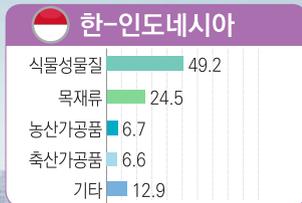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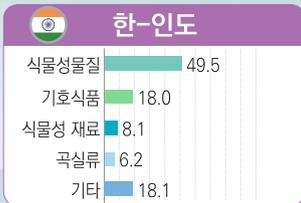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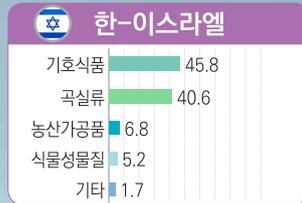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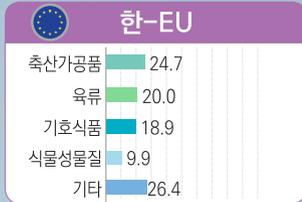


# 수출 : 농림수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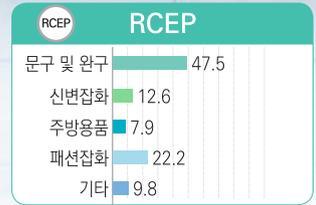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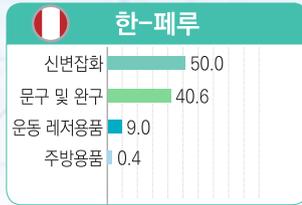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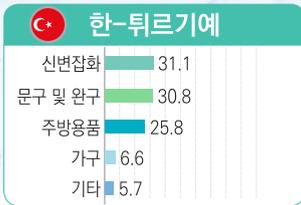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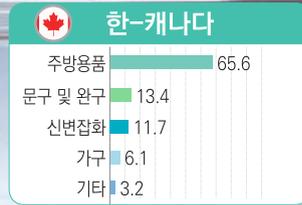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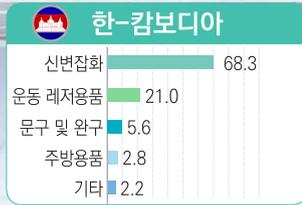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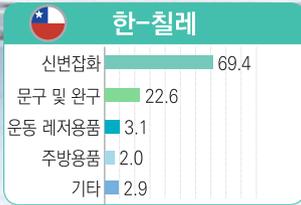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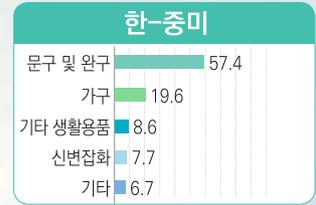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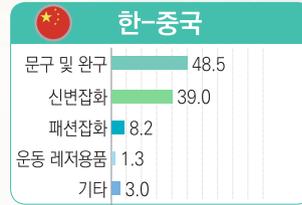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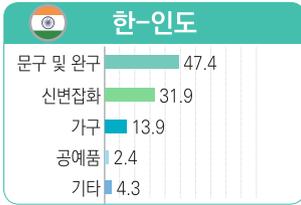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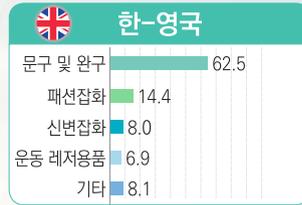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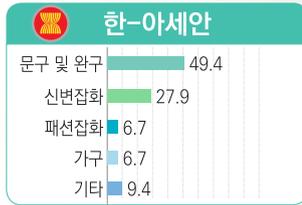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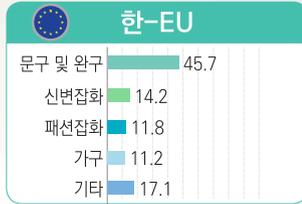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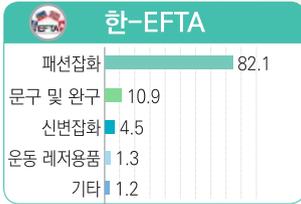


## 농림수산물 :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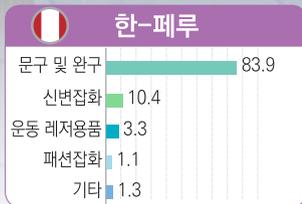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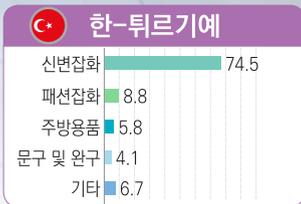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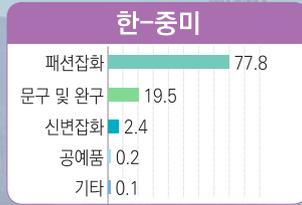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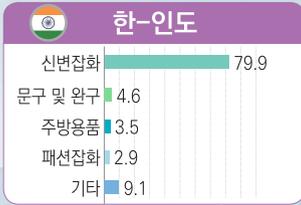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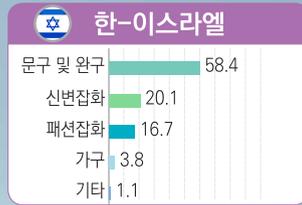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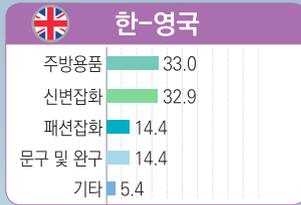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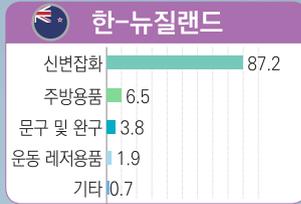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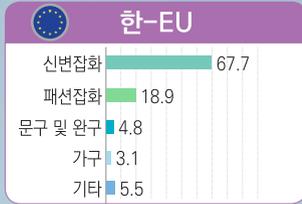


# 수출 : 생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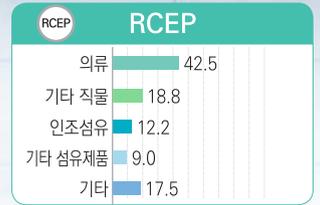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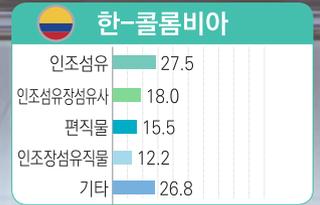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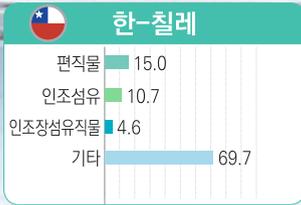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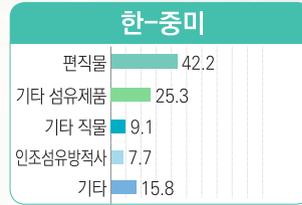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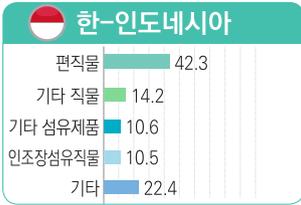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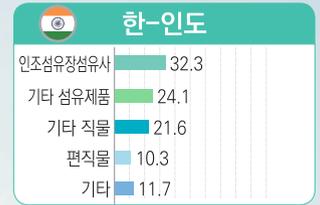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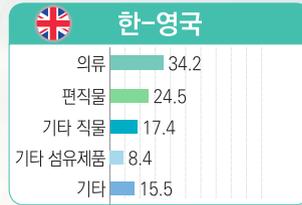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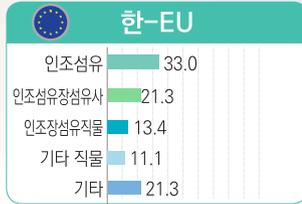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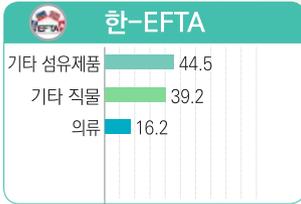


생활용품 :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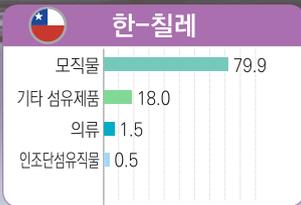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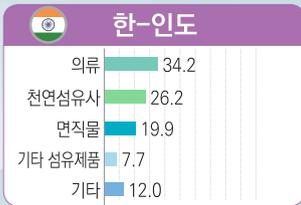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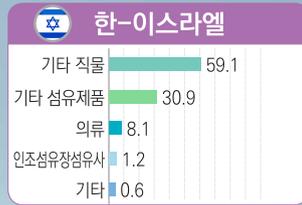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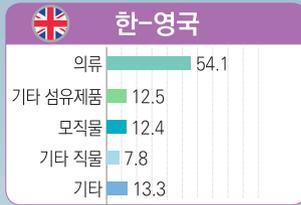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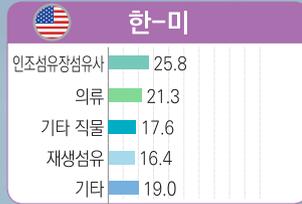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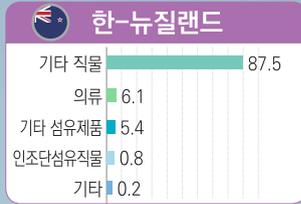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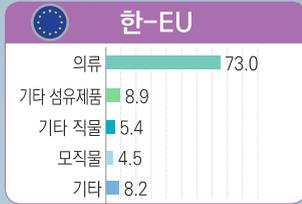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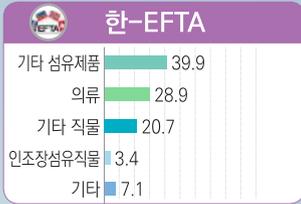
# 수출 : 섬유류



# 2023년 FTA 상반기 주요 수출입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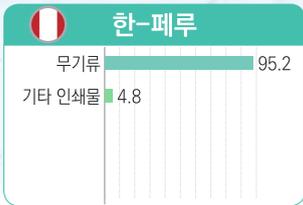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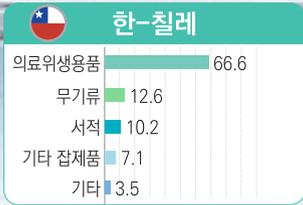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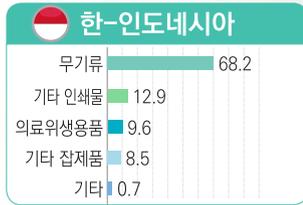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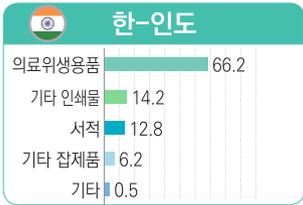


## 섬유류 :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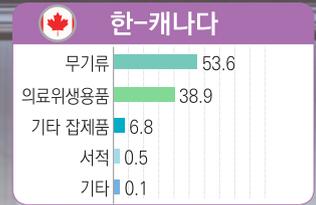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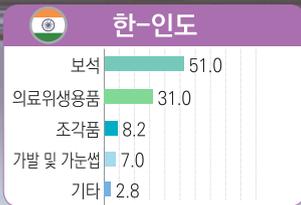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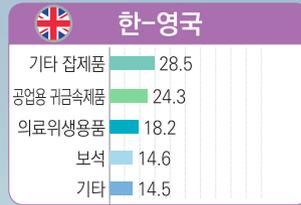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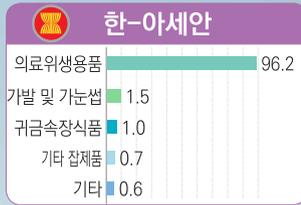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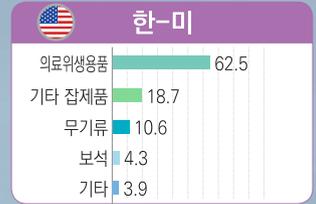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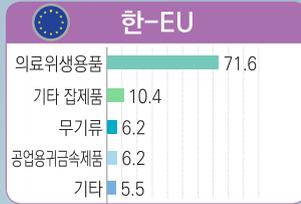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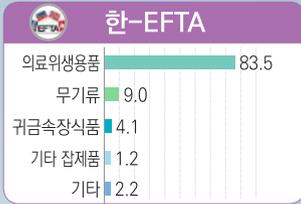


# 수출 : 잡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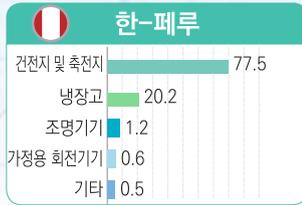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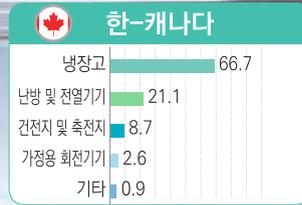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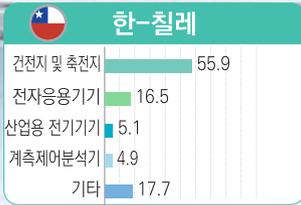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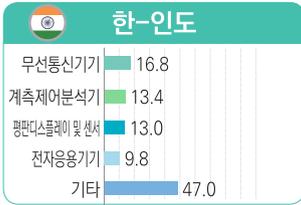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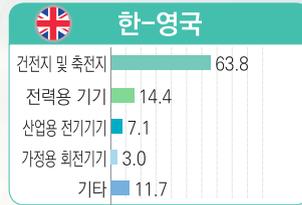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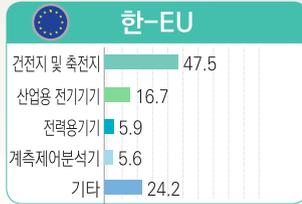


잡제품 :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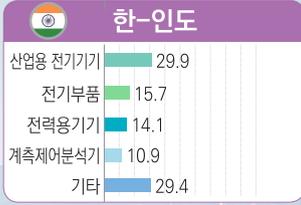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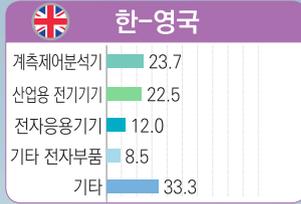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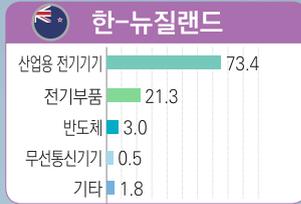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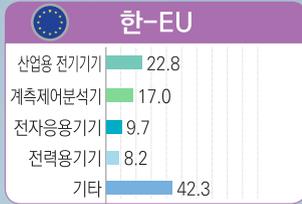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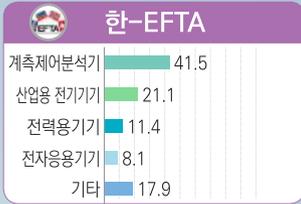


# 수출 전자전기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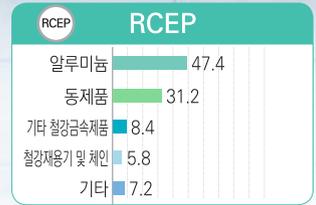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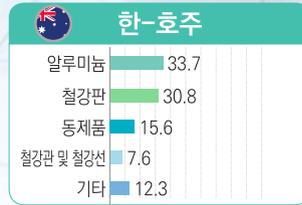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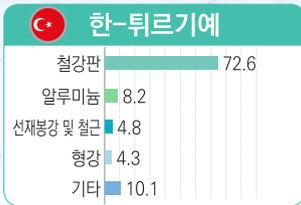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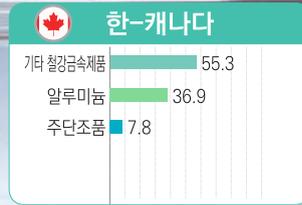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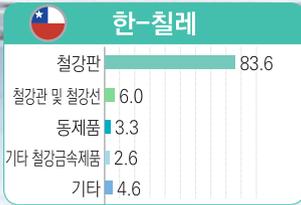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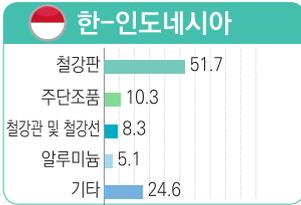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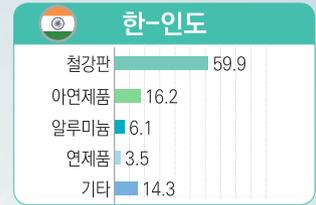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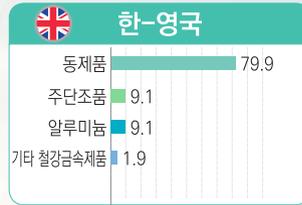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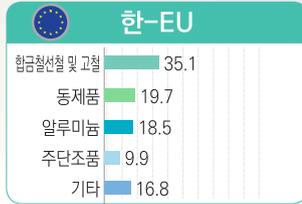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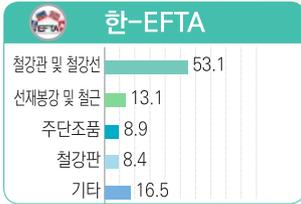


# 전자전기제품 :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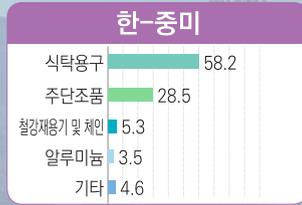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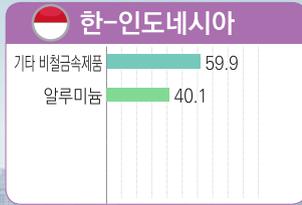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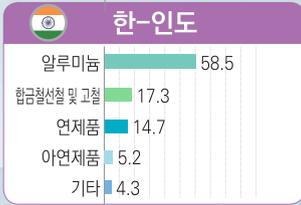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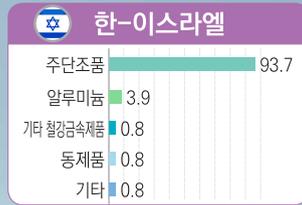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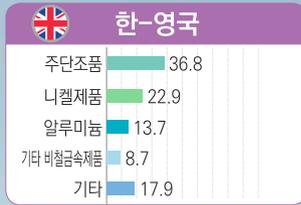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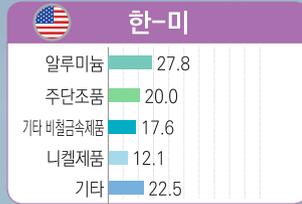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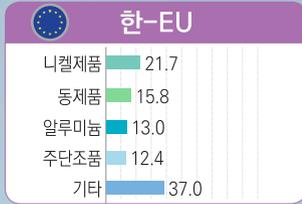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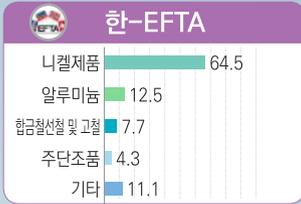


# 수출 : 철강금속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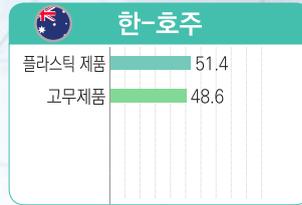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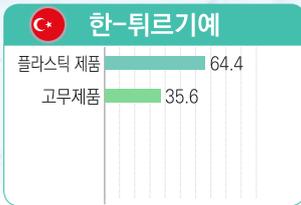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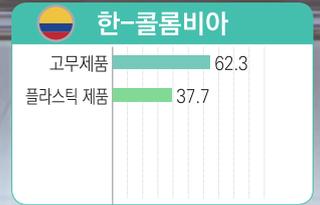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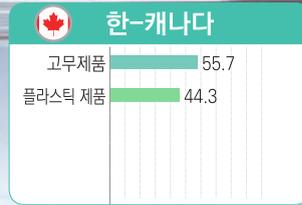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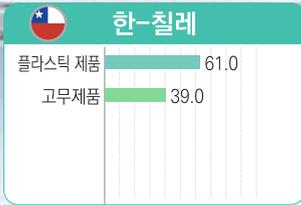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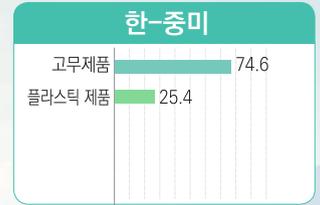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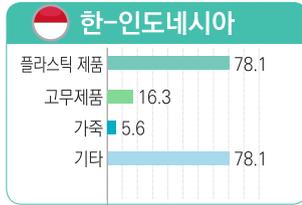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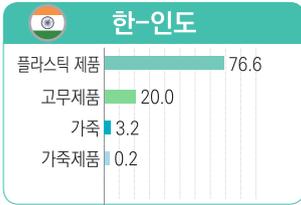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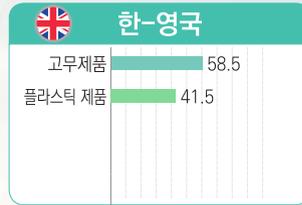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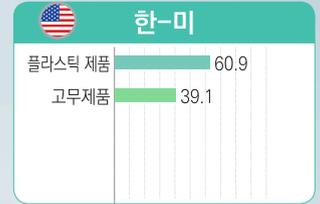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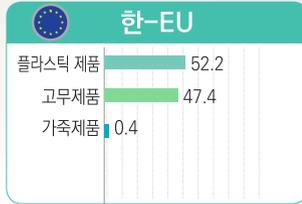


## 철강금속제품 :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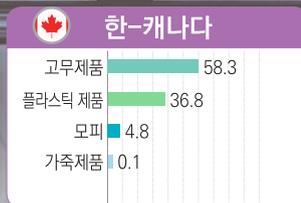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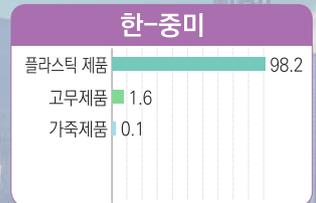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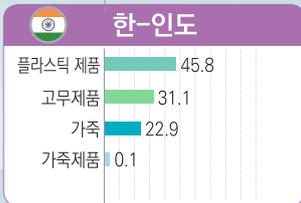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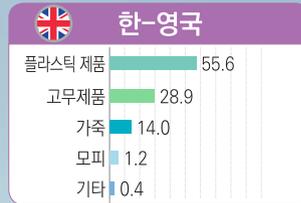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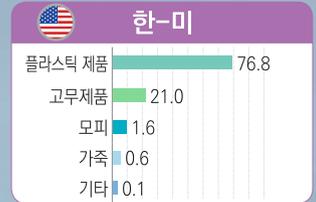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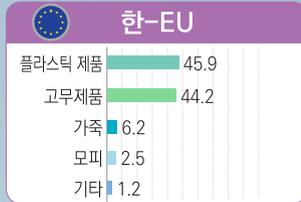


# 수출 :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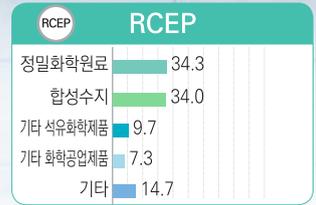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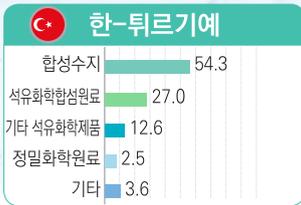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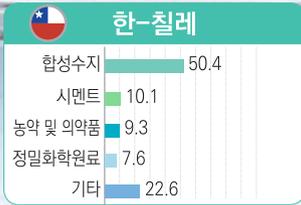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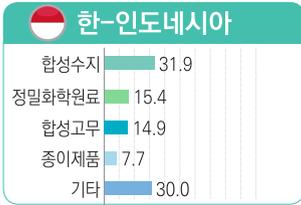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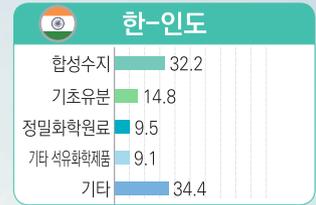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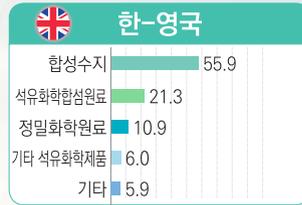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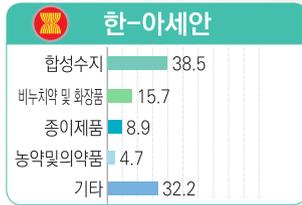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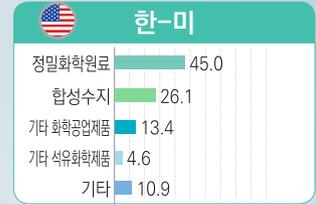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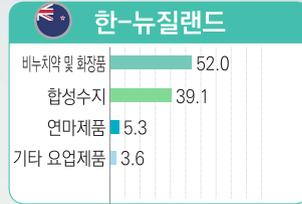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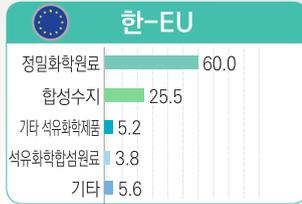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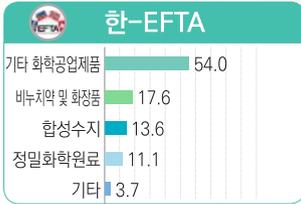


#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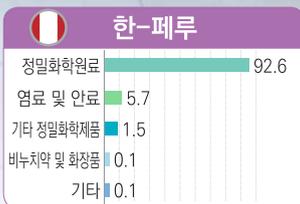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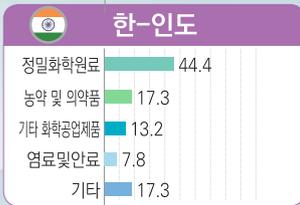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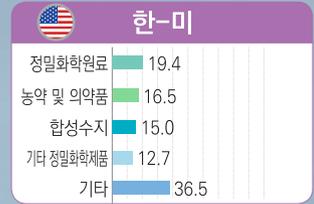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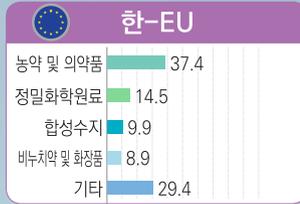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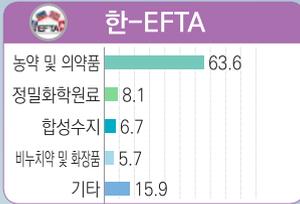


# 수출 : 화학공업제품





## 화학공업제품 : 수입



# 2023년도

# 원산지관리사 원산지실무사 자격시험



## 시험안내

### 국가공인 민간자격 원산지관리사

공인번호  
관세청 제2021-1호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

\*학점은행제 9학점 인정 및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가능

### 등록민간자격 원산지실무사

등록번호  
제2015-004250호

FTA·원산지관리 실무 능력을  
갖춘 준전문가

\*원산지관리전담자 자격접수 2점인정

## 2023년 시험일정

구 분	시험일	시험공고	원서접수기간
제33회 원산지관리사 제18회 원산지실무사	11.11.(토)	10.11.(수)	10.13.(금) ~ 10.25.(수)

※ 원산지실무사(09:00~10:00), 원산지관리사(11:00~13:00) 시험일은 동일합니다. (동시 응시가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FTA원산지아카데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응시료 및 환불규정



- **응시료** 원산지관리사 50,000원, 원산지실무사 30,000원 (상장형 자격증 발급 무료)
- **환 불** 원서접수기간 : 100% 환불  
접수마감 후 : 부분환불  
시험 6일전부터 : 환불불가

### 접수 문의



- **접 수** 온라인접수  
(FTA원산지아카데미 [www.ftaedu.or.kr](http://www.ftaedu.or.kr) ▶ 자격시험별 시험접수)
- **문 의** 한국원산지정보원 교육자력팀  
031-600-0745~6, [ftaedu@origin.or.kr](mailto:ftaedu@origin.or.kr)  
1350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205번길 8  
\*관세법 개정으로 2023년 7월 1일부터 기관명이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 변경됩니다.



## 한국원산지정보원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FTA** FTA  
무역리포트

# TRADE REPORT

September 2023 Vol. 03 (통권 43호)

(비매품)

**발행일** 2023년 09월

**발행처** 관세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http://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한국원산지정보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05번길 8  
TEL : 031)6000-701~3 / FAX : 031)6000-704  
<http://www.origin.or.kr>

**편집**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  
한국원산지정보원

**디자인·인쇄** (주)케이에스센세이션

**발간등록번호** 11-1220000-000342-08

「FTA 무역리포트」에 게재된 글은 저자의 견해로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FTA 무역리포트 TRADE REPORT



보내는 사람

주소 \_\_\_\_\_

이름 \_\_\_\_\_

연락처 \_\_\_\_\_ E-mail \_\_\_\_\_



받는 사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05번길 8 성남세관  
5층 한국원산지정보원

FTA 무역리포트 담당자 앞

13503

## 독자의 소리

〈FTA 무역리포트〉 독자의 소리를 2023년 11월 1일까지 보내주세요.  
의견이 채택되신 분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FTA 무역리포트〉를 보신 소감을 적어 주세요.



〈FTA 무역리포트〉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FTA 무역리포트〉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을 알려주세요.







[customs.go.kr/ftaportalkor/](http://customs.go.kr/ftaportalkor/)  
[ftapass.or.kr](http://ftapass.or.kr)

